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민승현 김묵한 양지혜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pecial Zone Policy in Seoul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 연구책임

민승현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 연구진

김묵한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양지혜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조혜진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전)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실효성 확보하려면 사후관리 절차 강화 등 10가지 개선방향 실현

저성장시대 특구 지정 증가추세... 운영·관리 실효성 진단 필요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178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특화된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서울시에서 9개 자치구, 4개 분야에서 총 10개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구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특구의 지정 추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새롭게 지정이 되고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특구 운영 및 관리의 실효성 측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민간 등 주체별로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구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의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지정될 수 있고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상호 간에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특구의 지정 단계부터 광역적으로 접근해야 할 도시의 관리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 운영 및 관리 평가에 대한 타당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착 및 지원 등 규제특례 적용 이후의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구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 간의 소통은 물론, 특구의 지정 및 운영, 관리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담보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특구에 대한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돌아보고 향후 서울시를 비롯한 각 주체가 개선해 나아가야 할 사항을 모색하였다.

특구 운영실태 한계, 절차적·도시관리적 관점으로 구분해 도출

특구 운영의 실태 조사를 토대로 특구의 지정 전과 지정 후, 지속적인 사업 진행 등 절차적인 관점에서는 특구 지정 및 활용, 특구 운영 및 관리, 특구 평가 및 지원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향후 지역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도시관리적인 관점에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토지이용 및 국제법 규제특례의 사후 영향 부문으로 구분하여 한계를 도출하였다.

지정·활용 측면: 특화사업·규제특례 연계성 적고 유형도 한정

규제특례가 지역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 기준 및 현행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특화사업과 규제특례의 연계성 부족으로 특례의 활용도가 저조하여 실 수요자들인 민간사업자의 특화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특구 지정 시, 본래 지역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인정하고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5개(향토자원·유통물류,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있어 산업·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각 지역에 골고루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하나의 유형만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판단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운영·관리 측면: 자치구 등 주체 간 소통 적고 사업관리 미흡

현재 특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 한정되어 있어서 광역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공조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구조 형성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내부에 특구 관련 담당 공무원이 존재하나 그 역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광역적 도시관리 차원에서 의견을 조율해야 할 관련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 자치구와 서울시의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특구의 지정 이후 검증 차원에서 적용조사, 수요조사 등의 서류평가만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민간사업자도 지정 전후로 특구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만 공공과의 지속적인 소통 부족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 내 특구의 지정 이후 실행되는 대부분의 일반적 규제특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약사법,

의료법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면서 지역 활성화 효과를 거두는 것도 있다. 그러나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행사 시 차량통행금지, 외국인 교원 임용기준 완화 등 일시적이면서 한시적인 사항에 국한되는 것도 많다. 이에 따른 특화사업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의 특화사업 추진 이후의 사업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평가지원 측면: 운영성과 측정 쉽지 않고 지속 재원조달 곤란

특구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의 특구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중 특구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구 담당자의 인터뷰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관련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이다.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예산 배정이 어려워 담당자가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특구로 지정된 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초기에는 예산을 확보해 관련된 각종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연속되는 사업이 아닌, 단기간에 완료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서 지속적인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특화사업의 장기적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특화사업 추진 및 규제특례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및 국가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아 지속적인 재원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특구계획에서 규제특례의 제안 및 사업추진 내용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과감한 규제특례가 적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자본의 유치에 한계가 존재하며 지역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통이 부족하여 특화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어려운 점 또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지정범위·내용: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관련계획과 정합성 부족

서울시 내 특구의 계획 범위를 보면 203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관련 계획의 범위 및 계획 내용과는 연계성이 없이 각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서 필요한 구역이 특구 범위로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되는 특구의 계획 내용을 역으로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려는 자치구도 존재한다. 이는 규제특례법상에서 작성되는 지정신청서 내용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위계획 및 지정하고자 하는 범위의 주변 계획에 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 내용 및 범위의 정합성 측면에서 상호 부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토지이용 규제특례: 부정적 영향 막는 주체 간 심의·협의 소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는 일단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의 간척 농지 및 수자원보호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의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토지이용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부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정 단계와 지정 이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특구 지정은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역적이 아닌 국지적 차원에서의 검토 및 심의는 자칫 지역 전체의 도시관리적 측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시 내 지정된 10개의 특구는 대부분 일반적인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사례는 ‘강서 미라클-메디특구’가 유일하다. 강서구는 특구 지정 이후, 관련 규제특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병원의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병상 수 확보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 관련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특구 지정 신청 시 강서구와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만이 관련 절차를 수행하면서 지역 전체의 도시관리적 차원에 대한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규제특례를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지정 절차에 관한 한계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구 목적 달성 겨냥한 개선방향의 3대 원칙

특구의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절차적인 문제와 도시관리적인 문제의 2가지 관점에서 각각 도출된 세부적인 한계와 과제는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1)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의 강화, 2) 특구의 운영과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의 강화, 3) 특구의 지속적인 유지 및 협조체계의 강화 3개 원칙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구 지정 전부터 사후관리까지 절차 강화하는 4가지 개선방향

특구의 지정 전부터 지정 이후의 관리까지 고려한 관련 절차의 강화 또는 심화 방안에 대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특구계획이 상위계획·주변계획과 맞는지 검토 의무화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범위에서 계획 내용이 상위계획과 주변의 계획에 맞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을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제7조)’과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제10조)’ 등 규제특례법 조항에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여 지정 신청 시 주변 및 광역적 계획 내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과보고서 및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등의 세부 항목에도 포함하여 지정 이후에도 관련 계획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필요 시 특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구의 계획 및 범위가 광역적 차원에서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요구하고 계획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의 사후 관리·지정해제 요건 강화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 적용은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구 지정에 대한

심의 단계에서부터 특구계획 및 특화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검증이 필요하다. 특구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외부의 환경 변화와 지자체의 사정 때문에 특화사업의 진행이 부진한 경우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정단계에서 특구토지이용계획(특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특례법 제 37조) 외에도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적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2년에 1회 이상’의 규정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성과보고서’와 같은 시기에 상호 간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특구의 지정 해제에 관해서는 자발적으로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진한 특구에 대한 특구위원회의 역할 및 지정해제 요건의 강화를 통한 심의·의결을 거쳐 과감하게 지정해제를 추진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서울시에는 현재 토지이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특구의 지정이 늘어가는 추세로 향후의 도시관리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자치구에서 관련 특구의 추진이 검토되는 시점부터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 국제법상 규제특례도 특구 지정 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국제법상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도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와 마찬가지로 향후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을 주기 때문에 특구 지정 전부터 사후 관리까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지정절차의 진행 시 광역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체계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특례법 제5조)’의 조항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관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특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의 심의(특례법 제32조)’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및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서 특구 지정 이후 관련 조례(특례법 제12조)를 제정 시, 도시관리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특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후 추진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특화사업의 필요에 따른 용적률·건폐율 완화 이후 특화사업 및 관련 용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용도변경 이력 관리 등 이행담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와 연계한 용도

관리 방안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후에 관련 사항의 도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환수방안과 법률적 제재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규제특례 절차는 일반적 사항·도시관리적 사항으로 이원화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와 국제법상 건폐율·용적률의 완화 적용에 대하여 지정 초기 및 사후 관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심의 및 관련 절차의 강화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그러나 도시관리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반적인 규제특례까지 강화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 규제특례에 대한 절차를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규제특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절차를 추진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내용을 추가로 마련하는 정도로 진행한다. 하지만 현행 일반적 규제특례로 분류되어있는 국제법상의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와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함께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규제특례로 특례법을 개정하여 관련 심의와 각종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구 실효적 운영·원활한 특화사업 추진 목적의 3가지 개선방향

특구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원활한 특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1) 민간제한 활성화·유형 다양화로 규제특례의 실효성 높여

실수요자의 규제특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된 특화사업자인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도 각종 지원을 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대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구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임대료에 대한 혜택(동결 또는 감면), 적극적인 홍보의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에서는 ‘민간기업 등의 특구계획의 제안(특례법 제4조2)’에 따라 민간기업이 먼저 특구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우호적인 협의의 진행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구 지정 유형의 한계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 및 가치를 파악하여 각기 다른 특구의 유형이 동일 지역에 복합

지정되어 다양한 지역의 수요(Needs)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특구의 유형 및 형태를 세분화하여 관련 규제특례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업주체 간 연계 다각화로 사업의 지속 추진 자원 확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자원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사업추진 구조에서는 특화사업 관련 자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한 광역자치단체(서울시)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역 내에서 광역경제권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또는 현안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각 주체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이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지정단계에서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공동특구(특례법 제4조, 제13조)’로 지정신청을 하여, 해당 특화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특례법 14조)’에서 특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조언 및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또는 ‘관련 자치단체 및 기관과 연계’ 등으로 의무화하여 상시 연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민간사업자가 원활한 사업 가능하도록 특구별 맞춤형 지원

민간사업자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정 단계에서부터 지정 이후까지 특구별 맞춤형으로 특례 및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수요조사(특례법 제48조)’를 통해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공공에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특례법 14조)’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속적인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특례 활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사성 규제보다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의 유치가 가능한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사례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또는 총합특구, 특히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활성화를 통하여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특구제도와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구 지속적 유지 위한 주체 간 협력 강화 포석 3가지 개선방향

특구의 지속적인 유지 및 운영과 관련된 각 주체 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1) 특구 활성화 위해 관련 4자 주체·행정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특구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는 특구에 관련된 4자(기초, 광역, 중앙, 민간)의 주체와 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이 또한 필요에 따라 특구 지정 초기부터 공동특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특례법 14조)’에서도 ‘원활한 특구의 운영·관리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 내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 또는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민간의 지속 소통·모니터링체계 마련

특구의 지정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는 곳도 있으나, 행사성 규제에 대한 일시적이면서도 한시적인 사항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영업에 관한 전망 및 개선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의 진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을 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중재 방안 등을 도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규제적용에 대한 조사(특례법 제48조)’ 및 ‘성과보고(특례법 제47조)’ 외에 제3의 공공 또는 민간의 연구기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성과분석은 전문가에 의뢰 가능해야

특구의 운영 성과 보고서에 대해 더 명확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중 정보제공(특례법 제14조 2항)’에 대한 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 후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특례법 제47조의 3)’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앞서 기술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연동하여 지속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발굴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련주체 공조·전문가 협조체계, 경제적 지원, 정책 지속발굴 필요

앞서 제시한 10개의 개선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체계적인 측면, 경제적인 지원 측면,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조치 측면에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첫째, 조직체계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현 국내의 상황을 볼 때 쇠퇴하는 도시의 재생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도 특구의 지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시한 특구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소관 관청인 중소기업청과 입안하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두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있는 중앙행정 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도시계획, 경제, 사회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조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인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일부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 단체가 재정적인 자립이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민간기업 또한 장기간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신규사업 투자에 대한 위축 심리가 작용하여 특구가 지정되더라도 특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특례 적용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업의 손실 방지 및 이윤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소관 관청인 중소기업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특구별 유형 및 규모에 맞는 세제 및 재정과 금융상의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조치 측면에서는 특구가 국가의 성장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TFT를 구성하여 특구 관련 정책의 구체적 개선 및 강화 방안을 전략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도 현행 특구지역에 대하여 서울연구원이나 자치구 등과 함께 지속적인 운영 모니터링을 하여 사업의 진행이 미흡한 지역 또는 신규 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과 전문가, 주민, 기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위원회(가칭)’ 등을 설치하여 이 위원회가 특구의 지정, 운영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범위 및 방법	4
02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 검토	10
1_선행연구 검토	10
2_관련 제도 검토	12
03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및 추진현황	18
1_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및 운영절차	18
2_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체계	24
3_전국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현황	27
04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및 추진현황	42
1_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43
2_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51
3_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58
4_강서 미라클·메디특구	64
5_그 외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73

05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82
1_조사 개요	82
2_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85
3_특구 담당자 인터뷰 결과	102
06 해외사례 검토	112
1_ 일본의 특구제도 및 정책 현황	112
2_ 미국의 특구제도 및 정책 현황	116
3_싱가포르의 특구제도 및 정책 현황	118
4_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122
07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한계와 과제	124
1_특구의 절차적인 관점에서 본 한계와 과제	125
2_도시관리적 관점에서 본 한계와 과제	129
08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134
1_개선방향의 원칙 및 방향	134
2_특구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의 강화	135
3_특구의 운영과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의 강화	139
4_특구의 지속적인 유지 및 협조체계의 강화	141
5_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142
참고문헌	145
부록	147
Abstract	205

표

[표 1-1]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5
[표 2-1] 선행연구의 검토	11
[표 2-2]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비교	12
[표 2-3] 상위계획 검토	13
[표 2-4] 관련 계획 검토	14
[표 2-5] 규제프리존의 주요 특례사항	16
[표 3-1]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세부내용	19
[표 3-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 세부내용	20
[표 3-3]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22
[표 3-4]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보고서 세부내용	23
[표 3-5]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관련사항	26
[표 3-6] 지역특화발전특구 유형별 지정 현황	28
[표 3-7]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적용 현황	29
[표 3-8]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규제특례 적용사항	30
[표 3-9] 대구 패션주얼리 특구 규제특례 적용사항	31
[표 3-10] 청양 고추·구기자산업특구 규제특례 적용사항	32
[표 3-11] 담양 인문학 교육 특구 규제특례 적용사항	33
[표 3-12]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의 위치도 및 규제특례 적용사항	34
[표 3-13]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계획 범위 및 규제특례 적용사항	35
[표 3-14]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의 특화사업	36

[표 3-15]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의 특화사업	37
[표 3-16]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의 규제특례 적용사항 및 특화사업	38
[표 3-17] 영덕 청정에너지 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적용사항	39
[표 4-1]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내 용도지역 면적	43
[표 4-2]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내 용도지구 면적 및 대상지 면적에 대한 지정비율	45
[표 4-3]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내 도시계획사업 및 대상지 면적에 대한 지정비율	46
[표 4-4]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건축 동향	48
[표 4-5]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특화사업 추진 현황	50
[표 4-6]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내 용도지역 면적	51
[표 4-7]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내 용도지구 면적 및 대상지 면적에 대한 지정비율	53
[표 4-8]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내 도시계획사업 및 대상지 면적에 대한 지정비율	54
[표 4-9]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건축 동향	55
[표 4-10]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특화사업 추진 현황	57
[표 4-11]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내 용도지역 면적	58
[표 4-12]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내 도시계획사업 및 대상지 면적에 대한 지정비율	60
[표 4-13]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건축 동향	61
[표 4-14]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특화사업 추진 현황	63
[표 4-15]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내 용도지역 면적	64
[표 4-16]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내 용도지구 면적 및 대상지 면적에 대한 지정비율	66
[표 4-17]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내 도시계획사업 및 대상지 면적에 대한 지정비율	68
[표 4-18]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건축동향	70
[표 4-19]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특화사업 추진 현황	72
[표 4-20]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의 규제특례 적용사항 및 특화사업	73
[표 4-21] 중구 영어교육특구의 규제특례 적용사항 및 주요 특화사업	74
[표 4-22]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의 주요 특화사업	75

[표 4-23]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의 주요 특화사업	76
[표 4-24] 성동구 융복합혁신 교육특구의 주요 특화사업	77
[표 4-25]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의 주요 특화사업	78
[표 4-26] 양재 R&D특구 위치도 및 규제특례 적용대상	79
[표 5-1] 설문조사 개요	83
[표 5-2] 인터뷰 개요	83
[표 5-3] 설문조사 및 인터뷰 내용	84
[표 5-4] 창업연도	86
[표 5-5] 매출규모	86
[표 5-6] 업종 관련 단체/협회 가입 여부	88
[표 5-7] 특구지정 인지 경로	89
[표 5-8]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이후 환경 변화	91
[표 5-9] 특구지정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여부	91
[표 5-10] 현재 특구에 대한 특례지원제도 만족도	94
[표 5-11] 특구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 및 의견반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	95
[표 5-12]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98
[표 5-13]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99
[표 5-14]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100
[표 5-15]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100
[표 5-16] 특구별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101
[표 5-17] 특구별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102
[표 6-1] 일본의 총합 특구제도 비교	114
[표 6-2] 일본 특구제도 및 정책 비교	115
[표 6-3] 싱가포르와 한국 특구의 경쟁력 비교	120
[표 6-4] 해외 특구 유사제도 및 정책 비교	122

[표 7-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129
[표 7-2]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 적용 특구 비교	131
[표 7-3]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의 국제법상(건폐율·용적률) 관련 규제특례사항	132



그림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7
[그림 3-1]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및 운영절차	21
[그림 3-2]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담당조직과 업무	24
[그림 3-3] 전국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27
[그림 3-4] 전국 지역특화발전특구 유형 현황	27
[그림 4-1]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42
[그림 4-2]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위치도	43
[그림 4-3]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용도지역	44
[그림 4-4]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용도지구	45
[그림 4-5]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도시계획사업	47
[그림 4-6]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건축 동향	48
[그림 4-7]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위치도	51
[그림 4-8]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용도지역	52
[그림 4-9]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용도지구	53
[그림 4-10]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도시계획사업	54
[그림 4-11]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건축 현황	56
[그림 4-12]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위치도	58
[그림 4-13]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용도지역	59
[그림 4-14]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도시계획사업	60
[그림 4-15]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건축 동향	62

[그림 4-16]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위치도	65
[그림 4-17]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용도지역	65
[그림 4-18]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용도지구	66
[그림 4-19]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도시계획사업	67
[그림 4-20]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건축 동향	69
[그림 5-1] 소유형태	85
[그림 5-2] 주 업종	87
[그림 5-3] 특구지정 인지 여부	88
[그림 5-4] 사업체 입지적 장점	90
[그림 5-5] 특구 지정이 도움된다는 이유	92
[그림 5-6] 특구 지정이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	92
[그림 5-7] 특구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93
[그림 5-8] 특구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의 필요성	94
[그림 5-9] 사업체 운영 시 불편한 사항	96
[그림 5-10] 서울악령시 한방산업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	96
[그림 5-11]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	97
[그림 5-12]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	97
[그림 5-13]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	98
[그림 6-1] 일본의 구조개혁 특구 운영 및 평가 절차	112
[그림 6-2] 미국 특구 지역 종류	116
[그림 6-3] 미국 특구 개수	117
[그림 6-4]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 조직도	121
[그림 7-1]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의 한계와 과제 개념도	124
[그림 8-1] 특구 신청 절차 개선방안(안)	138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범위 및 방법

01 |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개황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특화된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에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2004년에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후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특구계획 제안·수립자격 부여, 특구계획 변경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2011년에 규제특례법을 한 차례 개정하였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178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특구 지정현황을 보면 전남이 19.7%로 지정 비율이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1.1%로 가장 낮은 지정 비율을 보인다. 이중 서울시는 특구지정 비율이 9%로 전국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향토자원·유통물류 총 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5개의 유형 중 향토자원이 48%, 관광레포츠가 24%로 2개의 유형에 편중되어 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구의 지정 추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새롭게 지정이 되고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특구 운영 및 관리의 실효성 측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민간 등 주체별로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구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의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지정될 수 있고,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상호 간에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특구의 지정 단계부터 광역적으로 접근해야 할 도시의 관리적 측면에서 영향, 운영 및 관

리 평가에 대한 타당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착 및 지원 등 규제특례 적용 이후의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 필요

서울시는 2005년 6월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를 시작으로 9개 자치구와 4개 분야에 서 총 10개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양재·우면R&CD특구’가 지정될 예정¹⁾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가 진행되는 등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내 지정된 10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 특징을 보면 기존의 특구는 행사시 차량통행금지, 외국인 교원임용기준 완화,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등 일시적이면서 비물리적 사항에 한정되어왔으나, 201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특구’를 시작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150%) 등의 도시계획적 사항에 대한 특례적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구위원회를 통과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대한 의제처리가 가능하지만, 특례적용 이후 이를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특구의 지정이 결정되기 전에 도시계획적 완화에 관한 판단을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하며 향후 도시관리에 대한 부영향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구지정 이후에 해마다 특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주관관청인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틀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초자치단체의 특구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 자체적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특구의 지정이 지역 주민 또는 업체의 운영 및 지역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운영실태 및 평가로 가늠하는 것이

1) 양재·우면 R&D지구 육성 종합계획에서는 대상지 전체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관련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원녹지법, 도로관리법, 도로법 등 비물리적 규제특례는 특구 전체에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물리적 규제특례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서울시 내에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의 산업 및 지역의 활성화에 미친 실효성과 관리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현재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특구나 차후에 특구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점차 확대·지정되어 가는 특구가 단순한 규제 완화의 특례적용에 그치지 않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특구가 거둔 성과를 지역주민 및 관련 업체와 관련 소관 기관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등 각 주체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한 쟁점과 한계를 도출한다.

두 번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특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향후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세 번째, 개선방향에 부합하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각각의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특구의 관리 및 운영과 장기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체제와 제도, 정책의 개선방안을 구체화한다.

2_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구추진계획, 특구지정 후 지역의 여건변화, 특구의 운영 및 관리, 규제특례적용사항, 특구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필요한 지원 사항, 제도 및 정책 개선사항 등 특구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대표적인 지정 사례와 함께 서울시 내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10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특구의 지정이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지역의 변화 등의 심층적인 분석은 교육을 제외

한 산업 중심으로 지정된 4개 특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 특구가 지정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6년 7월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1-1]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특구 명칭	특구 유형	특징
서울악령시 한방산업특구(2005)	향토자원·유통물류	서울시 지역특구 9개소의 규제특례는 행사시 차량통행금지, 외국인 교원 임용기준 완화,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등 일시적·비물리적 사항에 한정
노원구 국제화교육 특구(2007)	교육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2007)	교육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2007)	관광레포츨	
관악구 Edu-Valley 교육특구(2010)	교육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2014)	의료·복지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2015)	관광레포츨	
성동구 용복합혁신 교육특구(2015)	교육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2016)	교육	
강서 미래클-메디특구(2015)	의료·복지	

2) 연구방법

연구는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행 연구 및 관련 제도 검토, 현장조사 및 공간분석,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사업체 설문조사, 담당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서울시 특구별 대상 지역의 선정 과정, 규제특례 적용사항, 특화사업 등에 관한 특구지정 신청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제도, 선행연구 및 관련 계획, 국내외 특구 관련 사례의 운영사례 등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서울시 내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중 지역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 중심의 4개 특구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및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특구지정 전후의 건축 동향 등 물리적 변화를 조사·분석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주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 특구를 제외한 산업 중심의 4개 특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1:1 방문면접방식으로 총 359부를 진행하였으며, 기초현황 및 입지 장단점,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인지도 조사와 전후 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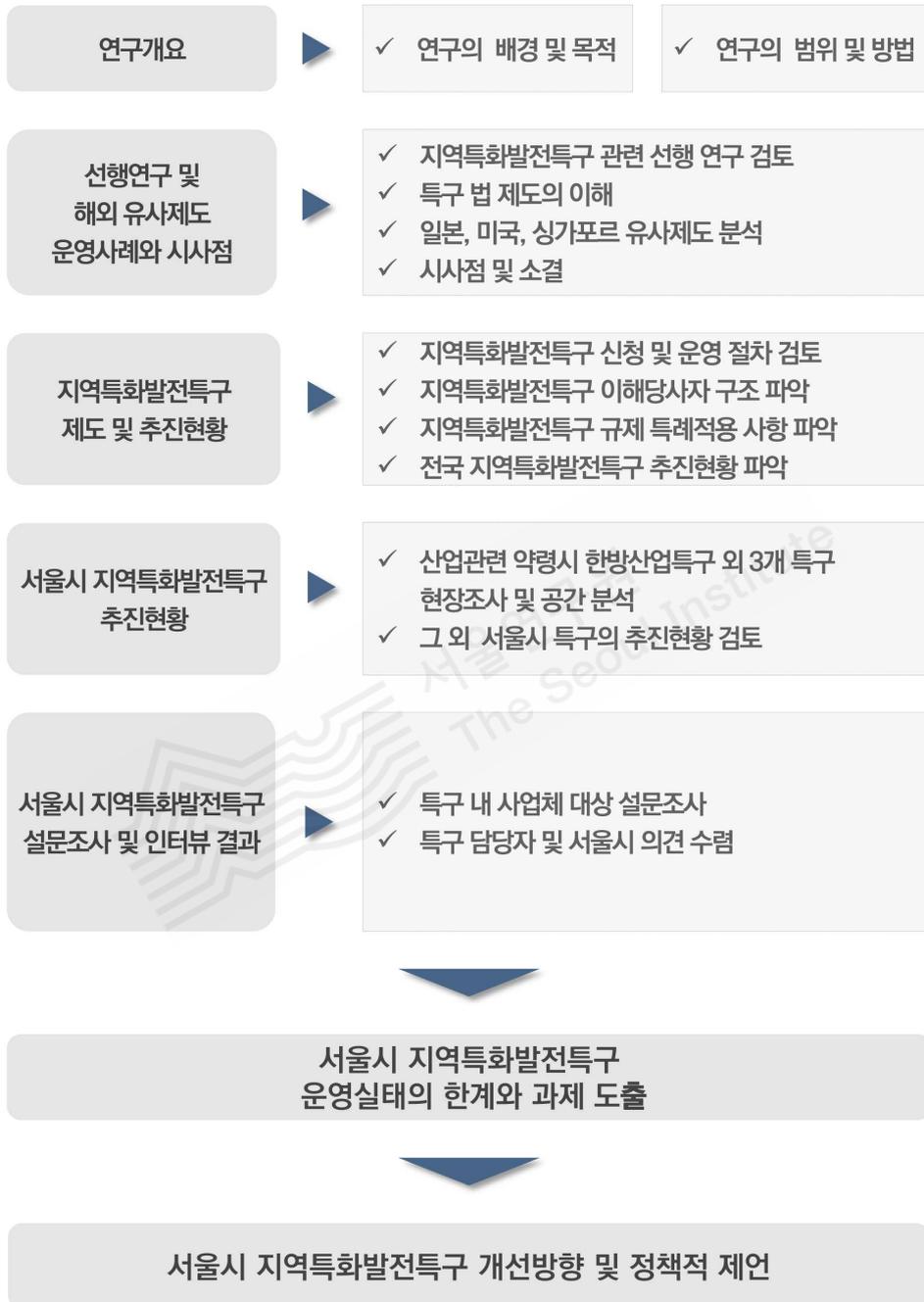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도입과 정책변화,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시(도시계획과, 경제정책과), 자치구(동대문, 강남, 중구, 은평, 강서)의 담당 공무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실무위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연구의 흐름

연구는 선행연구 및 해외 유사제도 운영사례와 시사점, 특구 제도 및 추진 현황, 서울시 특구 추진 현황, 서울시 특구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특구의 운영 실태의 한계와 과제, 특구 개선방향 및 정책적 제언 결론 및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된다.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입안·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에서 지정·고시를 하는 정책으로, 먼저 관련 선행연구와 상위계획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현행 제도와 유사제도,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국 및 서울시 특구의 일반적 운영 현황은 특구계획서를 통하여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였고, 지역변화에 대한 물리적 분석 및 심층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가진 문제점을 종합하여 한계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02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 검토

1_선행연구 검토

2_관련 제도 검토

02 |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 검토

1_선행연구 검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최초 연구는 김경수(2005)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개발 동향과 부산의 대응방안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구계획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특구계획안 수립이 필요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추진이 필요하며 광역자치단체-기초지자체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영종(2009)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서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 민간사업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및 민간역량의 극대화, 광역경제권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 중앙부처 간 정책협조체제 강화, 특구 운영 성과평가 제도의 재정비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국기업평가원(2012)은 특구제도에 대한 국내외 유사제도 분석, 지역 특구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특구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특구 제도가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의 왜곡, 편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세제 지원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2014)은 우리나라 지역특구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일본의 구조개혁 특구와 비교분석하여 지역특구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2015)은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성과를 지자체가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특구제도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일본 구조개혁특구 제도의 운영현황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 및 국내 특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의한 특화사업들이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특구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을 위해서 특구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들 간의 상호 협력과 사업의 연계, 사업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효율화, 과감한 규제특례 완화와 재정 및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표 2-1] 선행연구의 검토

저자(연도)	연구 제목(출처)	주요 내용
김경수(2005)	지역특화발전의 개발 동향과 부산의 대응방안	1) 의견 수렴하여 구체적 특구계획안 수립 필요 2)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구개발 추진 3)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추진 필요 4)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체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상공회의소(2007)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과 개선과제	1) 교육, 의료복지, 향토자원진흥 관련 추가 규제특례 범위 제시 2)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 특구제도 운영을 통해 규제개혁 촉진 및 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여 성장동력 창출 및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마련 필요
박영종(2009)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1)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 2) 민간사업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민간역량의 극대화 3) 광역경제권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 4) 중앙부처 간 정책협조체제 강화 5) 특구 운영 성과평가 제도의 재정비
(사)한국기업평가원 (2012)	지역 특구 성과평가를 통한 지역특구제도 발전전략	1) 관련 부처 및 행정구제기관과의 협력강화 2) 질적 성장을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고도화 필요 3) 운영되는 모든 특구를 총괄하는 부서의 창설 검토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2014)	지역 특구 10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1)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 2) 지역 특구 유형의 다양화 3) 다른 지역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지원 4) 특구제도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강화
중소기업연구원 (2015)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1) 과감한 규제특례 완화 2) 규제특례 발굴체계의 정비 3) 사업관리시스템의 효율화 4) 지역발전사업 등 예산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 방안 모색

2_관련 제도 검토

1) 특정개발지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비교 검토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본적으로 지역(산업)경제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표 2-2] 내용과 같이 목적과 법적 근거, 사업절차 및 내용, 지원내용, 도시계획적 지원 등에서 상이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정 조건이 되면 기업과 건물주에게 세제 및 재정지원, 지원시설 설치 운용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였지만,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 완화에 대한 혜택반영 이외에 특별한 지원내용이 없다.

[표 2-2]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비교

구분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
목적과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업종 유치하여 지역(지방)경제 활성화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색을 반영한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사업절차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수 1% 이상 • 1km²당 종사자 수가 2배 이상 • 5년간 종사자 수 성장률이 0 이상 • 사업자 수 10개 이상, 성장률이 1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선정조건 없음 • 5가지 유형 : 의료·복지,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향토자원·유통물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업종용도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 기업외국인투자기업 • 기업지원시설 설치·운영 • 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중심으로 국가는 규제특례 혜택만 부여
도시계획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우선 설치 •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최고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폐율·용적률 완화(150% 이내) • 체육시설의 증축·개축·변경(30% 이내)
적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 귀금속, 성수 IT, 마포 디자인·출판, 동대문 한방 약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 화훼산업특구,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등

2)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2030 서울플랜(서울 도시기본계획), 서울시 생활권계획,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를 진행하였다. 각 계획에서의 계획 범위 설정, 비전 및 전략, 방향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현재 서울시에 지정되어있는 10개의 특구 중 산업 중심의 4개 특구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적인 사항과 사업적 연관성을 4장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2-3] 상위계획 검토

구분	계획 범위 설정	비전 및 전략	방향
2030 서울플랜 (서울 도시기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10년, 목표연도 2030년 공간적 범위: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의 미래상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공간구조 개편 및 권역별 방향 제시 계획실현 전략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중심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과 함께 수립 - 목표지향적 전략계획 - 서울시 전 부서의 협력계획 - 생활권계획의 역할 및 위상 강화
서울시 생활권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5개권역(대생활권) 계획, 지역(소생 활권)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 및 지역 생활권별 종합 발전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플랜의 공간계획 및 이슈별 계획 내용 구체화 도시계획의 수립방향 제시 자치구 간 상생발전 위한 근거 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도심, 마포, 부도심 외 지역중심, 주요 역세권 등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09년, 목표연도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분별한 재개발을 자양 도시 골격을 유지 시키는 ‘최소한 철거’ 방식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의 역사문화 특성 유지 노후한 부분만 숙아 정비해나가는 ‘소단위 맞춤형’ 개발 도심부 이외에 낙후된 역세권 등 전략적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서울시 주거지역 대상 약 313km² 시간적 범위: 목표연도 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 서울 저성장 문제에 적합한 목표 및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민간·행정이 함께 만들 핵심지역 경쟁력 향상 쇠퇴지역 삶의 질 제고
경제비전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서울시 시간적 범위: 목표연도 20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조혁신 융복합 경제 리더십·협력 글로벌 경제 상생·지속 공존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융복합 산업을 바탕으로 BS산업·금융·서비스업 및 관광·MICE산업 육성

[표 2-4] 관련 계획 검토

구분	계획 범위 설정	개요
지구단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관할구역 내 일부지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입체적 시설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도시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구역 지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주거·상업지역(1만㎡ 이상), 공업지역(3만㎡ 이상), 자연녹지(1만㎡ 이상) - 비도시지역(30만㎡ 이상, 예외적인 경우 20㎡ 이상) - 광역도시·도시기본계획상 개발 가능한 지역(시가화 예정용지 등) - 광역도시, 도시기본계획 미수립지역: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지정 - 취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구역: 면적제한 없이 지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단일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관련한 지역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규제프리존²⁾

(1) 개념 및 주요 내용

규제프리존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되는 지역을 말한다. 공간적 범위는 각 시·도의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 산업기반, 규제의 성격 및 구체적인 투자프로젝트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철폐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규제 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개선하고, 융복합 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에서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에 대한 정부지원에 집중한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사항은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T/F 및 재정 당국의 검토를 거쳐 마련할 계획에 있다.

(2)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지역전략산업의 선정은 지역-경제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지역에서는 산업기반 및 발전전략을 감안하여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기술산업 위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63개의 기존 주력산업,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략산업 등 다양한 지역의 특화산업을 고려하여 제안해야 하며, 중앙 정부는 지역 간 업종이 과도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3) 주요 특례사항

규제프리존의 주요 특례사항으로는 지역전략산업과 입지규제에 대한 규제특례사항이 있다. 지역전략산업은 바이오산업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우선 심사, 관광산업의 숙박공유서비스 허용 및 학교정화구역 내 위폐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설립 허용 등에 대한 규제특례사항을 말한다.

²⁾ 김영수(2016), 「한국의 규제프리존 정책과 향후 과제」, '지역희망박람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를 토대로 작성

입지규제에 관하여 규제프리존 내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도시개발구역,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의 사업에 대한 지정 및 변경, 계획 수립, 승인, 변경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법, 개발제한구역,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등이 존재한다.

[표 2-5] 규제프리존의 주요 특례사항

구분		주요 내용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사항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및 의리기기 허가에 대한 우선심사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등
	자율주행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 • 자율주행차 관련 비식별화 정보는 위치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 등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공유서비스 허용 •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설립 허용 등
	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관련 마이스터고 지정요건 완화 •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 지정 근거 마련 등
	I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등
	IoT 첨단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 관련 검열 승인 제도 폐지 등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사항	환경영향평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프리존 내 관련 사업 인허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간 단축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프리존 내 사업자는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 등

자료: 김영수(2016), 「한국의 규제프리존 정책과 향후 과제」, 지역희망박람회 국제학술포럼 발표자료

규제프리존의 도입은 지역의 특성화된 경제·산업 환경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써 규제개혁을 계기로 신산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과 기존 지역 주력산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 3월 현재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03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및 추진현황

- 1_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및 운영절차
- 2_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체계
- 3_전국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현황

03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및 추진현황

1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및 운영절차

1) 특구 신청 절차³⁾

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추진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특구지역 선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 모든 지역이 가능하며,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광지구 등에서 지정할 수 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최대 3개까지 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지역에 대해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구지역 내에서는 1개 이상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특구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구기획단 또는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현가능성과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계획을 도출해 내고 이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확인해야 한다. 특구계획안이 수립되면 이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식경제부 특구기획단에 특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내용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구의 개요(명칭·위치·면적, 특구지정 필요성),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특구토지이용계획, 건폐율·용적률 규제특례 등의 규제특례사항,

3) 한국기업평가원(2012), 「지역특구성과평가를 통한 지역특구제도발전전략」, pp.25~28 요약 및 재작성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 제38조

필요성 및 적용범위, 자원조달방법,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할 때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사업의 종료 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재 생략),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밖에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특구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적용 시에만 작성하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량에 관한 계획,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특화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내용이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표 3-1]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세부내용

관련 조항	세부내용
법 제21조 제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특화사업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합의하여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설치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사항 포함
법 제32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의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할 수 있으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특구계획에 포함
법 제36조 제2항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한정함
법 제43조 제1항·2항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음
법 제44조 제1항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영제한 가능하며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을 특구계획에 포함해야 함
법 제44조2 제1항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법 제44조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호, 소음진동관리법 제8호 제1항 및 제2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2항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자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내용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서 아래 [표 3-2]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표 3-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특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명칭, 위치, 면적, 특구의 대외적 표시방법
특구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 특구지역 여건 분석: 지리적 여건, 산업, 교육 등 • 특구 특성 및 생산기반 현황 • 특구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정책적, 경제적 등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설정 지역지구 설정 여부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사업 개요 및 세부추진계획
특구 토지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제40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작성
규제특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계획의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성 및 적용범위 • 각 특례에 대한 기대효과 등 상세히 작성
연도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집행계획 •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자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에 관한 계획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
기타 필요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자료: 중소기업청, 「특구지정 신청서 작성 예」 참조

2) 지정 및 운영

특구지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특구의 지정 등)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원회 검토,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다.

지역특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90일 이내로 심의하여 특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된 특구계획의 실행가능성,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 지역의 특화발전예의 부합 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구지정 고시가 완료되면 특구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특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변여건변화로 인해 특구의 계획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구계획 변경승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구의 명칭 변경, 규제특례 적용, 특화사업의 목적이나 주요 사업범위 변경 등 특구계획 변경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동 시행령 제27조(특구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외에 경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림 3-1]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및 운영절차

3) 평가 및 관리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7조(특구 운영의 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특구운영의 성과 보고)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특구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특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성과보고서에는 해당 연도 특구운영의 성과와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평가내용, 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및 특구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특구 운영성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자세한 내용은 [표 3-4]와 같다.

특구위원회가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5조의3(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에 따라 특구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규제특례의 활용효과, 지역 주민의 참여도,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표 3-3]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세부내용
• 특화사업과 지역 특성 및 여건의 적합성
•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 등의 확보
•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 지역주민·기업 등의 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 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 다른 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 포함)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

자료: 중소기업청, 「지역특구 지정·변경·해제 업무참고자료」

[표 3-4]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보고서 세부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역특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일, 위치 및 면적, 지정사유 • 특화사업 추진계획 • 규제특례 	
2014년도 특구운영 실적 및 성과	특구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계획 등과 유기적 연계성 • 특구 담당조직 현황 •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현황 • 지자체장의 의지
	특구 운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획대비 특화사업 추진실적 • 당초 계획대비 자원소달 실적 • 규제특례 활용실적 • 특구 홍보실적
	특구 사업성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통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일자리 창출, 신규 유치 기업 2) 유형별 지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향토자원·유통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업체 매출액, 농가 소득액, 축제 소득액, 기타) • 특구 방문객 ② 관광레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업체 매출액, 축제 소득액, 기타) • 특구 방문객: 관광객 유치 인원, 축제 등 방문객 ③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특구 예산, 지자체 일반예산 비중 • 교육시설 이용자수 ④ 산업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업체 매출액, 축제 소득액, 기타) • 지적재산권 보유: 특허출원 및 등록 • 특구 방문객 ⑤ 의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업체 매출액, 축제 소득액, 기타) • 특구 방문객: 의료시설 이용자 및 축제 등 방문객 3) 지자체 핵심성과 지표 4) 민간투자 활성화 지표
	지자체 자율설정 자치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소득 증가율, 주민만족도, 의료복지 관련 프로그램 개설 수, 특화사업 관련 농가 생산물 및 증가율 등
특구운영상의 애로·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운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15년도 특구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사업 추진계획, 특구계획 변경 추진(안) 등 	
특구 운영성과 자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전략, 운영실적, 사업성과 관련 자체 평가 	

자료: 중소기업청, 「2014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 보고서」

2_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체계

1) 특구 관리·운영조직

(1) 특구 담당부서

2004년 11월 재정경제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이 공식 출범하고, 2008년 2월에 지식경제부로 이관, 2013년 3월에 중소기업청으로 담당부서가 이관되었으며,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역특구 위원회 및 특구제도 운영, 특구 운영성과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외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심의위원회 및 실문위원회 운영,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자치구에서는 특구 및 특화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건소 또는 자치구청의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2]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담당조직과 업무

(2) 특구 위원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제45조(설치 및 운영)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에 설치된다. 위원장 1인(중소기업청장), 부위원장 1인(국토교통부 실장급),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특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특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외에도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주요 검토내용이다.

(3) 특구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제4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근거하여 설치된다. 실무위원회는 특구위원회의 상정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청 차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적용 사항

규제특례에 관련된 사항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제3장(규제특례에 관한 사항)⁵⁾과 같이 일반적인 사항,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권한이양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각 규제특례에 관한 항목 및 내용은 [표 3-5]와 같다.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에는 61개의 일반적인 규제특례, 53개의 토지이용 규제특례, 15개의 권한이양 특례 등 총 129개의 규제특례 관련 법률이 있다.

[표 3-5]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관련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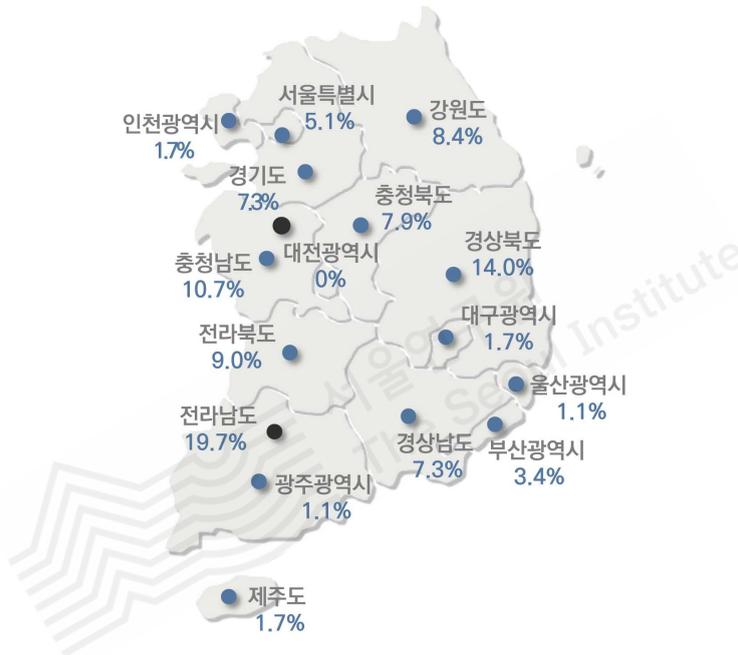
구분	규제특례 사항	내용
일반적인 규제특례	초·중등교육법	외국어 교원 및 강사 임용기준 완화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체류자격 사증발급절차 완화, 체류기간 상한 연장
	도로교통법	자동차 등 도로통행 금지 또한 제한 등의 조치 가능
	옥외광고물 관리법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조례로 지정
	농지법	농지 위탁경영, 농업진흥지역 해체 및 농지 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산지 전용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함
	약사법	한약도매상은 공동으로 관리약사 배치
	의료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최대한도 완화
	도로법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즉시 협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점용대상점용 기준·행위 허가기준 조례 지정
	특허법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 가능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물류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의 지정 등
권한이양에 관한 규제특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특구장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식품위생법	특구장이 식품 표시내용과 영업시간을 달리 정함
	자동차관리법	특구장이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 신고 및 운영자 준수 사항을 조례로 지정

자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의 일부 발췌 및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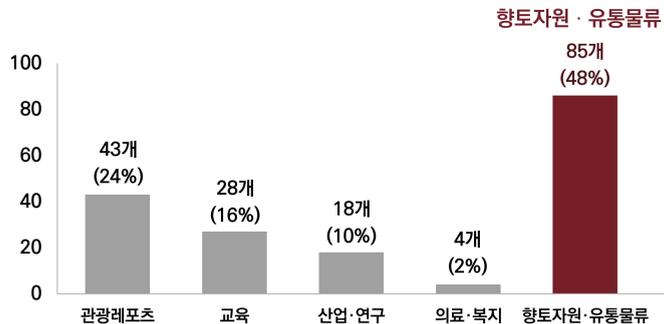
3_전국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현황

1) 전국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2004년 9월에 시행하여 2016년 7월 기준으로 현재 전국에는 178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라남도 19.7%, 경상북도 14.0%, 충청남도 10.7% 순으로 특구 지정 비율이 높으며, 5개의 유형 중 향토자원이 48%, 관광레포츠가 24%로 특구 유형이 편중되어 있다.



[그림 3-3] 전국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그림 3-4] 전국 지역특화발전특구 유형 현황

(1) 유형별 지정현황

[표 3-6] 지역특화발전특구 유형별 지정 현황

지정연도	향토자원·유통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합계
서울(9)	1	2	5	-	2	10
부산(6)	1	3	2	-	-	6
대구(2)	1	-	-	2	-	3
인천(3)	1	1	1	-	-	3
광주(2)	1	-	1	-	-	2
대전(0)	-	-	-	-	-	0
세종(0)	-	-	-	-	-	0
울산(2)	1	1	-	-	-	2
경기(11)	4	4	1	3	-	12
강원(12)	7	4	-	3	-	14
충북(11)	8	3	1	2	-	14
충남(12)	12	1	4	1	-	18
전북(11)	7	4	-	3	2	16
전남(21)	18	8	8	1	-	35
경북(20)	17	6	3	1	-	27
경남(10)	5	4	2	2	-	13
제주(2)	1	2	-	-	-	3
계	85	43	28	18	4	178

자료: 중소기업청, 「지역특구 지정 현황(16년 7월)」, 0 안은 지역특구 관할 기초지자체 수

(2) 규제특례적용 현황

일반적인 규제특례가 61개, 토지이용 규제특례가 53개, 권한이양 특례가 15개 있으며, 총 129개의 규제특례사항이 있다. 전국 규제특례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규제특례가 토지이용 규제특례보다 많은 수로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146건),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107건)에 대한 활용 빈도가 높다.

[표 3-7]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적용 현황

구분	적용특례(관련 법률)	적용특구 수
일반 규제특례 (61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46
	도로통행 제한(도로교통법)	107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대(농지법)	60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특허법)	48
	도로점용 허가 지체없이 허용(도로법)	52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출입국관리법)	45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초·중등교육법)	24
	기타	166
	소 계 (적용특례 49개)	648
토지이용 규제특례 (53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21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농지법)	16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법)	1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국토계획·이용법률)	10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국토계획·이용법률)	4
	기타	42
	소 계 (적용특례 49개)	104
권한이양 특례 (15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식품위생법)	69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등록 완화(체육시설설치이용법)	7
	기타	5
	소 계 (적용특례 4개)	81
129개	합 계 (적용특례 74개)	833

자료: 중소기업청 「지역특구 지정 현황(16년 7월)」

2)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 적용 특구 현황

(1)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 개요

- 위치 및 면적: 인천시 중구 북성동, 선린동 일대, 114,136㎡
- 시행기간: 2007년 ~ 2016년, 사업비: 295억 원
- 특화사업자: 인천시 중구청장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은 1883년 인천항 개항 후, 중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중국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차이나타운 내 중국풍 공원 조성, 중국문화체험시설 설치, 관광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주요 특화사업

- 중국풍 공원 조성 및 중국문화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
- 청일조계지 정비 및 관광인프라, 테마거리 조성, 자장면 축제 등 이벤트 사업

○ 규제특례사항

중국인 요리사의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규제(특례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와 특구 내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행 및 자장면 축제 등 행사 시 일부 도로 통행 제한(특례법 제22조 「도로교통법」)이 있다.

[표 3-8]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규제특례 적용사항

출입국관리법 적용사항	도로교통법 적용사항
 <p data-bbox="336 1665 633 1696">중국인 요리사 체류 기간 연장</p>	 <p data-bbox="823 1665 1081 1696">특구 내 행사 중 차량제한</p>

(2) 대구 패션주얼리 특구

○ 개요

- 위치 및 면적: 대구시 중구 교동-화전동 일원, 74,954m²
- 시행기간: 2005년 ~ 2016년, 사업비: 233.2억 원
- 특화사업자: 대구시 중구청장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대구 교동 일대는 약 470여 개의 귀금속 관련 업체가 밀집된 귀금속 제조유통의 중심지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귀금속 수리·판매·가공 시설물을 집적화·현대화하고, 공동연구·기술개발의 촉진으로 귀금속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주요 특화사업

-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및 대구 보석박람회 개최
-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패션주얼리축제 개최 및 홍보

○ 규제특례사항

패션주얼리 축제 행사 시 차량통행 제한 허용(특례법 제22조 「도로교통법」)과 패션주얼리 사업의 산학 공동연구·기술개발 허용(특례법 제3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다.

[표 3-9] 대구 패션주얼리 특구 규제특례 적용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사항	도로교통법 적용사항
	
패션주얼리 산업 산학 협력	행사 개최 시 차량 통제

(3) 청양 고추·구기자산업특구

○ 개요

- 위치 및 면적: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202번지 외 223필지, 450,145㎡
- 시행기간: 2006년 ~ 2019년, 사업비: 370억 원
- 특화사업자: 청양군수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청양고추의 친환경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단순 생산에서 탈피한 가공제품의 개발·생산, 고추체험단지 조성,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기지정된('06년 9월) 특구에서 특화사업의 효과를 위해 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면적을 확대하고, 고추박물관 및 고추테마공원 등의 세부사업을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다.

○ 주요 특화사업

- 청양고추 가공 현대화사업, 구기자 특화시장, 고추박물관, 체류형 주말농장 조성
- 청양고추랜드 활성화 사업,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 개최 등

○ 규제특례사항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사용대 허용(특례법 제26조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특례법 제39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특례법 제40조 「허가 등의 의제」)가 있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운영하고 있다.

[표 3-10] 청양 고추·구기자산업특구 규제특례 적용사항

농지법 적용사항	식품위생법 적용사항
 <p data-bbox="336 1671 620 1704">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허용</p>	 <p data-bbox="761 1671 1127 1704">고추관련 가공식품 표시기준 별도고시</p>

(4) 담양 인문학 교육 특구

○ 개요

- 위치 및 면적: 담양군 남면 지곡리 319번지 외 139필지, 864,256.34㎡
- 시행기간: 2016년 ~ 2020년, 사업비: 234억 원
- 특화사업자: 담양군수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죽농원, 한국 대나무박물관 개관,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개최 등을 기반으로 특구 지정을 통해 사람과 자연, 교육이 어우러진 인문학 생태 도시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사미인곡 등의 가사문학과 정자문화, 대나무 생태 등 지역자원을 인문학과 융합하는 차별화된 교육특화 전략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 주요 특화사업

- 인문학 콘텐츠 개발, 담양 평생 인문학학교 운영 및 글로벌 인재교육 지원
- 담양 대나무 문학축제, 담양군 공예센터 및 복합 문화거리 조성 등

○ 규제특례사항

특구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로 외국인 교원 임용에 관한 규제특례 완화(특례법 제19조 「초·중등교육법」), 축제 및 관련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차량통행 제한(특례법 제22조 「도로교통법」)이 있다.

[표 3-11] 담양 인문학 교육 특구 규제특례 적용사항

국유공유재산법 적용사항	초·중등교육법 적용사항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사용허가	외국인 교원 임용 규제 완화

3)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사항 적용 특구 현황

(1)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 개요

- 위치 및 면적: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 5,699,000㎡
- 시행기간: 2008년 ~ 2018년, 사업비: 8,576억 원
- 특화사업자: 서산시장,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서산 지역에 바이오산업과 웰빙 관광산업이 접목된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신 농촌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태안기업도시와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관광 레저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특화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한다.

○ 주요 특화사업

- 농업바이오단지, 농업체험단지 등의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시설 조성
- 골프장시설 조성 및 노인복지시설 조성, 기타공공사업 등

○ 규제특례사항

도시관리계획의 결정(특례법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특례법 제26조 「농지법」)가 있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간척농지를 연구시설 41.2만㎡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표 3-12]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의 위치도 및 규제특례 적용사항

위치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p>	 <p style="text-align: center;">토지이용계획변경 승인</p>

(2) 고성 조선해양산업 특구

- 위치 및 면적: 경남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 3,884,176m²
- 시행기간: 2007년 ~ 2018년, 사업비: 7,592억 원
- 특화사업자: 고성군수, 삼호조선해양, 삼강엠앤티, 고성조선해양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고성군은 남해안 조선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진해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 수심이 깊고 타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여 조선산업의 최적지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조선산업을 유치·조성하여 낙후된 지역발전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 주요 특화사업

- 특구 조성 면적의 70%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써, 조선산업특구의 해양플랜트 설비 생산에 필요한 전용 공간의 추가 및 확대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부 및 점사용부를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조선기자재 및 조선,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조선소 건립 등

○ 규제특례사항

특구 내 소재한 분묘개장 통보기간 단축(특례법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특구 내 국·공유재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특례법 제36조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규제특례를 통해 미매입 토지 등에 대한 사용·수용 가능,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을 허가받아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표 3-13]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계획 범위 및 규제특례 적용사항

특구계획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의제」 적용사항
 <p data-bbox="326 1646 644 1676">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장좌지구</p>	 <p data-bbox="783 1646 1119 1676">공유수면 매립부 및 점사용부 확장</p>

(3)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 위치 및 면적: 충남 서천군 한산면 구동리 등 36개 리, 283,203m²
- 시행기간: 2007년 ~ 계속, 사업비: 137억 원
- 특화사업자: 고성군수, 삼호조선해양, 삼강엠앤티, 고성조선해양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전통적 명성이 높은 한산모시를 고급화 및 기계화를 통해 제품화함으로써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고, 모시잎·뿌리 등을 활용한 식품개발, 모시체험마을 조성 등 모시와 연계한 관광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화를 도모한다.

○ 주요 특화사업

- 모시재배단지 확대 및 기계화 공장 건립 등의 한산모시 현대화사업
- 전통한산모시 육성사업, 한산모시체험 관광사업 등

○ 규제특례사항

모시재배단지 내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사용대의 허용(특례법 제26조 「농지법」), 모시 기계화공장의 건폐율·용적률 별도 조례로 제정(특례법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산모시식품 및 음료의 별도 표시기준 고시권한 이양(특례법 제43조 「식품위생법」)이 있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 받아 운영하고 있다.

[표 3-14]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의 특화사업

주요 특화사업 1	주요 특화사업 2
 <p style="text-align: center;">한산모시 전시관 조성</p>	 <p style="text-align: center;">한산모시 체험관광사업</p>

(4)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 위치 및 면적: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농공단지 외 5개소, 520.631m²
- 시행기간: 2004년 ~ 계속, 사업비: 87억 원
- 특화사업자: 원주시장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원주시는 산·학·관 클러스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지정(2004년 6월) 받는 등 첨단의료기기 산업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특구 지역 내에 국내외 의료기기업체 유치촉진과 외국인 연구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첨단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 주요 특화사업

- 의료기기 생산업체 전용공단 조성 및 국내외 업체 유치,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업체 지원 등

○ 규제특례사항 및 기타사항

150% 한도 내 건폐율 용적을 완화(특례법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외국인 연구원 체류기간 연장(특례법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규제 완화 등으로 산업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업체를 유치하여 각종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2013년도 말 기준으로 4,966억 원의 매출과 2억 5,989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10월에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장 표창 및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표 3-15]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의 특화사업

주요 특화사업 1	주요 특화사업 2
 <p style="text-align: center;">원주 문막번계산업단지 조성</p>	 <p style="text-align: center;">원주 의료기기 진흥센터 조성</p>

4) 권한이양에 관한 규제특례사항 적용 특구 현황

(1) 의령 친환경 레포츠파크특구

- 위치 및 면적: 경남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정암리일원, 502,142m²
- 시행기간: 2005년 ~ 2012년, 사업비: 427억 원
- 특화사업자: 의령군수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의령군은 임야가 68.8%이고 1차산업이 66%를 차지하는 등 매우 낙후되어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통해 의병전적지 등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수상레포츠단지 활성화 및 친환경 대중골프장 설치를 통해 체류형 관광산업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규제특례사항

특례법 제4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인 골프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등록·변경·해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특구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사항을 적용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령관문 및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 남강 수상레포츠단지 등의 홍보강화를 위해 옥외광고물의 종류, 모양 등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고(특례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골프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하천, 농지전용 허가(특례법 제40조 「허가 등의 의제」) 등 총 5개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3-16]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의 규제특례 적용사항 및 특화사업

하천 및 농지 전용허가 의제 적용사항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의 특화사업
	
골프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 의제	곽재우 장군 생가주변 관광자원화사업

(2)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 위치 및 면적: 경북 영덕군 영덕읍 및 인근 2개면 일원, 926,888m²
- 시행기간: 2007년 ~ 2013년, 사업비: 323억 원
- 특화사업자: 영덕군수, (주)창환개발, (주)에이치엔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영덕군은 경상북도가 지정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지역으로, 이전부터 24기의 대단위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있는 지역이다. 이를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을 특화 및 육성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규제특례사항

특례법 제44조 「자동차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자동차 경주대회 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사항을 적용받아 운영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박람회 시 차량통행 제한(특례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야외 교육장 설치를 위한 농지 임대 및 위탁경영(특례법 제26조 「농지법」)이 있다. 이외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받아 운영하고 있다.

[표 3-17] 영덕 청정에너지 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적용사항

영덕 청정에너지 특구의 특화사업	도로교통법 적용사항
 <p>청정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조성 및 개발사업</p>	 <p>청정에너지 종합전시관 조성</p>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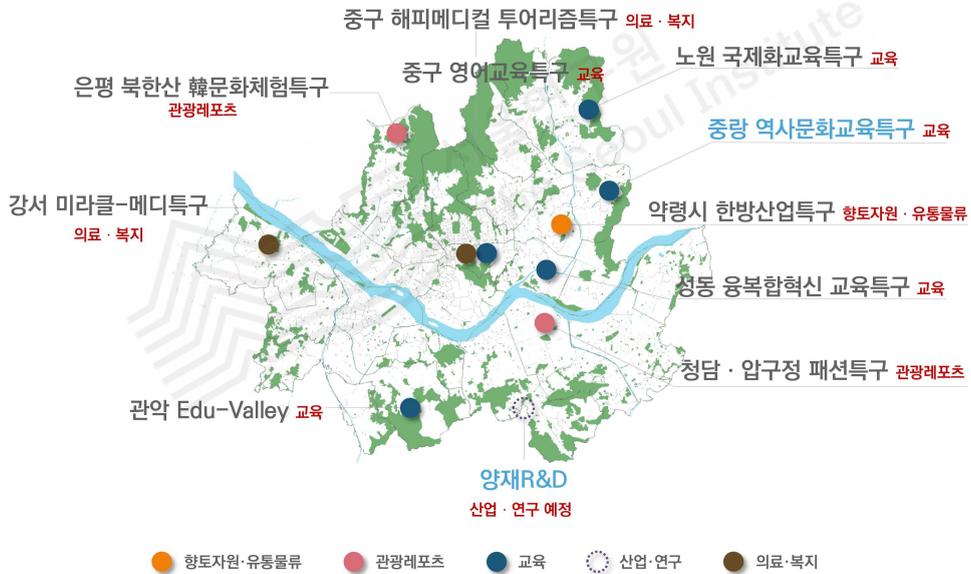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및 추진현황

- 1_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 2_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 3_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 4_강서 미라클-메디특구
- 5_그 외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04 |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및 추진현황

서울시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9개 자치구, 4개 분야에서 총 10개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교육유형의 특구가 5개소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관광레포츠 유형은 2개소, 의료·복지 유형은 2개소, 향토자원·유통물류 유형은 1개소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양재R&D가 산업·연구 유형으로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산업과 관련되어있는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를 비롯한 4개 특구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규제 및 토지이용 관련 적용 현황별로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4-1]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1_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1) 용도지역 현황

특구 범위 안에서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89.5%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은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지역에서 50.9%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38.5%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대상지 경계에 위치하는 일부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대상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 주위에 지정되어 있으며, 상업지역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 동서 간 간선도로 주변에 지정되어있다.

[표 4-1]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내 용도지역 면적

(단위: 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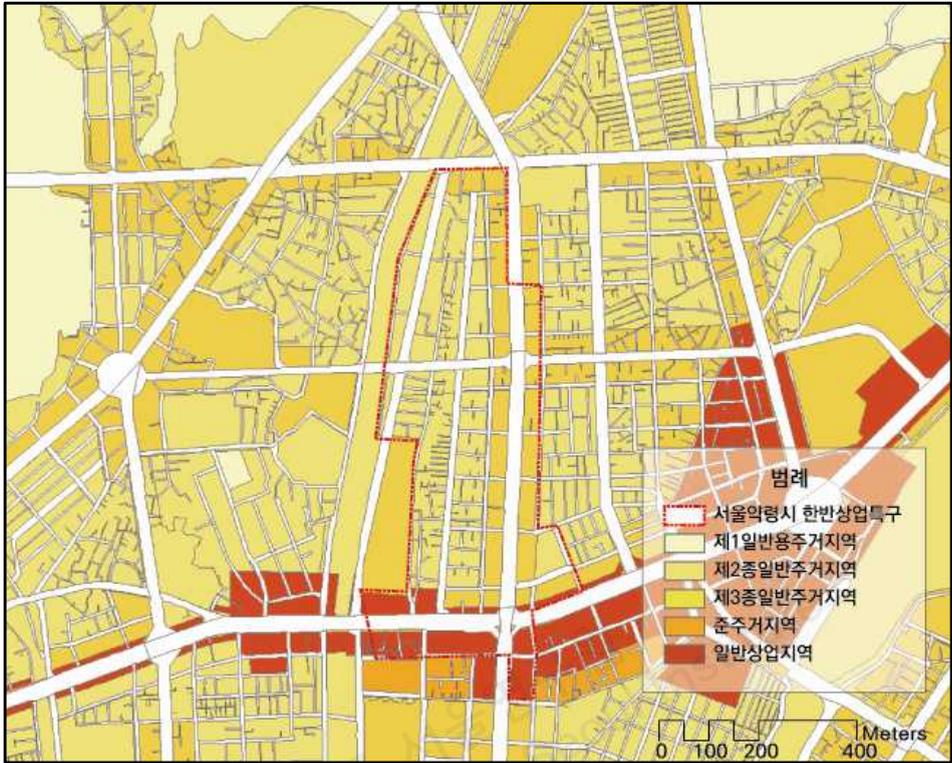
구분		면적	비율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43,010	50.9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300	38.5
	준주거지역	147	0.1
	소계	251,457	89.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9,603	10.5
	소계	29,603	10.5
합계		281,06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5, 용도지역도



자료: 네이버 지도

[그림 4-2]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위치도



[그림 4-3]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용도지역

2) 용도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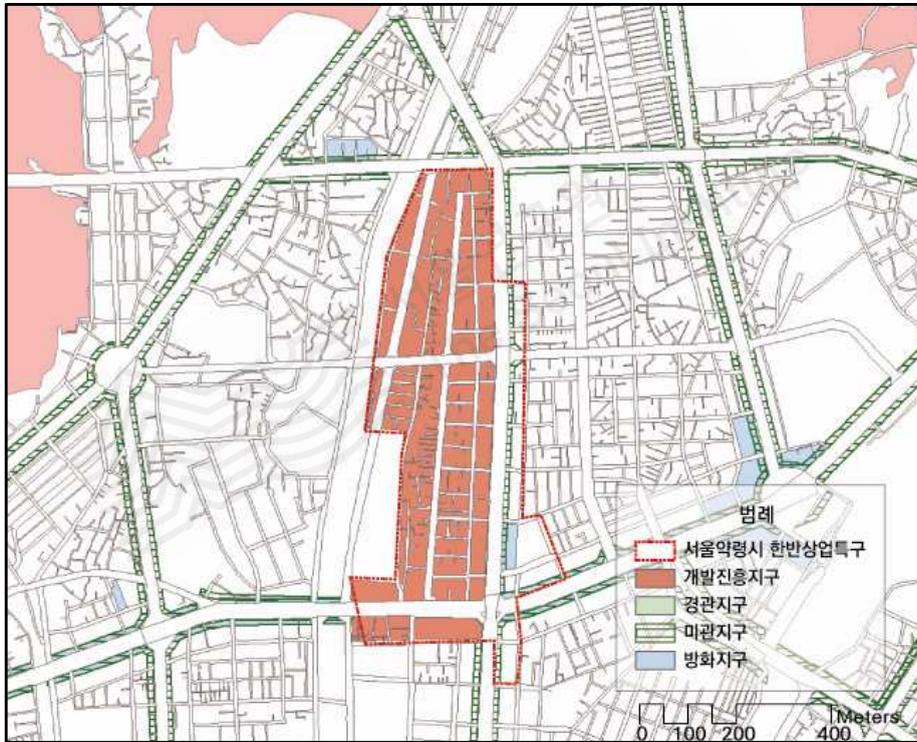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에 지정된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중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방화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미관지구는 특구를 남북 및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의 양 측면에 지정되어있으며, 방화지구는 특구 내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어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특구 내 면적의 7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관지구, 방화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상업지역 주변에서 일부 지역이 중복으로 지정되어있다.

[표 4-2]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내 용도지구 면적 및 대상지 면적에 대한 지정비율

(단위: m², %)

구분		면적	비율
미관지구	중심미관지구	8,460	3.0
	일반미관지구	21,363	7.6
	소계	29,823	10.6
방화지구	방화지구	11,519	4.1
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209,249	74.5
합계		250,591	-

자료: 국토교통부, 2015, 용도지구도



[그림 4-4]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용도지구

3) 도시계획사업 현황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내 지정된 도시계획사업에서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 사업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재정비촉진사업과 기타사업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정되어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각각 제기도시환경정비사업,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용두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은 대상지 면적의 9.2%가 지정되어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기타사업은 대상지 면적의 99.1%를 차지하고 있고, 청량리토지구획정리사업은 87.7%, 용두토지구획정리사업은 11.4%가 지정되어 있다.

[표 4-3]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내 도시계획사업 및 대상지 면적에 대한 지정비율

(단위: m², %)

구분			면적	비율
정비사업	정비사업	제기도시환경정비사업	7,834	2.8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6,781	2.4
		용두도시환경정비사업	12,836	4.6
		소계	27,452	9.8
	주택재건축 사업 예정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	25,878	9.2
소계			53,330	19.0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6,781	2.4
기타사업	기타사업	청량리토지구획정리사업	246,593	87.7
		용두토지구획정리사업	32,097	11.4
	소계			278,690
합계			338,801	-

자료: 서울시, 2015, 도시계획사업



[그림 4-5]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도시계획사업

4) 건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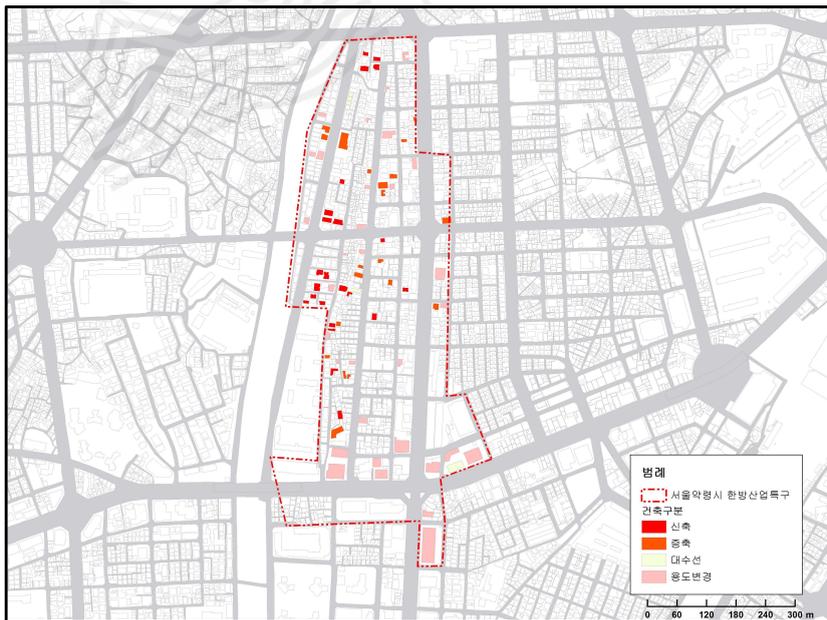
2010년~2015년 기간의 건축 동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는 신축 33건, 증축 27건, 대수선 12건, 용도변경 66건이 있었다. 신축은 단독주택 10건, 공동주택 8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 5건,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건이 있었다. 신축된 건물의 층수는 주로 3~5층인 건물이 많았으며,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한 건물의 용도는 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30건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많았다. 단독주택이 15건, 공동주택 2건으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이 많았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외에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한 건물은 업무시설이 18건으로 많았다.

[표 4-4]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건축 동향

(단위: 건)

유형별 건수		용도별 신축		층수별 신축		용도별 증축/대수선/용도변경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신축	33	단독주택	10	1~2층	5	단독주택	15
증축	27	공동주택	8	3~5층	25	공동주택	2
대수선	12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
용도 변경	66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	6~10층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30
						종교시설	1
합계	138	합계	33	합계	33	판매시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1
						업무시설	18
						위락시설	1
						합계	105

자료: 서울시건축과, 2015, 건축허가대장



[그림 4-6]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건축 동향

5)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운영 개요

○ 개요

- 위치 및 면적: 동대문구 제기동-용두동 일원, 280,688㎡
- 시행기간: 2014년 ~ 2016년, 사업비: 470억 원
- 특화사업자: 동대문구청장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유통 거점으로 한방자원이 풍부하고 지역적 여건이 좋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한방산업 중심지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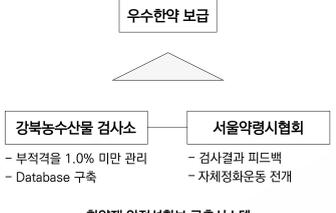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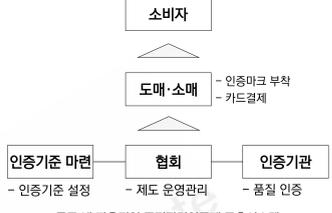
○ 주요 특화사업

- 한방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한의약 전지문화관 건립 및 테마거리 조성
- 한약재 유통개선사업: 한약재 검사 강화 및 자체 품질관리인증제 실시
- 한방선진화 사업: 한방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 브랜드 개발 및 홍보사업: 고유브랜드 개발 및 한방축제 등 이벤트, 홍보 활성화

○ 규제특례적용 사항

한방축제 등 행사 시 한방테마 거리 내 차량통행 제한(특례법 제22조 제1항 「도로교통법」),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표시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함(특례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있다. 이 외에 특례법 제29조 「약사법」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운영하고 있다.

[표 4-5]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특화사업 추진 현황

특화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한방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p>한의약 전시 문화관 건립 서울 한방진흥센터 건립</p>	 <p>한의약 테마거리 조성 환경개선사업</p>
한약재 유통개선 사업	<p>우수한약 보급</p>  <p>강북농수산물 검사소 - 부적격율 1.0% 미만 관리 - Database 구축</p> <p>서울약령시협회 - 검사결과 피드백 - 자체정화운동 전개</p> <p>한약재 안정성확보 구축시스템</p>	<p>소비자</p>  <p>도매·소매 - 인증마크 부착 - 카드결제</p> <p>인증기준 마련 - 인증기준 설정</p> <p>협회 - 제도 운영관리</p> <p>인증기관 - 품질 인증</p> <p>특구 내 자율적인 품질관리인증제 구축시스템</p>
	<p>한약재 검사 강화</p>	<p>자체 품질관리인증제 실시</p>
한방선진화 사업	<p>한방산업특구 클러스터 구축 시스템</p>  <p>약령시 협회 - 서울약령시협회 : 사업 비전 제시 및 자금 공급, 사업화 - 제조업체 : 신약제조, 상품화 - 연구기관 : 신기술 발굴, 연구 개발</p> <p>제조업체</p> <p>연구기관</p> <p>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p>	 <p>강북 농수산물 검사소 - 검사장면 예시</p>
브랜드 개발 및 홍보사업	 <p>서울약령시 Seoul Yak Ryeong Si</p> <p>고유브랜드 개발</p>	 <p>서울약령시 축제행사 장면</p>

자료: 동대문구청(2005),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지정 신청서」

2_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1) 용도지역 현황

특구 범위 안에서의 용도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이고 일부 상업지역을 포함한다. 주거지역은 95.7%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은 4.3%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지역에서 60.1%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25.8%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8.7%이고 준주거지역은 1.2%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도로 인근에 지정되어있고, 상업지역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 도로 주변에 지정되어있다.

[표 4-6]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내 용도지역 면적

(단위: 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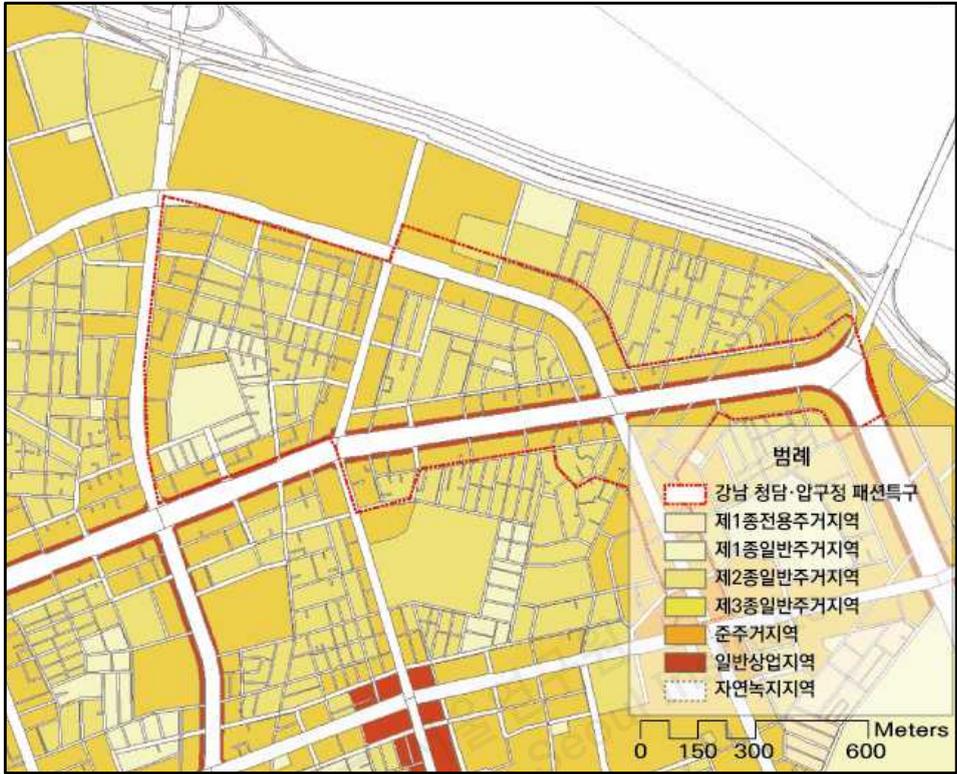
구분	면적	비율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4,209	8.7
	제2종일반주거지역	249,649	25.8
	제3종일반주거지역	581,336	60.1
	준주거지역	11,391	1.2
	소계	926,585	95.7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1,405	4.3
합계	967,99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5, 용도지역도



자료: 네이버 지도

[그림 4-기]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위치도



[그림 4-8]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용도지역

2) 용도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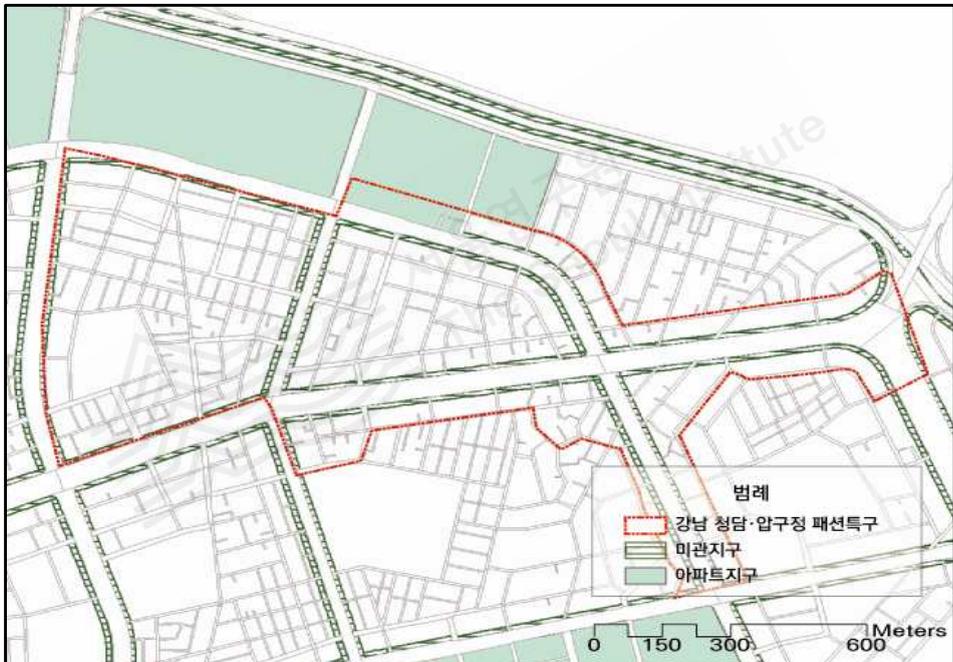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내 지정된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중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와 기타지구의 아파트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미관지구의 면적은 중심지미관지구 46,960m², 역사문화미관지구 23,354m², 일반미관지구 27,856m²로 총 98,170m²가 지정되어 있으며, 미관지구는 특구 내 도로변을 따라 양측에 지정되어 있다. 기타 아파트지구는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에 지정되어 있다.

[표 4-기]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내 용도지구 면적 및 대상지 면적에 대한 지정비율

(단위: m², %)

구분		면적	비율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46,960	40.53
	역사문화미관지구	23,354	20.16
	일반미관지구	27,856	24.05
	소계	98,170	84.74
기타지구	아파트지구	17,675	15.26
합계		115,845	100

자료: 국토교통부, 2015, 용도지구도



[그림 4-9]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용도지구

3) 도시계획사업 현황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내 지정된 도시계획 사업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기타사업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이 지정되어 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에 압구정로변지구가 지정되어있으며, 청담역 인근에 청담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압구정로변지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되어있고, 청담지구는 준주거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기타 사업으로는 영동2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대상지의 모든 범위에 지정되어 있으며,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이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대상지에 일부 지정되어 있다.

[표 4-8]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내 도시계획사업 및 대상지 면적에 대한 지정비율

(단위: m², %)

구분		면적	비율	
지구단위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압구정로변지구	78,110	7.28
		청담지구	11,391	1.06
	소계		89,500	8.34
기타사업	기타사업	영동2동지구획정리사업	966,354	90.02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사업(3주구)	17,675	1.65
	소계		984,028	91.67
합계		1,073,529	100	

자료: 서울시, 2015, 도시계획사업



[그림 4-10]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도시계획사업

4) 건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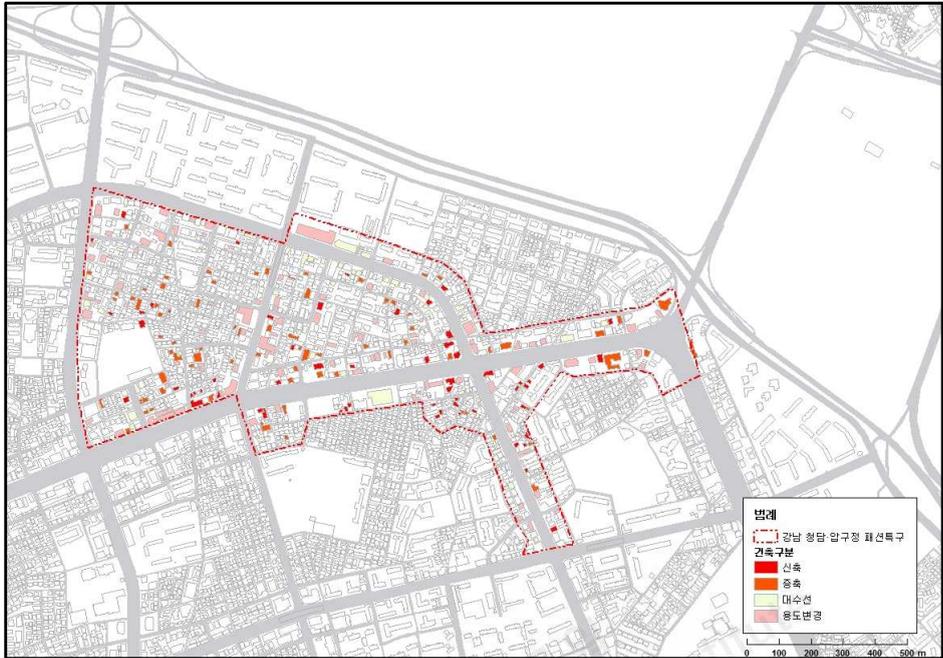
2010년~2015년 기간의 건축 동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는 신축 87건, 증축 114건, 대수선 74건, 용도변경 200건으로 총 475건이었다. 신축 건물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22건, 제2종 근린생활시설 41건으로 주로 근린생활시설이 많았다. 신축된 건물의 층수는 3~5층인 건물이 많으며,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한 건물의 용도는 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102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135건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많았다.

[표 4-9]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건축 동향

(단위: 건)

유형별 건수		용도별 신축		층수별 신축		용도별 증축/대수선/용도변경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신축	87	단독주택	1	1~2층	5	단독주택	15
		공동주택	4			공동주택	3
증축	114	제1종 근린생활시설	22	3~5층	4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2
		제2종 근린생활시설	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135
대수선	74	판매시설	3	6~10층	26	문화 및 집회시설	7
		교육연구시설	2			판매시설	4
		업무시설	10			의료시설	8
용도 변경	200	숙박시설	2	11층 이상	15	교육연구시설	10
		자동차 관련시설	2			운동시설	1
						업무시설	97
합계	475	합계	87	합계	87	숙박시설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
						합계	388

자료: 서울시건축과, 2015, 건축허가대장



[그림 4-11]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건축 현황

5)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개요

○ 개요

- 위치 및 면적: 강남구 청담동, 압구정동 일원, 978,900㎡
- 시행기간: 2008년 ~ 2014년, 사업비: 254억 원
- 특화사업자: 강남구청장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외 명품 패션숍이 밀집되어 있고 패션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특성을 살려 세계적인 패션·뷰티·문화의 중심지로 육성

○ 주요 특화 사업

- 선데이 패션·뷰티 마켓사업: 패션·뷰티 상품 할인판매, 청담·압구정 관광코스화
- 강남 패션 페스티벌 사업: 패션쇼, 베틀시장, 거리이벤트 등 개최
- 패션 시설: 프로그램 지원 사업
- 테마거리 조성: 압구정 로데오거리, 청담동 패션거리의 주제별 테마거리 조성

○ 규제특례 적용 사항

- 특구홍보용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기준 완화(특례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특구 행사관련 임시 시설물 등 도시공원 점용 및 설치(특례법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가 있다. 이 외에 특례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제33조 「도로법」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운영하고 있다.

[표 4-10]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특화사업 추진 현황

특화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선데이 패션·뷰티 마켓사업	 <p data-bbox="718 842 943 875">패션·뷰티상품 할인판매</p>	
강남 패션 페스티벌 사업	 <p data-bbox="532 1087 769 1116">패션 페스티벌 행사 개최</p>	 <p data-bbox="930 1087 1090 1116">디자이너 패션쇼</p>
패션 시설프로그램 지원 사업	 <p data-bbox="495 1329 806 1396">롯데백화점의 패션산업 지원금을 전달받은 강남구</p>	 <p data-bbox="845 1329 1181 1396">강남구의 지원을 받아 뉴욕 수주전시회 코트리쇼에 8개사 참가</p>
테마거리 조성	 <p data-bbox="587 1609 714 1638">명품패션거리</p>	<p data-bbox="943 1609 1081 1638">연예인의 거리</p>

자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 특구계획서」

3_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1) 용도지역 현황

특구 범위 안에서의 용도지역은 대부분 녹지지역이고 일부 주거지역을 포함한다. 녹지지역은 84.1%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은 15.9%를 차지하고 있다. 특구 대상지는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에 있으며 국립공원 주변부로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녹지지역은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주거지역에서 13.8%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0.6%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0.3%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3%이다.

[표 4-11]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내 용도지역 면적

(단위: 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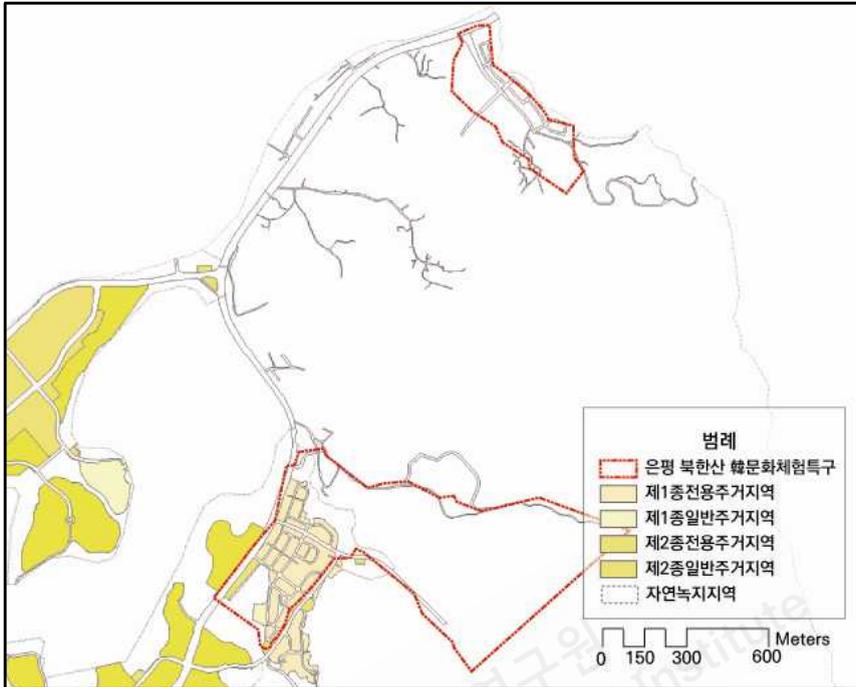
구분		면적	비율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88,900	13.8
	제1종일반주거지역	3,615	0.6
	제2종전용주거지역	2,046	0.3
	제2종일반주거지역	8,478	1.3
	소계	103,039	15.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43,330	84.1
합계		543,33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5, 용도지역지구도



자료: 네이버 지도

[그림 4-12]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위치도



[그림 4-13]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용도지역

2) 용도지구 현황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범위 내 지정된 용도지구는 없다.

3) 도시계획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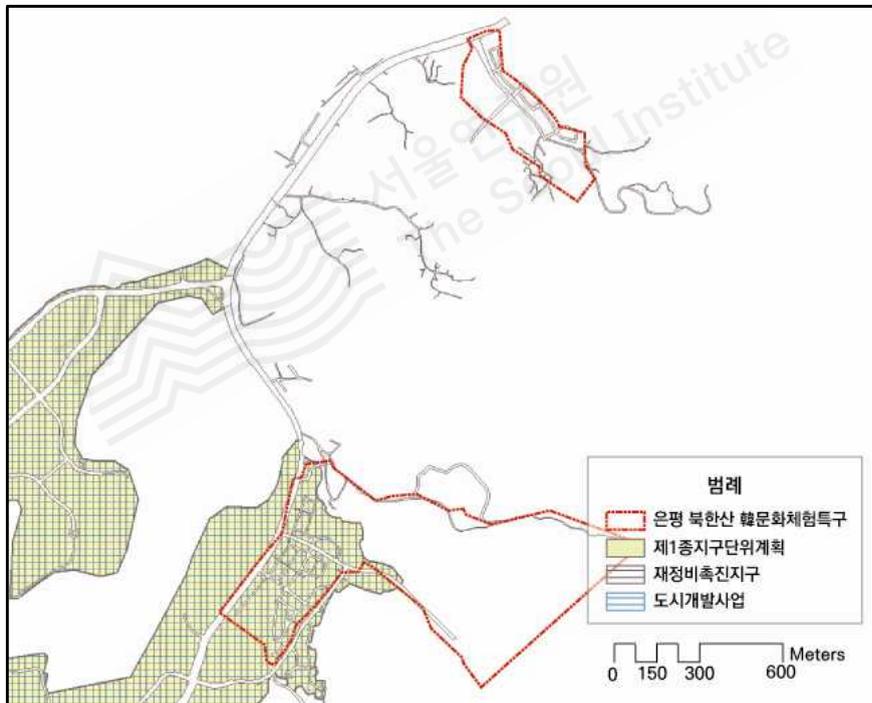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범위 내 지정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 사업, 도시개발사업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은평뉴타운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은평뉴타운 지역에 모두 중복해서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대상지 면적의 24.1%이다.

[표 4-12]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내 도시계획사업 및 대상지 면적에 대한 지정비율

(단위: m², %)

구분			면적	비율
지구단위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은평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156,091	24.1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은평구재정비촉진구역	156,091	24.1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156,091	24.1
합계			468,273	-

자료: 서울시, 2015, 도시계획사업



[그림 4-14]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도시계획사업

4) 건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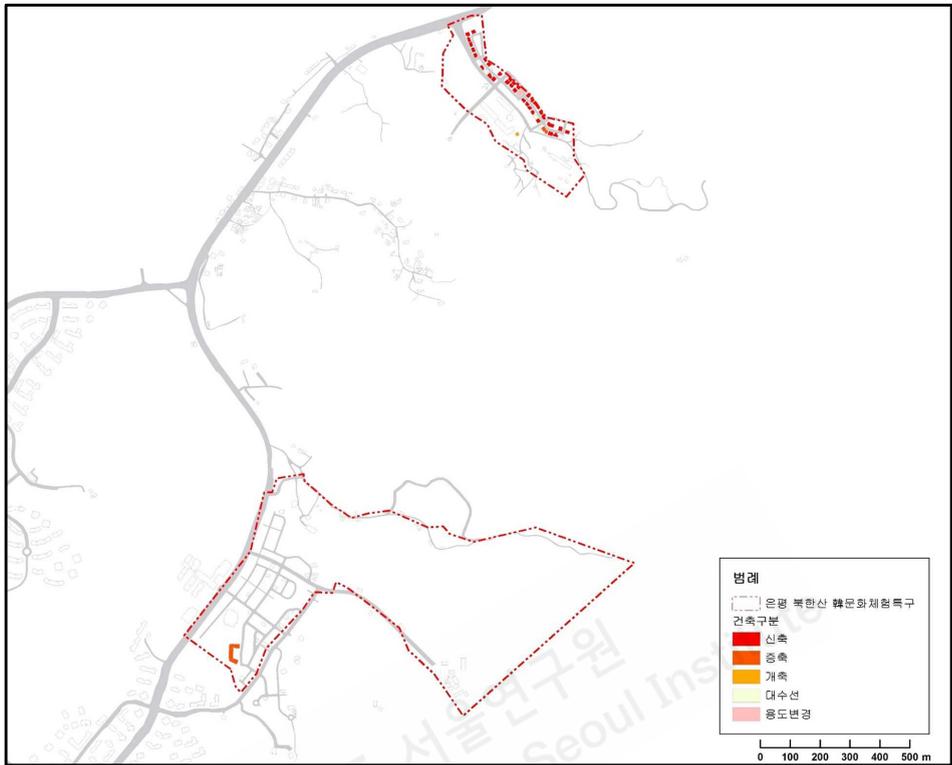
2010년~2015년 기간의 건축 동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는 신축 38건, 증축 3건, 개축 1건, 대수선 2건, 용도변경 1건으로 총 45건이 있었다. 신축 건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근린생활시설이었다. 단독주택 1건을 제외하고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25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 12건으로 신축의 97%가 근린생활시설이었으며 신축의 층수는 주로 3~5층 건물이 34건으로 많았다.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총 7건으로 신축보다 크게 적었으며 2010년~2015년 기간 동안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내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보다 신축이 많았다.

[표 4-13]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건축 동향

(단위: 건)

유형별 건수		용도별 신축		층수별 신축		용도별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신축	38	단독주택	1	1~2층	4	단독주택	1
증축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개축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25	3~5층	34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대수선	2					용유자시설	1
용도 변경	1	합계	38			합계	7
합계	45	합계	38	합계	38	합계	7

자료: 서울시건축과, 2015, 건축허가대장



[그림 4-15]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건축 동향

5)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운영 개요

○ 개요

- 위치 및 면적: 은평구 진관동 일원, 639,155㎡
- 시행기간: 2015년 ~ 2018년, 사업비: 280.4억 원
- 특화사업자: 은평구청장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북한산의 풍부한 산악관광자원과 이를 배경으로 다양한 전통문화 자원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韓브랜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 경제활성화 도모

○ 주요 특화 사업

- 전통문화특화사업: 한옥박물관 및 한옥마을, 홍보관 조성, 삼천사 韓 문화재 탐방 프로

그림 및 금성당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 북한산 관광특화사업: 페스티벌 개최, 체험관 및 너나들이센터 조성 운영
- 연계협력 및 홍보마케팅: 3355네트워크 구축, 특구운영 활성화, 홍보마케팅

○ 규제특례 적용 사항

- 축제 기간 중 행사장 인접도로 차량통행 금지 및 제한(특례법 제22조 제1항 「도로교통법」이 있다. 이 외 특례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3조 「도로법」, 제36조10 「건축법」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운영하고 있다.

[표 4-14]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특화사업 추진 현황

특화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전통문화특화사업		
	한옥마을 조감도	금성당 전통문화 프로그램
북한산 관광특화사업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최	진관사 韓문화 체험관 조성 운영
연계협력 및 홍보마케팅		
	3355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티투어버스 연계	협동조합을 통한 특구운영 활성화

자료: 은평구청(2015),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지정 신청서」

4_강서 미라클-메디특구

1) 용도지역 현황

주거지역이 56.6%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녹지지역은 27.5%, 공업지역은 9.9%, 상업지역은 6.0%로 용도지역 면적이 지정되어 있다. 주거지역 면적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주거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지역에서 25.5%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18.4%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8.9%는 준주거지역이며, 녹지지역의 대부분은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다. 모든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이며, 상업지역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4-15]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내 용도지역 면적

(단위: 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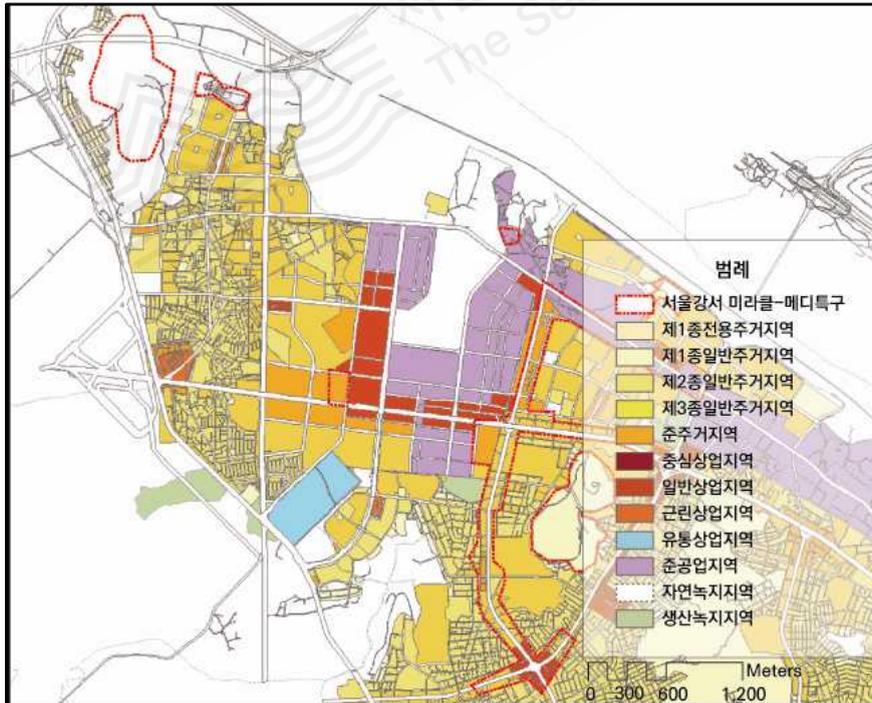
구분		면적	비율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80,849	18.4
	제2종일반주거지역	79,320	3.8
	제3종일반주거지역	528,842	25.5
	준주거지역	184,032	8.9
	소계	1,173,043	56.6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4,919	6.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06,235	9.9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2,251	0.1
	자연녹지지역	567,953	27.4
	소계	570,204	27.5
합계		2,074,401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5, 용도지역도



자료: 네이버지도

[그림 4-16]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위치도



[그림 4-17]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용도지역

2) 용도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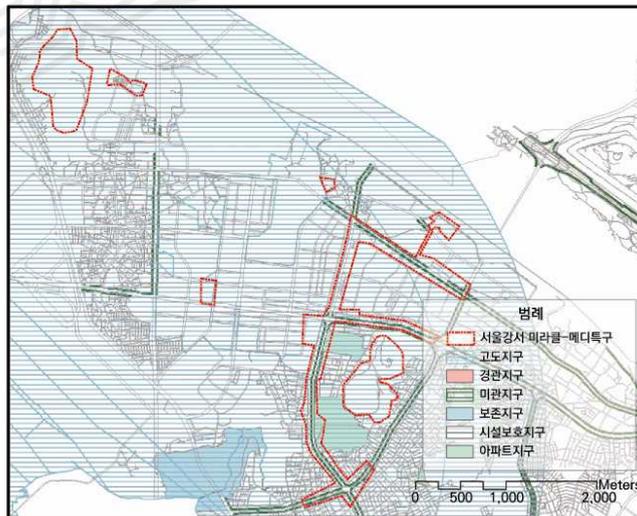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범위에는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아파트지구도 지정되어 있다. 김포국제공항이 특구의 인근에 위치하여 특구의 모든 범위에 최고고도지구와 공항시설보호지구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구 내 지정된 최고고도지구와 공항시설보호지구는 각 지구의 면적이 중복해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미관지구 및 기타지구의 모든 면적이 고도지구와 시설보호지구 범위 내에 중복해서 지정되어 있다.

[표 4-16]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내 용도지구 면적 및 대상지 면적에 대한 지정비율

(단위: m², %)

구분		면적	비율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16,928	0.8
	역사문화미관지구	640	0.0
	일반미관지구	99,314	4.9
	소계	116,881	5.7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2,036,725	100.0
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2,036,725	100.0
기타지구	아파트지구	56,354	2.8
합계		4,246,6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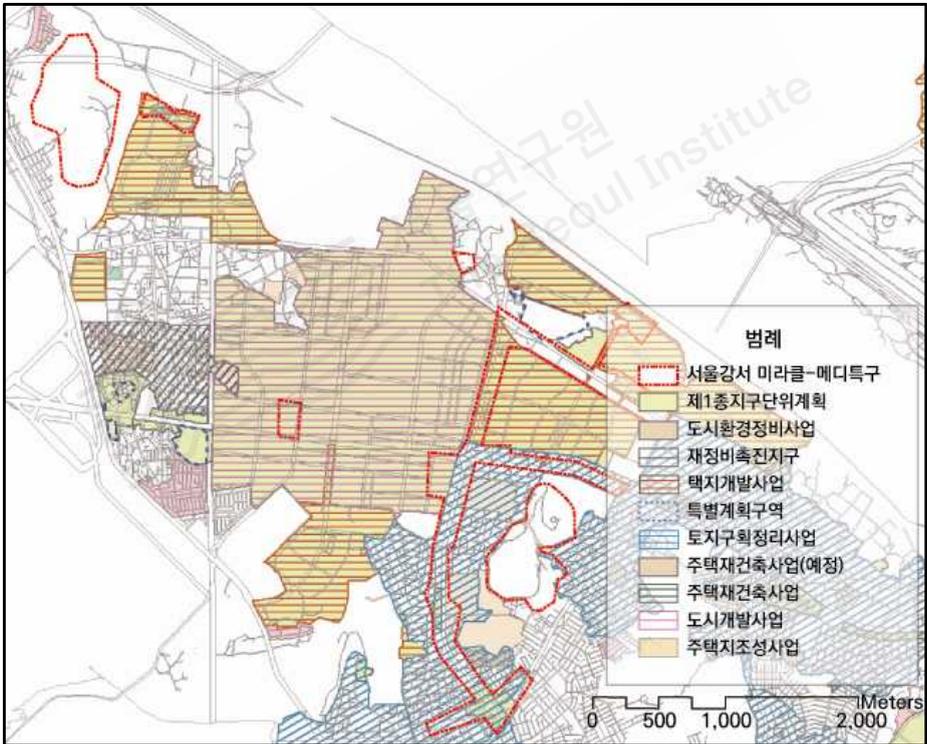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2015, 용도지구도



[그림 4-18]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용도지구

3) 도시계획사업 현황

강서 미래클-메디특구 내 지정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이 지정되어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자양동 CJ 공장용지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등촌지구, 화이트 코리아부지, 우장산역 지구, 마곡 도시개발사업, 화곡역 지구, 방화1택지개발지구, 가양택지개발지구의 6개 지구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있다. 정비사업은 화곡아파트 지구에 지정되어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예정)은 대상지에 일부 지정되어있다. 도시개발사업은 마곡도시개발구역(2지구)과 마곡도시개발구역(1지구)에 지정되어있고 택지개발사업은 방화, 가양, 등촌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예정되어있다.



[그림 4-19] 강서 미래클-메디특구 도시계획사업

[표 4-17] 강서 미래클-메디특구 내 도시계획사업 및 대상지 면적에 대한 지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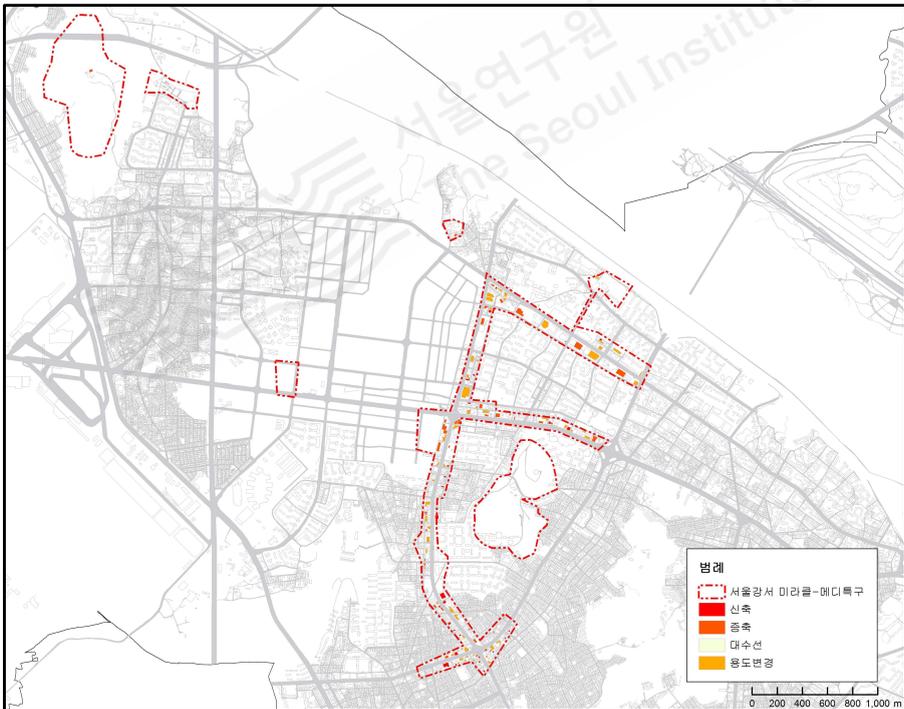
(단위: m², %)

구분			면적	비율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C 공장부지	1,306	0.1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촌지구	137,379	6.7
		화이트코리아부지	3,280	0.2
		우장산역지구	16,644	0.8
		마곡도시개발사업	109,684	5.4
		화곡역지구	82,361	4.0
		방화1택지개발지구	56,018	2.8
		가양택지개발지구	87,550	4.3
소계		494,223	24.3	
정비사업	정비사업	화곡아파트지구	56,353	2.8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마곡도시개발구역(2지구)	72,564	3.6
		마곡도시개발구역(1지구)	37,121	1.8
		소계	109,684	5.4
	택지개발	방화택지개발예정지구	56,040	2.8
		가양택지개발예정지구	93,740	4.6
		등촌택지개발예정지구	141,665	7.0
		소계	291,445	14.3
	소계		401,130	19.7
합계			952,160	100

자료: 서울시, 2015, 도시계획사업

4) 건축 동향

2010년~2015년 기간의 건축 동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신축 51건, 증축 54건, 대수선 6건, 용도변경 123건으로 총 234건이 있었다. 전체 234건 중 용도변경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특구 범위에서 용도변경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축 건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동주택이 12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8건으로 많았다. 신축 건물의 층수는 6~10층 건물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신축 51건 중 6층 이상이 53%로, 고층 건물의 신축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총 183건으로 신축보다는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이 많았다.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54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4건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많았고, 그 외의 시설로는 업무시설 37건, 교육연구시설 20건, 의료시설 12건 등이 있었다.



[그림 4-20]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건축 동향

[표 4-18]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건축동향

(단위: 건)

유형별 건수		용도별 신축		층수별 신축		용도별 증축/대수선/용도변경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신축	51	단독주택	3	1~2층	6	단독주택	5
		공동주택	12			공동주택	2
증축	54	제1종 근린생활시설	8	3~5층	18	제1종 근린생활시설	3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제2종 근린생활시설	54
		문화 및 집회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대수선	6	종교시설	2	6~10층	24	종교시설	1
		노유자시설	1			판매시설	5
용도 변경	123	업무시설	5	11층 이상	3	의료시설	12
		숙박시설	1			교육연구시설	20
		자동차 관련시설	2			노유자시설	1
						운동시설	1
합계	234	합계	51	합계	51	합계	183

자료: 서울시, 건축허가대장, 2015

5)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운영 개요

○ 개요

- 위치 및 면적: 강서로 공항대로 일원, 1,810,035m²
- 시행기간: 2015년 ~ 2018년, 사업비: 719억 원
- 특화사업자: 강서구청장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특화된 전문 의기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역 브랜드 개발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 특화사업

-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국제진료센터 건립, 미즈메디 및 웰튼병원 증개축사업
- 의료관광 기반마련 사업: 강서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국내외 홍보마케팅, 의료관광 연관산업 활성화 등
- 의료관광 도시구현 사업: 무장애거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 규제특례적용 사항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 통행금지 또는 제한(특례법 제22조 제1항「도로교통법」)이 있다. 이외에 특례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법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운영하고 있다.

[표 4-19]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특화사업 추진 현황

특화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국제진료센터 건립 - 이화의료원	증개축사업 대상 병원 - 웰튼병원
의료관광 기반마련 사업		
	강서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국내외 홍보마케팅의 일환 필리핀 의료진 인공관절 연수 수료식	의료관광 체험행사
의료관광 도시구현 사업		
	무장애거리 조성	안내시설 등 외국어 표기

자료: 강서구청(2015),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지정 신청서

5_그 외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1)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

○ 개요

- 위치 및 면적: 노원구 월계4동 320 외, 432,742m²
- 시행기간: 2007년 ~ 2016년, 사업비: 693억 원
- 특화사업자: 노원구청장, 관내 33개 초·중학교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교육 수혜 불균형 우려, 공교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계층 간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 사교육 경감을 통한 복지 실현 도모

○ 주요 특화사업

- 외국어 교육 심층 특화사업, 학교환경 개선사업
- 교양대학, 영어교실, 어린이 사이버교실 등 평생교육 및 교육강화 사업

○ 규제특례 적용사항

특구 내 초·중·고에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 허용(특례법 제19조「초·중등 교육법」), 특화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교원의 체류기간 상한 연장(2년→3년) (특례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이 있다.

[표 4-20]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의 규제특례 적용사항 및 특화사업

초·중등 교육법 적용사항	주요 특화사업
 <p data-bbox="370 1638 583 1665">원어민 영어교사 배치</p>	 <p data-bbox="809 1638 1077 1665">평생교육 및 교육강화 사업</p>

2) 중구 영어교육특구

○ 개요

- 위치 및 면적: 중구 신당동 254 외, 401,975m²
- 시행기간: 2007년 ~ 2016년, 사업비: 464억 원
- 특화사업자: 중구청장, 관내 33개 초·중학교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도심공동화 현상에 직면하여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영어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상주인구 회복 도모

○ 주요 특화사업

- 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 및 영어교육 통합 학습 시스템 구축
- 각급 학교에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 지원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 규제특례 적용 사항

특구 내 학교(초·중·고)의 영어 교육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을 허용(특례법 제19조 「초·중등 교육법」), 특화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교원의 체류기간 상한 연장(특례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이 있다.

[표 4-21] 중구 영어교육특구의 규제특례 적용사항 및 주요 특화사업

초·중등 교육법 및 출입국관리법 적용사항	주요 특화사업
 <p data-bbox="367 1561 591 1591">방과 후 영어교실 운영</p>	 <p data-bbox="854 1561 1033 1591">교육환경 개선사업</p>

3)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 개요

- 위치 및 면적: 관악구 신원동 등 4개 지역, 36,008.3m²
- 시행기간: 2010년 ~ 2014년, 사업비: 234억 원
- 특화사업자: 관악구청장, 서울원당초등학교장, 한국철도문화협력회장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교육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제화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 특화사업

- 저소득층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등 교육격차 해소지원을 위한 교육문화센터 운영
- 국제화 교육강화 사업 및 서울대 학·관 협력 교육사업 등

○ 규제특례 적용사항

원어민 교사의 채용 및 보수 지원(특례법 제19조 「초·중등 교육법」에 관한 특례), 관악 English Festival 행사 개최 시 차량통제(특례법 제22조 「도로교통법」),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관련 규제 완화(특례법 제23조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운영하고 있다.

[표 4-22]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의 주요 특화사업

주요 특화사업 1	주요 특화사업 2
 <p>교육문화센터 조성</p>	 <p>English Festival 개최</p>

4) 중구 해피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 개요

- 위치 및 면적: 중구 충무로1가 25-5번지 등, 563,867㎡
- 시행기간: 2014년 ~ 2017년, 사업비: 314.2억 원
- 특화사업자: 중구청장(총괄), 강북삼성병원장(단위)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집적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강화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 명동 일대 상권과 관광 명소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 특화 사업

- 의료관광 기반 조성 및 컨벤션 개최 등의 의료관광 마케팅 사업
- 의료관광 식품개발·보급사업 및 의료관광 네트워크사업

○ 규제특례 적용 사항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제3자 건강 기능식품 위탁판매 허용(특례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외에도 특례법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법 제36조 10 「건축법」, 특례법 제44조 「자동차관리법」이 있다.

[표 4-23]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의 주요 특화사업

주요 특화사업 1	주요 특화사업 2
 <p>의료관광 고객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조성</p>	 <p>의료관광 공연 활성화</p>

5) 성동구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 개요

- 위치 및 면적: 성동구 행당동 7 외, 126,438m²
- 시행기간: 2015년 ~ 2019년, 사업비: 1,849억 원
- 특화사업자: 성동구청장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대규모 도시재개발로 아파트 입주민과 기존 주민 간의 소득 격차와 교육의 양극화 심화, 교육 특화산업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 주요 특화사업

- 전통역사 및 서울숲~남산 둘레길 운영, 서울숲캠핑장 등의 생태문화 체험교육
- 미래인재 육성교육 및 평생학습관 조성 등을 통한 글로벌시민 역량강화교육

○ 규제특례 적용사항

원어민 강사의 체류기간 상한 연장, 고용추천서 발급절차 완화(특례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 왕십리광장에서 문화행사 시 원활한 진행과 관광객 안전확보를 위한 차량통제 제한(특례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이외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도로법」의 규제완화내용을 적용받아 운영하고 있다.

[표 4-24] 성동구 융복합혁신 교육특구의 주요 특화사업

주요 특화사업 1	주요 특화사업 2
 <p style="text-align: center;">전통역사 체험교육</p>	 <p style="text-align: center;">글로벌 영어하우스 확대 운영</p>

6)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 개요

- 위치 및 면적: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산 57-1 외, 51,108.6m²
- 시행기간: 2016년 ~ 2019년, 사업비: 578억 원
- 특화사업자: 중랑구청장
- 특구 지정 필요성 및 목적
 -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망우묘지공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부정적 이미지 쇄신 및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교육프로젝트를 통해 명문교육 도시 조성

○ 주요 특화사업

- 역사교육 테마파크, 문화 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 교육인프라 확충 및 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

○ 규제특례 적용사항

행사 및 축제 등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해 도로의 차량통행 금지 및 제한(특례법 제22조 「도로교통법」),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표시지역, 장소, 표시방법 등 설치기준 제시(특례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망우산에 안장된 묘지 이전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묘지 개장 통보기간 단축(특례법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행사 및 축제 개최 시 안내시설 및 홍보물 설치 등 도로 점용(특례법 제33조 「도로법」)이 있다.

[표 4-25]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의 주요 특화사업

주요 특화사업 1	주요 특화사업 2
 <p data-bbox="401 1667 550 1694">역사 교육 운영</p>	 <p data-bbox="731 1667 1156 1694">교육인프라 확충 및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p>

05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 1_조사 개요
- 2_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 3_특구 담당자 인터뷰 결과

05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1_조사 개요

1) 조사목적

서울시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인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전후의 변화, 지원 및 운영 개선방향 등을 조사하여 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

(1) 조사 기간 및 방법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특구별 해당 자치구 및 서울시를 방문하여 특구추진 현황,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조사 범위 및 규모

설문조사로는 지역별로 각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사업체 중 대표자 및 부장급 이상 실무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는 자치구 내 특구담당 공무원과 서울시 도시계획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표 5-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4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사업체	
조사지역 및 조사규모	1)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동대문구 제기동, 용두동 일원	156부
	2)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강남구 청담동, 압구정동 일원	103부
	3)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일원	50부
	4) 강서 미래클-메디특구: 강서구 강서로 공향대로 일원	50부
	총 조사규모	359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조사	
조사기간	2016.10.01. ~ 2016.10.16.	
조사기관	(주)코라이데이터네트워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기초현황 및 입지 장단점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인지도와 전후 변화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의견 	

[표 5-2] 인터뷰 개요

구분	담당부서	실시날짜
강서 미래클-메디특구	강서보건소 의약과 의료관광특구지원팀	2016.10.10.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동대문구청 경제활성화과 시장활성화팀	2016.10.31.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신성장동력팀	2016.11.08.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담당자	은평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융성팀	2016.11.16.
서울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 특구	중구 보건소 건강도시과 건강도시팀	2016.12.01.
양재·우면 R&D산업특구(예정)	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경제정책과	2017.01.24. ~ 26.

3) 설문조사 및 인터뷰 내용

특구 내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지와 특구 담당 공무원 인터뷰 질문지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 [표 5-3]과 같으며, 자세한 질문지는 부록을 참조하면 된다.

[표 5-3] 설문조사 및 인터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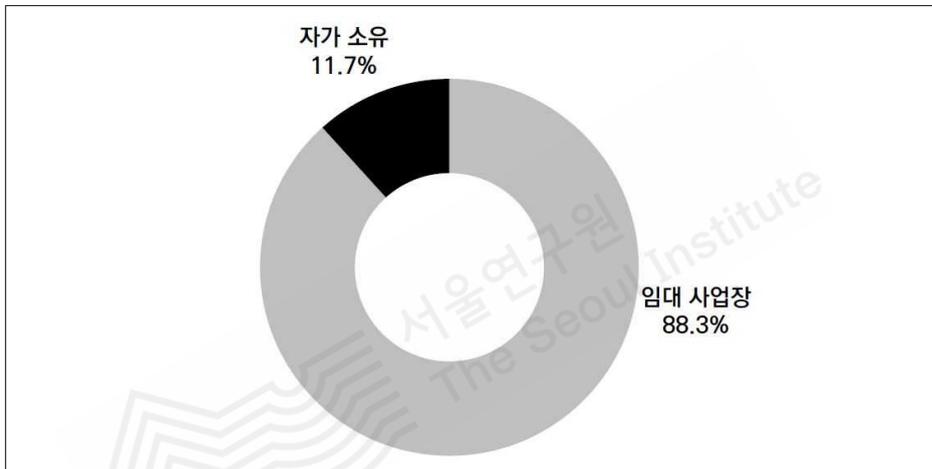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방법	
사업체 기초현황 및 입지 장단점	종사자 수, 사업자 소유형태, 규모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사업 시작시기, 매출, 주 업종		
	업종 관련 단체/협회 가입 여부		
	사업체 입지적 장점 및 사업체 운영 시 불편한 점		
	사업체 이전 고려 여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인지도와 전후 변화	지역특화발전특구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이후 산업환경 변화 여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이후 임대료 변화 여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의견	특화사업 중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하는 것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수립 과정 중 관련업종 및 사업체 의견 수렴 정도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제도)에 대한 의견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에 우선 지원해야 할 사항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에 개선울 건의할 사항		
기초사항	성별, 연령대, 지역특화사업 담당 근속연수		특구 담당 공무원 대상 인터뷰
특구운영에 대한 의견	특구계획 및 사업, 협력네트워크, 특구 운영 및 관리		
특구제도에 대한 의견	규제특례, 특구지정 및 평가, 개선사항		

2_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1) 사업체 기초현황

(1) 소유현황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가 소유가 11.7%, 임대사업장이 88.3%로 대부분의 사업장운용을 임대사업자가 하고 있어 건물주를 제외하고 견폐율·용적률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소유형태

(2) 창업연도

전체적으로 보면, 창업연도 ‘2000년 이전’이 18.9%, ‘2000년~2004년도’ 14.2%, ‘2005년~2009년도’ 21.2%, ‘2010년~2014년도’ 33.4%, ‘2015년 이후’ 12.3%로 분포되어 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의 경우 2000년 이전 창업한 사업장 비율이 35.3%로 다른 특구보다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와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의 경우 2010년 이후 창업한 사업장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4] 창업연도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2000년 이전	2000년~ 2004년도	2005년~ 2009년도	2010년~ 2014년도	2015년 이후
전체		359	18.9	14.2	21.2	33.4	12.3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156	35.3	18.6	17.3	23.1	5.8
	청담·압구정 패션	103	3.9	10.7	21.4	35.9	28.2
	은평 북한산	50	4.0	8.0	10.0	74.0	4.0
	강서 미라클-메디	50	14.0	14.0	44.0	20.0	8.0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33.3	14.3	7.1	40.5	4.8
	임대 사업장	317	17.0	14.2	23.0	32.5	13.2

(3) 매출규모

평균 매출은 2,3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00~2,000만 원 미만'이 27.9%, '1,000만 원 미만' 22.3%, '2,000~3,000만 원 미만' 17.3% 등의 분포로 나타났다. 특구 지역별 평균 매출을 살펴보면 강서 미라클-메디특구가 3,6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는 2,900만 원, 청담·압구정 패션 특구는 2,700만 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는 약 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5-5] 매출규모

(단위: 개, %, 백만 원)

구분		사례수	1,000 만 원 미만	1,000~ 2,000 만 원 미만	2,000~ 3,000 만 원 미만	3,000~ 4,000 만 원 미만	4,000~ 5,000 만 원 미만	5,000 만 원 이상	평균
전체		359	22.3	27.9	17.3	15.0	5.8	11.7	23.12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156	41.0	35.9	12.8	4.5	1.3	4.5	14.45
	청담·압구정 패션	103	3.9	32.0	23.3	20.4	8.7	11.7	26.79
	은평 북한산	50	14.0	18.0	16.0	24.0	10.0	18.0	29.54
	강서 미라클-메디	50	10.0	4.0	20.0	28.0	10.0	28.0	36.22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16.7	21.4	21.4	19.0	7.1	14.3	27.62
	임대 사업장	317	23.0	28.7	16.7	14.5	5.7	11.4	22.53

(4) 업종

조사 응답 사업체의 업종은 ‘소매업’이 42.6%로 가장 높으며, ‘병원/한의원’ 15.6%, ‘음식점업’ 14.5%, ‘약국/한약국’ 8.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단위: %)



[그림 5-2] 주 업종

(5) 업종 관련 단체(협회 또는 기관) 가입 여부

조사 응답업체의 절반가량(49.3%)이 업종 관련 단체(협회 또는 기관)에 가입되어 있었다. 특구 지역별 업종 관련 단체 혹은 협회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의 단체 가입률이 각각 66.7%, 8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청담-압구정 패션 특구와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에서는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 비율이 각각 85.4%, 70%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 업종 관련 단체/협회 가입 여부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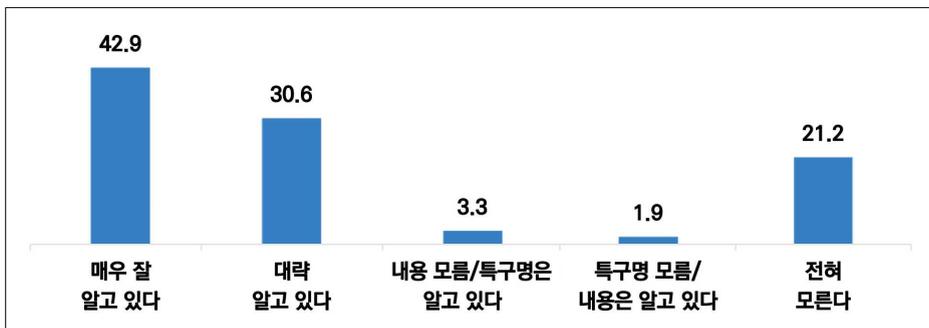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9	49.3	50.7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156	66.7	33.3
	청담·압구정 패션	103	14.6	85.4
	은평 북한산	50	30.0	70.0
	강서 미래클-메디	50	86.0	14.0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47.6	52.4
	임대 사업장	317	49.5	50.5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인지도와 전후 변화

(1)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인지도 여부

사업장이 위치한 이 일대가 특구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략 알고 있다’가 30.6%, ‘내용은 모르나 특구명은 알고 있다’ 3.3%, ‘특구명은 모르나 내용은 알고 있다’는 1.9%로 인지비율이 80%가량 나타났지만,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21.2%였다.

(단위: %)



[그림 5-3] 특구지정 인지 여부

(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인지 경로

특구로 지정을 알게 된 경로는 ‘지역 단체, 협회 등의 활동을 통해’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25.1%,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해서’ 13.3%, ‘기사,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12.2% 순으로 나타났다.

특구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지역 단체, 협회 등의 활동을 통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서 미리클-메디특구는 ‘기사,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지한 비율이 51.6%로 가장 높았다. ‘계획수립과정에 참여’로 인한 응답은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가 20.4%로 다른 특구보다 특히 높게 나타났다.

[표 5-7] 특구지정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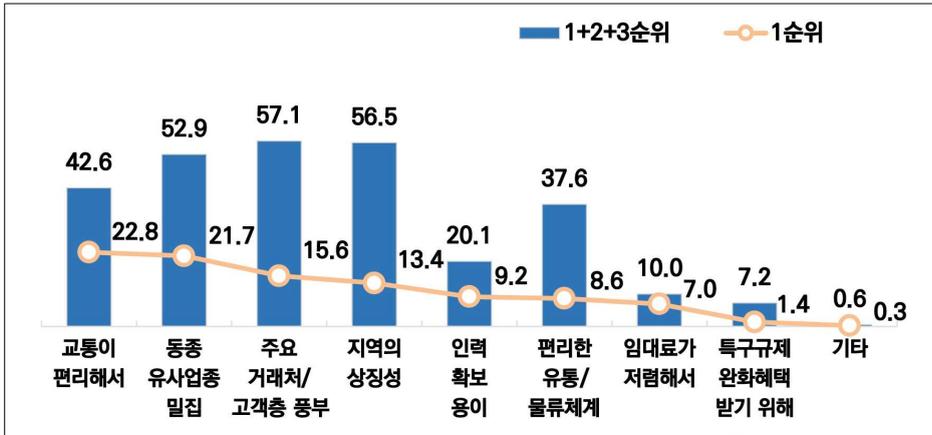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지역 단체, 협회 등의 활동을 통해	계획수립과정 에 참여해서	기사,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체		271	25.1	49.4	13.3	12.2
특구 지역별	서울특별시	147	17.7	56.5	20.4	5.4
	청담·압구정 패션	65	38.5	44.6	6.2	10.8
	은평 북한산	28	35.7	50.0	7.1	7.1
	강서 미리클-메디	31	22.6	25.8	0.0	51.6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31	29.0	45.2	22.6	3.2
	임대 사업장	240	24.6	50.0	12.1	13.3

(3) 사업체 입지적 장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사업체 입지적 장점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 ‘교통이 편리해서’ 응답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는 ‘동종 유사업종 밀집’이 21.7%, ‘주요 거래처/고객층 풍부’가 15.6%로 입지 장점을 꼽았다. 3순위까지 중복응답 기준으로 살펴 볼 경우, 입지 장점으로 ‘주요 거래처/고객층 풍부’가 57.1%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의 상징성’ 56.5%, ‘동종 유사업종 밀집’ 5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5-4] 사업체 입지적 장점

(4)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이후 환경 변화

특구의 지정 이후 환경변화와 관련해서는 ‘대외적 상징성(이미지)의 긍정적 변화’, ‘전반적인 사업환경 개선’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 5점 만점 기준으로 ‘대외적 상징성의 긍정 변화’는 평균 3.19점, ‘전반적인 사업환경 개선’은 평균 3.06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사업체 수 증가’가 2.53점, ‘관련 사업체 단체/협회 활동 증가’가 2.82점, ‘임대료 상승’은 2.61점으로 세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대외적 상징성(이미지)의 긍정적 변화’는 청담·압구정 패션 특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관련 사업체 단체/협회 활동 증가’는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에서 긍정 변화 응답이 다른 특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8]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이후 환경 변화

(단위: 개, 5점 만점 기준)

구분	사례수	대외적 상징성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였다	사업체수가 증가하였다	관련 사업체 단체/협회 활동이 증가하였다	임대료가 특구지정으로 더 많이 상승하였다	전반적인 사업 환경이 특구지정으로 더 많이 개선되었다	
전체	359	3.19	2.53	2.82	2.61	3.06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156	3.19	2.46	3.12	2.87	3.17
	청담-압구정 패션	103	3.21	2.42	2.71	2.80	3.00
	은평 북한산	50	3.14	2.34	2.62	2.18	2.80
	강서 미라클-메디	50	3.16	3.18	2.30	1.82	3.12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3.24	2.52	2.95	2.29	3.14
	임대 사업장	317	3.18	2.53	2.80	2.65	3.05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의견

(1)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특구지정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아니오'가 55.2%로, '예' 44.8%보다 부정 평가 의견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특구 지역별로는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의 경우 '도움된다'는 긍정 평가 응답이 74.0%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와 청담-압구정 패션 특구의 경우 부정 평가 응답이 긍정 평가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9] 특구지정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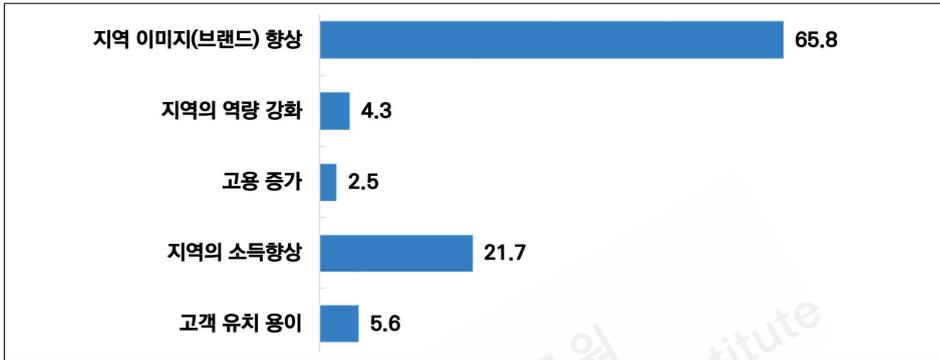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9	44.8	55.2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156	41.7	58.3
	청담-압구정 패션	103	33.0	67.0
	은평 북한산	50	50.0	50.0
	강서 미라클-메디	50	74.0	26.0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45.2	54.8
	임대 사업장	317	44.8	55.2

(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도움된다는 이유

특구 지정이 도움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 이미지(브랜드) 향상’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지역의 소득향상’이 21.7%, ‘고객 유치 용이’가 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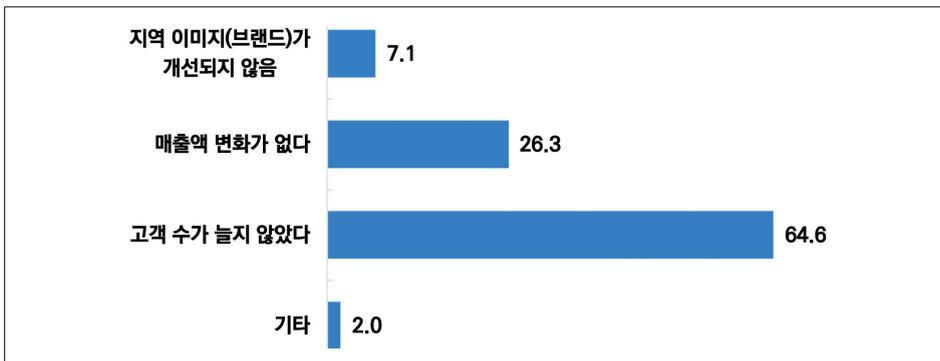


[그림 5-5] 특구 지정이 도움된다는 이유

(3)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

특구 지정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는 ‘고객 수가 늘지 않았다’는 응답이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 변화가 없다’가 26.3%, ‘지역 이미지(브랜드)가 개선되지 않음’이 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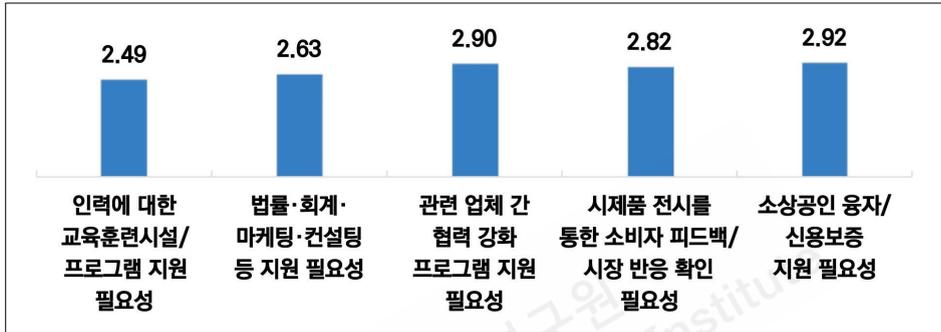


[그림 5-6] 특구 지정이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

(4)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특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별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3점 이하로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5점 만점 기준으로 살펴볼 때, ‘소상공인 융자/신용보증 지원 필요성’이 2.92점, ‘관련 업체 간 협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이 2.90점, ‘시제품 전시를 통한 소비자 피드백/시장 반응 확인 필요성’이 2.82점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 5점 만점)



[그림 5-7] 특구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례지원제도 만족도

현재 특구에 대한 특례지원제도 만족도는 평균 3.23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34.5%,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5%로 전체 응답자의 37.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특구 지역별로는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에서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이 각각 78.0%, 10.0%로 만족한다(88.0%)는 의견이 타 특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표 5-10] 현재 특구에 대한 특례지원제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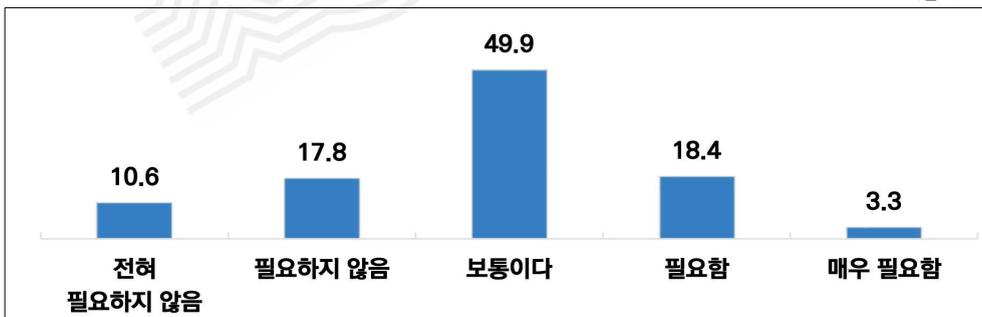
(단위: 개, %, 5점 만점 기준)

구분	사례수	매우 만족하지 못하다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 만점]	
전체	359	2.5	11.1	49.3	34.5	2.5	3.23	
특구 지역별	서울역령시	156	1.9	16.7	53.8	25.0	2.6	3.10
	청담·압구정 패션	103	4.9	10.7	66.0	18.4	0.0	2.98
	은평 북한산	50	0.0	4.0	8.0	78.0	10.0	3.94
	강서 미라클-메디	50	2.0	2.0	42.0	54.0	0.0	3.48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0.0	14.3	19.0	59.5	7.1	3.60
	임대 사업장	317	2.8	10.7	53.3	31.2	1.9	3.19

(6) 특구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의 필요성

특구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소통이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이 21.7%(매우: 3.3% + 필요: 18.4%), 필요 없다는 부정 응답이 28.4%(전혀: 10.6% + 필요 안함: 17.8%), ‘보통이다’가 49.9%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5-8] 특구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의 필요성

(7) 특구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 및 의견반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

특구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 및 의견반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9.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점 만점 중 평균 2.72점으로 나타났다. 특구

지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는 2.89점, 청담·압구정 패션 특구는 2.51점,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는 2.60점,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2.74점으로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 및 의견반영에 대해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특구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 및 의견반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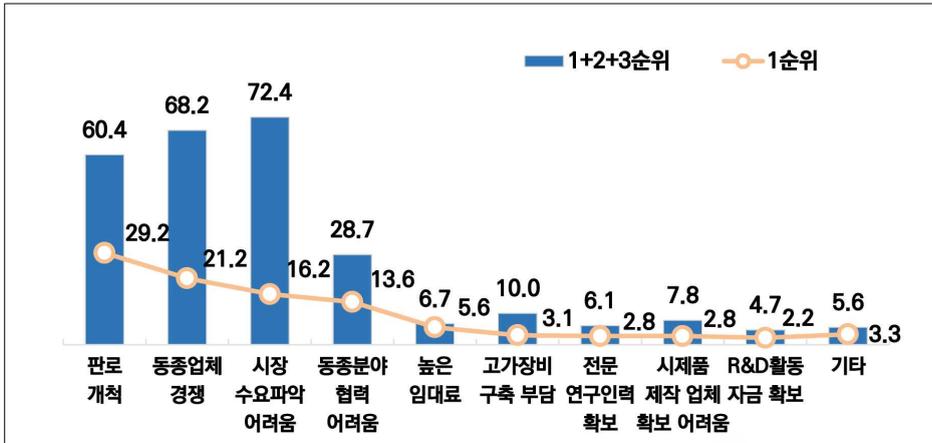
(단위: 개,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통이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평균 5점	
전체	359	6.4	19.8	69.4	4.2	0.3	2.72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156	1.3	16.0	75.6	6.4	0.6	2.89
	청담·압구정 패션	103	17.5	15.5	65.0	1.9	0.0	2.51
	은평 북한산	50	6.0	30.0	62.0	2.0	0.0	2.60
	강서 미라클-메디	50	0.0	30.0	66.0	4.0	0.0	2.74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7.1	19.0	66.7	7.1	0.0	2.74
	임대 사업장	317	6.3	19.9	69.7	3.8	0.3	2.72

(8) 사업체 운영 시 불편한 사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사업체 운영 시 불편한 점으로는 1순위 응답 기준 ‘판로 개척’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종업체 경쟁’은 21.2%, ‘시장 수요파악 어려움’이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까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시장 수요파악 어려움’이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종업체 경쟁’ 68.2%, ‘판로 개척’ 6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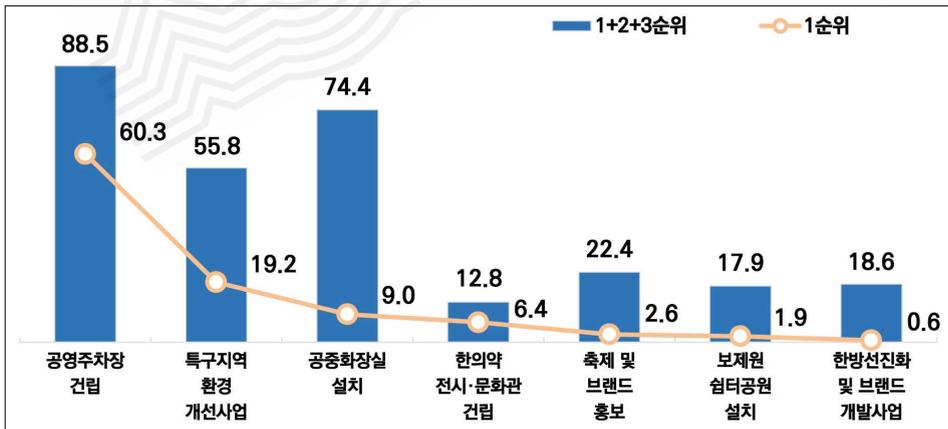


[그림 5-9] 사업체 운영 시 불편한 사항

3) 특구 내 도움이 되는 사업에 관한 의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내 도움이 되는 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건립’(60.3%), ‘환경개선 사업’(19.2%)과 같은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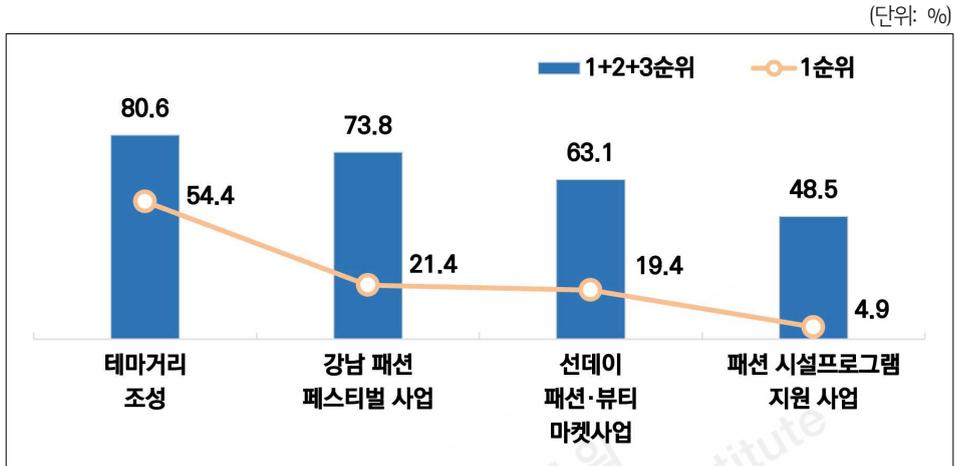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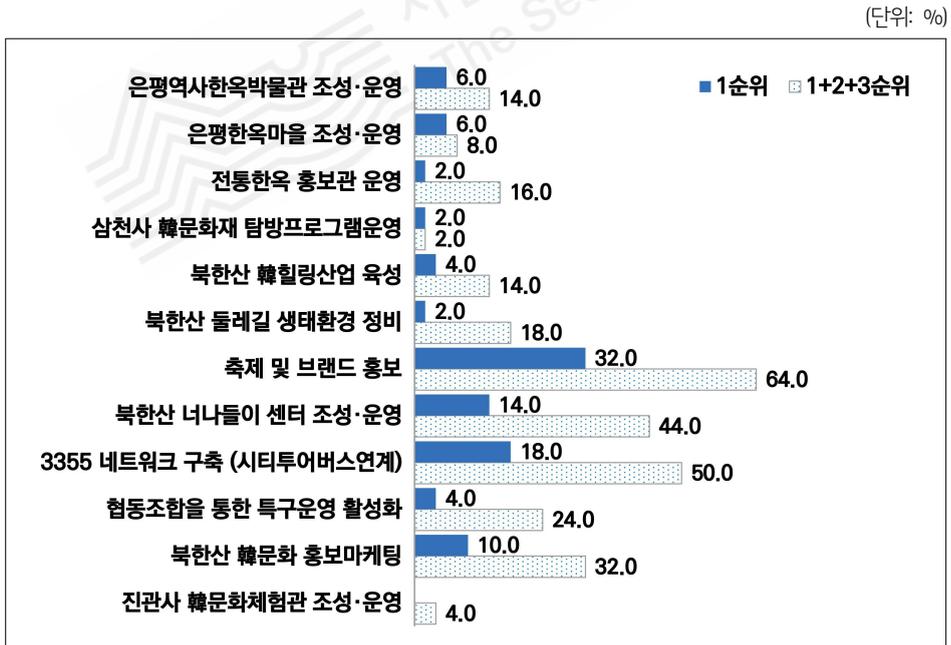
[그림 5-10]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에서도 ‘테마거리 조성’이 54.5%로 높지만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와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에서는 ‘축제 및 홍보’ 관련 사업이 도움이 되는 사업의

1순위라고 응답하였다. 4개 특구 모두가 환경개선 사업, 축제 및 홍보 마케팅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연속되는 사업이 아닌 단기적으로 완료되는 사업이 대부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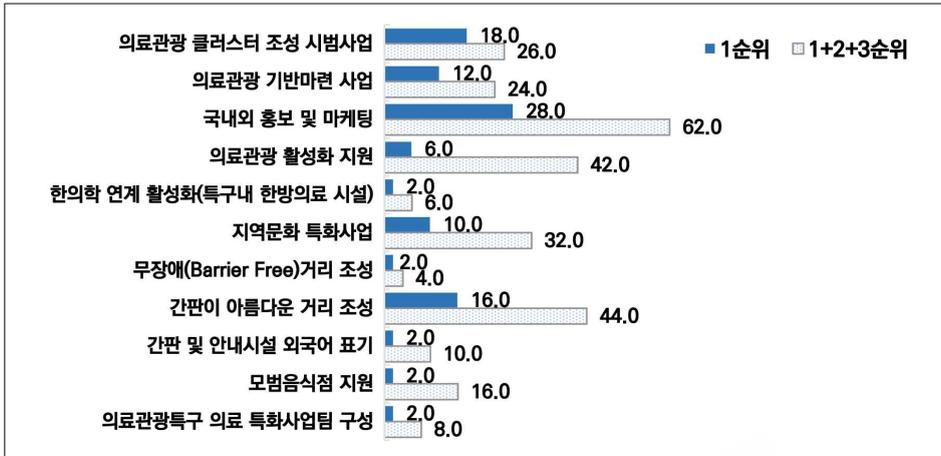


[그림 5-11]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



[그림 5-12]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

(단위: %)



[그림 5-13] 강서 미래클-메디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

4)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필요성에 관한 의견

(1)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가 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원/한의원에서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가 4.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국/한약국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는 3.78점, ‘약사법에 관한 특례’가 3.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12]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단위: 개, 5점 만점 기준)

구분	사례수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전체	156	3.90	3.47	2.60	
업종	제조	20	3.95	3.60	2.75
	도매업	26	3.92	3.19	2.54
	소매업	49	3.82	3.49	2.51
	음식점업	17	3.94	3.41	2.53
	병원/한의원	21	4.05	3.33	2.33
	약국/한약국	23	3.87	3.78	3.04

(2)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가 3.2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약국/한약국에서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가 5점, 제조, 약국/한약국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가 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조, 음식점업에서 ‘도로법에 관한 특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제조업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법률에 관한 특례’가 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3]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단위: 개, 5점 만점 기준)

구분		사례수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 법률에 관한 특례
전체		103	3.27	3.12	2.74	2.76
업종	제조	1	4.00	4.00	3.00	4.00
	소매업	81	3.25	3.15	2.80	2.83
	음식점업	10	3.80	3.50	3.00	2.70
	약국/한약국	1	5.00	4.00	2.00	2.00
	부동산중개/기타 서비스	10	2.70	2.30	2.00	2.20

(3)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은 ‘건축법에 관한 특례’가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건축법에 관한 특례’ 부분에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식점업은 ‘도로법에 관한 특례’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4]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단위: 개, 5점 만점 기준)

구분	사례수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전체	50	3.30	3.68	3.64	3.70	
업종	소매업	22	3.91	3.82	3.68	3.82
	음식점업	23	2.96	3.74	3.78	3.78
	오락 등	2	2.00	3.50	3.50	3.50
	부동산중개/기타 서비스	3	2.33	2.33	2.33	2.33

(4)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가 3.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약국/한약국에서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음식점업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 법률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15]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단위: 개, 5점 만점 기준)

구분	사례수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 법률에 관한 특례	
전체	50	2.32	3.24	3.46	
업종	소매업	1	2.00	2.00	4.00
	음식점업	2	1.00	4.00	4.50
	병원/한의원	35	2.43	3.14	3.17
	약국/한약국	7	2.57	3.57	3.71
	오락 등	1	1.00	2.00	4.00
	부동산 중개/기타 서비스	4	2.00	3.75	4.75

(5) 특구별 관련 사업 육성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의 종합결과

특구별로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는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에서 약국/한약국이 높게 나왔으며,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에서는 병원/한의원이,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에서는 소매업이 필요성이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는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에서 약국/한약국이 필요성이 높게 나왔으며,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에서 소매업이 높게 나타났다. 도로법에 관한 특례는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와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에서 음식점업이 필요성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4개 특구에서 가장 많은 규제특례 적용을 받은 사항은 [표 5-16]과 같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도로법에 관한 특례이며, 그 외에 특구별로 적용받은 사항은 [표 5-17]과 같다.

[표 5-16] 특구별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단위: 개, 5점 만점 기준)

구분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약령	강남	은평	강서	약령	강남	은평	강서	약령	강남	은평	강서	
업종	제조	3.95	4.00	-	-	3.60	4.00	-	-	-	3.00	-	-
	도매업	3.92	-	-	-	3.19	-	-	-	-	-	-	-
	소매업	3.82	3.25	3.91	2.00	3.49	3.15	3.82	-	-	2.80	3.68	-
	음식점업	3.94	3.8	2.96	1.00	3.41	3.50	3.74	-	-	3.00	3.78	-
	병원/한의원	4.05	-	-	2.43	3.33	-	-	-	-	-	-	-
	약국/한약국	3.87	5.00	-	2.57	3.78	4.00	-	-	-	2.00	-	-
	오락 등	-	-	2.00	1.00	-	-	3.50	-	-	-	3.50	-
	부동산 중개/기타 서비스	-	2.7	2.33	2.00	-	2.3	2.33	-	-	2.00	2.33	-

[표 5-17] 특구별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단위: 개, 5점 만점 기준)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 법률에 관한 특례				건축법에 관한 특례				약사법에 관한 특례				
	익령	강남	은평	강서	익령	강남	은평	강서	익령	강남	은평	강서	익령	강남	은평	강서	
특구명칭																	
업종	제조업	-	-	-	-	-	4.00	-	-	-	-	-	-	2.75	-	-	-
	도매업	-	-	-	-	-	-	-	-	-	-	-	-	2.54	-	-	-
	소매업	-	-	-	2.00	-	2.83	-	4.00	-	-	3.82	-	2.51	-	-	-
	음식점업	-	-	-	4.00	-	2.70	-	4.50	-	-	3.78	-	2.53	-	-	-
	병원/한의원	-	-	-	3.14	-	-	-	3.17	-	-	-	-	2.33	-	-	-
	약국/한약국	-	-	-	3.57	-	2.00	-	3.71	-	-	-	-	3.04	-	-	-
	오락 등	-	-	-	2.00	-	-	-	4.00	-	-	3.50	-	-	-	-	-
	부동산 중개/기타 서비스	-	-	-	3.75	-	2.20	-	4.75	-	-	2.33	-	-	-	-	-

3_특구 담당자 인터뷰 결과

1)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인터뷰 결과

(1) 특구 추진상황 및 계획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는 2005년에 특구로 지정되어 운영해온 한방산업특구로 간판 교체, 벤치 조성, 도로포장 등과 같은 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현재 완료 단계이다. 현재 국내 최대 한방산업 집적지인 서울약령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뿐만 아니라,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앵커시설 조성으로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한방진흥센터 조성을 통해 약령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한의약박물관, 한방의료체험, 한방 관련 세미나 등 한방의료·문화 관광지로 명소화하여, 다양한 한방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에 있다고 답하였다.

(2) 특구지정 후, 지역 여건변화

특구지정으로 인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구지정 직후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진행하면서 주변 상인·주민의 관심도가 높았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대부분 중

상공인이 많은 지역으로 약령시의 정확한 매출 증감률 파악은 어렵지만, 국내 한약시장 자체의 부진으로 매출이 좋지 않다고 답하였다.

(3) 규제특례적용 및 도시계획분야

‘도로교통법’ 외 2개 항목의 규제특례사항 중 ‘약사법’의 공동관리 약사제가 각 사업체의 부담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향후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는 그 역할과 내용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2017년도 이후부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추진하여 한방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서울약령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업체 간 협력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특구 지역에서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신청할 때 우선 지원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특화사업이 완료되어가는 특구에는 평가 및 성과보수 지급 등의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계획과 실현 가능성, 재원조달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화사업 진행 시 사업비 지원, 재정 또는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2)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인터뷰 결과

(1) 특구 추진상황 및 계획

2008년에 패션특구로 지정되어 청담 명품거리에 ‘빛의 거리’ 조성 등의 물리적인 계획이 완료되었다. ‘빛의 거리’는 예술의 거리, 연예인의 거리, 젊음의 거리, 뉴패션의 거리 4가지 테마로 간판개선 사업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물리적인 계획과 사업 위주로 진행하면서, 부족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의 보완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2015년 12월에 특구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이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고 패션특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화사업비는 대부분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지 않고, 구비 예산을 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화사업 중 빛의 거리 조성사업만 청담 활성화추진단이 50%, 구비가 50% 집행하여 진행이 완료되었다고 답하였다.

(2) 특구지정 후, 지역 여건변화

패션특구 지정 직후 초반 ‘빛의 거리’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역 브랜드와 이미지 가치 상승효과가 있었지만 물리적인 계획 및 사업이 완료되면서 현재에는 지역의 활성화 및 변화는 답보 상태라고 답하였다.

(3) 규제특례적용 및 도시계획분야

패션특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외 2개 규제특례사항을 완화받아 특화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는 해당하는 각 규격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도시계획분야에 해당하는 규제특례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최근에는 특구 내 또는 주변 주민·상인들이 용적률 등과 같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기존 특화사업 중 카페거리 조성사업이 민간특화사업자의 사업 포기와 서울시 위원회의 승인 보류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의 추진이 어려워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구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도 특구명이 유지되면서 지속적인 계획 및 사업 추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인터뷰 결과

(1) 특구 추진상황 및 계획

2015년 4월 특구지정 이후, 전통한옥마을 조성과 같은 물리적인 시설 및 환경개선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 韓문화페스티벌, 다양한 기획전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韓문화너나들이 센터 건립, 한옥 전망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특구 내에는 음식점, 아오도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마을협동조합과 한옥마을 거주민들 중심으로 구성된 한옥마을협동조합이 있다. 축제 진행 시, 은평구청과 협동조합이 협업하여 축제 프로그램 구성 등의 준비와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2) 특구지정 후, 지역 여건변화

특구로 지정되면서, 기존보다는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는 특구지정이 약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지역 여건변화는 미비한 상태이지만, 축제 기간에는 5,000여 명의 방문객이 지역에 방문하여 아웃도어 매장과 음식점들의 매출에 영향이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3) 규제특례적용 및 도시계획분야

자연녹지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적용이 어려웠으나,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규제특례를 운영 및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대부분의 자치구는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특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답하였다. 또한, 부진한 특구에 대한 페널티를 두는 등 특구 내 차등을 두어 평가를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4)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인터뷰 결과

(1) 특구 추진상황 및 계획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특구는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와 강서 미라클 메디특구 2개소이다. 중구 명동에는 피부미용 관련 한의원과 병원들이 밀집되어 있으나, 강서구에는 척추·관절, 불임 분야와 같이 전문치료에 특화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이 다수 밀집되어 있다. 지역 특구로 지정된 이후, 공모사업을 준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국비, 시비, 구비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조성, 허준박물관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병원마다 현지코디네이터들이 직접 외국인 환자, 동반자들을 데리고 쇼핑, 역사문화관광 등의 안내코스도 함께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2) 특구지정 후, 지역 여건변화

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 브랜드 및 이미지 가치 상승효과가 있고, 특히 이 지역에는 척추,

불임 분야에 특화된 병원이 밀집되어 있어 특구 지정홍보를 통해 외국인 환자유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답하였다.

(3) 규제특례적용 및 도시계획분야

미즈메디병원 증축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에서 정한 건폐율·용적률 150% 이내 범위에서 완화하는 사항이 있다.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완화조건 및 기준, 완화 건축물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서울시 측에서는 특구 지정의 취지보다 단순 밀도 상향을 위한 것이며, 주변 도시관리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특례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특구별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구 지정의 심의 절차에서 서울시 의견 청취 단계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화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세, 법인세 등의 세제 감면 및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5) 서울중구 해피메디컬 투어리즘특구 인터뷰 결과

(1) 특구 추진계획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진료(스킨케어, 건강검진, 한방, 안과, 치과)를 기존 중구(명동, 동대문)가 가지고 있는 관광 및 쇼핑자원을 활용·연계하여 의료관광을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다.

(2) 특구 지정 후, 지역 여건변화

기존 중구의 관광·쇼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킨 지역으로서, 특구지정으로 인한 지역의 여건변화는 미미한 상태라고 답하였다.

(3) 규제특례적용 및 도시계획분야

신청한 규제특례보다 적은 수의 특례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규제특례법

에 명시된 규제특례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실제로 많지 않고, 규제특례는 일시적 사항에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행사 시 차량통행금지, 외국인 교원 임용기준 완화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계획 분야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특구가 지정되기 전에 완료되었으며, 해당 사항이 없는 상태라고 답하였다.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서울시에서 참여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특구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사항의 개발과 보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기존의 고정된 평가 기준과 방식에서 유연하게 세분화가 필요하며, 농·공·산업 위주의 유형에서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유형과 그에 맞는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6) 서울시 인터뷰 결과

(1) 규제특례적용 및 도시계획분야

토지이용 및 국제법상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규제특례의 경우, 주변 도시관리 및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사항을 고려한 특례법 개정 등 제도 보완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특례법에 의한 용적률·건폐율 특례적용의 경우 밀도 상향에 따른 주변 도시관리 상 각종 부영향이 일어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절차 및 부영향 저감 방안 마련 의무화 등의 절차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두 번째, 용적률·건폐율 특례적용 이후 특례적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용도관리방안이 부재하므로, 건축물 대장에 특례사항 및 특례용도 기재 의무화,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과 같이 특례용도에 대한 사후관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용적률·대지건물비를 특례적용 이후 용도변경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및 특례목적 상 실 건축물에 대한 공공적 활용 등 합리적 특례적용 관리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규제특례사항의 개발 보강, 협력체계 구축, 규제특례 지속 발굴, 특구 전담부서 설치, 타 부처 유사 관련 사업과의 연계 활성화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예를 들어,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적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의 구체화, 전담부서 설치 후 역할과 기능 등의 운영방안, 재정 및 세제 지원에 관한 추진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7) 인터뷰의 종합 및 시사점

(1) 특구 지정 및 활용

규제특례 적용사항에서 「약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특구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치구 내에서 진행할 수 있거나, 규제특례를 받더라도 기존의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화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규제특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 유형에는 농·공·산업의 발전 위주로 제정되어있어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에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형의 다양화와 이에 맞는 법 제정이 필요하며 규제특례사항의 신규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은 자치구 위주로 준비하고 있으며, 운영 관리 주체 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어려운 점이 많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계획 준비 단계에서부터 서울시, 인근 자치구, 세무서, 한국관광공사 등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특구 운영 및 관리

대부분의 특구 담당자들은 특구 지정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미지에서 브랜드 가치 및 지역역량 강화와 이미지의 상승효과는 매우 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특구별로 효과가 있다는 지역도 있고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역도 있는 등 저마다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효과가 없다는 지역은 그 이유로 기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

을 활용하고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구의 지정이 경제 활성화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역의 산업이 이미 쇠퇴하고 부진하여 경제적인 매출 상승의 효과는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화사업 외에도 각 부처의 사업 진행 시 관련 및 연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하고 있다.

(3) 특구 평가 및 지원

특구로 지정이 되면 매년 3월 말까지 중소기업청으로 전년도 특구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보고서의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특구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보다 매출액, 규모 등의 형식적인 성과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구별 특징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성과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 등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안정적인 지속적인 특화사업의 진행을 위한 재정 마련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비 및 세제 지원, 인센티브 등의 혜택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자립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4)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 중 강서 미래클-메디특구를 제외하고 토지이용 또는 도시관리적 관점에서 영향을 줄 국제법상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특구 지정 및 관련 검토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도시관리적 관점에서 영향을 주는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등)는 주변 도시관리에 각종 부영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절차 및 사후관리장치 마련, 계획단계에서부터 서울시와 인근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06

해외사례 검토

- 1_ 일본의 특구제도 및 정책 현황
- 2_ 미국의 특구제도 및 정책 현황
- 3_ 싱가포르의 특구제도 및 정책 현황
- 4_ 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06 해외사례 검토

1_일본의 특구제도 및 정책 현황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 버블의 붕괴, 인구 및 고용의 감소와 함께 점점 쇠퇴해가는 도시를 재생하고 다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0년대 초반부터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체가 되어 지역 재생 및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 기능의 증진에 의한 지역 활성화’, ‘규제개혁을 축으로 한 지역 활성화’, ‘기타 지역 활성화에 대한 특정 정책과제에 대응’이라는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축으로 지역 특성 및 목표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활성화, 국제적인 경제활동 거점 형성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도모하는 ‘구조개혁 특구’, ‘총합 특구’, ‘국가 전략 특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1) 구조개혁 특구

2002년 구조개혁특별구역법에 근거하여 시행 및 운영하고 있는 구조개혁 특구는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조치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해서 규제특례에 관련된 항목의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6-1] 일본의 구조개혁 특구 운영 및 평가 절차

2) 국가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총합 특구제도’⁷⁾

2011년 총합특별구역법에 근거하여 시행 및 운영하고 있는 총합 특구는 국가 신성장 전략의 하나로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제도이다. 구조개혁 특구가 지역에 국한하여 개별 규제에 대한 특례조치를 대상으로 한다면, 총합 특구는 복수의 규제에 대한 특례조치를 인정하면서 세제 및 재정, 금융상의 지원 등을 실시하는 점에서 다르다.

특구의 지정 요건으로 ‘포괄적 전략과 해결책의 제시’, ‘성장분야 및 지역의 활성화와 새로운 분야의 시도’, ‘지역자원 활용’, ‘지자체, 민간 등의 운영 주체의 명확성’, ‘정부의 규제 및 제도개혁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정절차는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지역협의회를 거쳐 정부에 신청하고 통과 의례를 거쳐 총합특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도시 및 지역 재생 활성화의 개념에 따른 ‘국가 및 지역의 경제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기존 도시재생제도에서 지정된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특정 지역 포함)’에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구를 중복 지정하고 있으며, 이원적인 체계로 ‘국제전략 총합 특구’, ‘지역 활성화 총합 특구’로 나누어진다.

‘국제전략 총합 특구’는 국가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점 형성, 산업·도시 기능의 육성을 목표로 한 계획 및 사업을 지원한다. ‘지역 활성화 총합 특구’는 지역의 자원 및 산업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규제특례조치는 건축기준법에 대한 특례를 비롯한 4개의 공통적 사항과 국가전략총합 특구에서만 실시하는 사항이 있다. 세제 지원조치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일정 비율로 공제하고 재정 지원조치는 관련되는 정부의 각 부처 예산제도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제도운영 예산인 ‘총합 특구추진 조정비’를 각 계획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 지원조치는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총합 특구 지원 이자보급금’을 이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7) 내각부 지방 창생 추진실 자료 번역 및 재정리(<https://www.kantei.go.jp/jp/singi/tiiki/sogotoc>)

[표 6-1] 일본의 종합 특구제도 비교

구분	국제전략 종합 특구	지역 활성화 종합 특구
목적	경제성장의 엔진, 산업, 기능의 육성을 위한 거점 형성으로 국제경쟁력 향상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해당 계획사업 분야	환경·차세대에너지, 바이오라이프, 농업, 아시아 거점, 연구개발, 국제물류, 국제항만, 컨벤션	환경·차세대에너지, 방재, 농업·6차산업, 바이오, 물류교통, 관광문화, 의료·건강, 금융·소셜비즈니스, 교육보육

3) 국제적 경제활동의 거점 마련을 위한 ‘국가전략특구’ 제도

2014년부터 ‘국가전략 특례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국가전략특구’ 제도는 국제적인 경제활동의 거점 형성을 촉진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으며,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국가전략특별구역계획’을 통해 규제개혁 등의 정책을 종합적이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기존의 특구제도가 민간 또는 지자체에서 제안하여 정부가 인가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됐지만, 국가전략 특구제도는 국가, 지방, 민간이 3자 회의를 통해 계획내용 및 규제개혁을 정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내용을 ① 도시재생·마을 만들기⁸⁾, ② 기업·개업, ③ 고용, ④ 의료, ⑤ 역사적 건축물, ⑥ 외국인 인재의 활용, ⑦ 농림수산업, ⑧ 교육, ⑨ 보육 등 9개로 분류하고, 총 42개의 세부 항목으로 세밀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는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는 다른 제도와 달리, 특구 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시책이라 할 수 있다.

⁸⁾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부문의 규제개혁으로 용적률과 용도 등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도로점용기준의 완화, 항공법 높이 제한을 지역 단위로 승인, 장기체제시설의 여관업법 적용 제외, 여관업법의 특례 대상시설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가 없는 것을 명확화 등이 있다.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국가전략 특구는 도쿄권, 아이치 현, 니가타시, 센다이시, 센보쿠시, 간사이권, 야부시, 히로시마 현·이마바리시, 후쿠오카시·기타큐슈시, 오키나와 현 등 2차에 걸쳐 9개의 특구가 지정되었고, 이 중 인가된 사업은 도쿄권 40개의 사업을 포함한 125개의 사업이 인가되어 진행하고 있다.

4) '민간의 활력'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 완화 및 지원방안의 다양화·구체화

일본은 구조개혁 특구제도를 보완하고 더 강력한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 특구, 국가전략 특구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존의 지자체 또는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장애가 되었던 각종 규제의 완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때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 체계 및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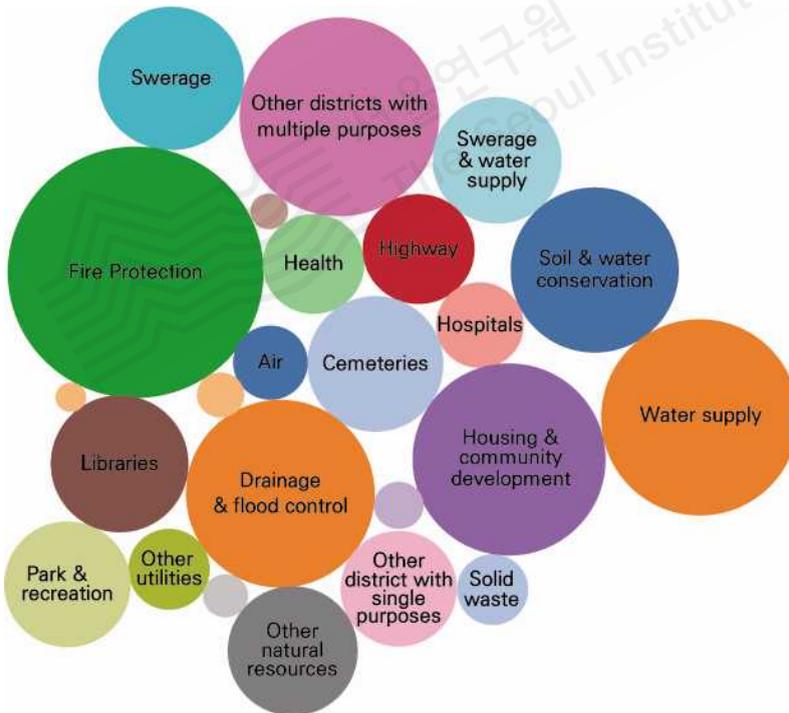
[표 6-2] 일본 특구제도 및 정책 비교

구분	구조개혁 특구	종합 특구	국가전략 특구
법률 실시	2002년	2011년	2014년
목적 및 특징	지역 재생 및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선택과 집중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중점 추진
지원	지역에 한하여 규제 특례조치	규제특례조치 세제 및 재정, 금융상의 조치	세밀한 규제개혁·완화 제시
추진 주체	민간, 지자체 제안 중앙정부 인가	민간, 지자체 제안 중앙정부 인가	중앙정부 기관장, 지자체장, 민간대표 3자 회의로 결정

2_미국의 특구제도 및 정책 현황

미국의 특구 지역(Special district)은 특정 지리적 영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정치적 하부 조직을 뜻한다(United States census, 2012). 연방정부와 주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범용정부 단위로서 존재하며, ‘특별지방 정부(Special District Governments)’로 정의되어 대부분 단일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관련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기도 한다(United States census, 2012).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서비스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서비스인 모기퇴치서비스, 공동묘지 유지서비스, 화재예방, 병원 서비스 등이다. 특구의 서비스 영역 규모는 단일 블록에서부터 여러 카운티를 포함하는 영역까지 그 규모 또한 서비스의 영역만큼이나 다양하다.



자료: U.S. Census of Governments(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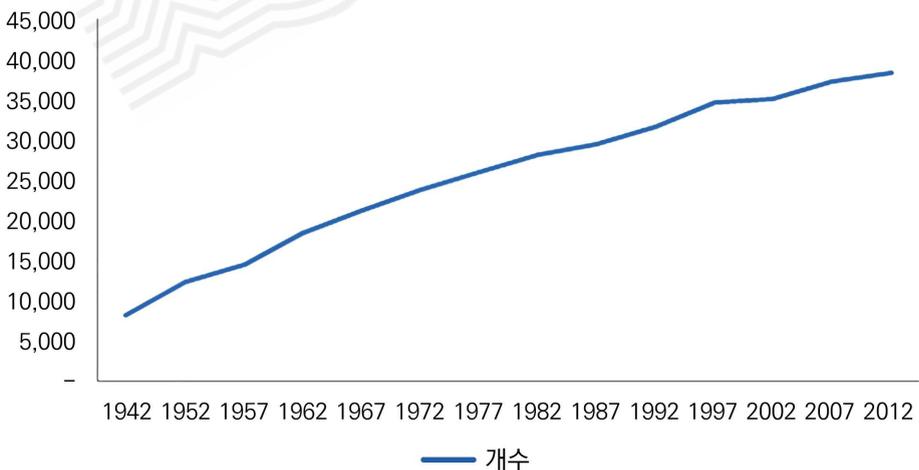
[그림 6-2] 미국 특구 지역 종류

1) 미국 특구의 현황

미국 특구의 특징은 ① 정부의 한 형태, ② 관리위원회 설치, ③ 서비스와 시설 제공, ④ 경계를 정의(Senate Local Government Committee, 2010)하며 특구의 종류는 제공되는 서비스 및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일특구(Single function district)와 다기능 특구(Multi-function district), 사업형 특구(Enterprise district)와 비사업형특구(Non-enterprise district), 독립형 특구(Independent district)와 종속형 특구(Dependent district)의 세 가지 대조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최재송, 2004).

단일특구는 단일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기능 특구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특구이다. 사업형 특구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형태이며, 비사업형 특구는 대부분 주(州)의 재산세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독립형 특구는 그 구역 유권자들에게 선출된 자치위원회를 갖고 있고, 종속형 특구는 기존의 입법부에 의해 관할되고 있다.

특구 지정 개수는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특구가 합병되거나 운영비용의 절감을 위함이며 서비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Conor Clarke, 2014).



자료: U.S. Census of Governments(2012)

[그림 6-3] 미국 특구 개수

2) 미국 특구의 장·단점

미국 특구의 장점으로는 특구 내 직접적인 요구를 알 수 있어 이에 따른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고, 공공 서비스를 위한 세금 혜택을 납세자가 직접 받을 수 있어 이익이 되며, 작은 그룹으로 이뤄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결정된 사항에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면을 들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너무 많은 특구가 생겼을 경우 원래의 취지와 달리 비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으로 예를 들어 하나의 서비스를 시와 특구가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구역 분배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때때로 지역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으로 예를 들어 한 지역에 다양한 수도, 소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구가 있으면 지역 전체의 계획에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이 있어, 특구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계획된 경계에 따라 주의하여 지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Senate Local Government Committee, 2010).

3_싱가포르의 특구제도 및 정책 현황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이 전혀 없는 환경적 여건으로 일찍이 정부 주도의 대외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여 세계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한 나라이다 (KOTRA, 2016).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하면서 국가 전역을 경제특구인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유항으로서 무역하는 무역도시이다. 국내자본과 시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유치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는 모든 산업에 허브(Hub)를 붙여 무역, 물류, 비즈니스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즉 다국적 기업 유치를 통해 싱가포르를 선진국에 직접 연결해 발전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성공적인 외자 유치 전략을 통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KIEP, 2007).

싱가포르 경제개발 특구의 성공 요인으로 경제특구 건설을 통해 경제 발전의 선구자 역할

을 했다는 점과 싱가포르의 높은 투자 매력도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투자 매력도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자본 및 외환시장 자유화, 탁월한 사회간접자본 (Infrastructure), 정치·사회적 안전성 등을 들 수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장점이기도 하다(KOTRA, 2006).

1) 싱가포르 특구의 경쟁력

싱가포르는 경제적, 정책적, 경영 환경적인 측면 모두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1인당 GRDP는 2013년 기준 5만 5천 달러 이상에 달하며, GDP(2013년 기준)는 2,979억 달러, 경제성장률(2013년 기준)은 3.9%, 경제성장률 전망(2013년~2019년)이 3.1%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시장 매력도를 갖고 있다. 인구가 적고 임금이 높은 관계로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일찍이 비즈니스를 위한 항공, 해상, 물류, 통신 등의 투자가 이루어져 인프라가 가장 잘 연결된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항로의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 경제적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Aaa 등급(Moody's 2014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며 1991년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자유무역 시대 창설에 적극적 자세를 취하였고, 1999년부터 다자간 무역 협상과 더불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중요한 비중을 두는 등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방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서 국제적 신용의 경쟁력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에서 매년 1위, WEF 세계 경쟁력지수 IP 보호 부문에서 2013년 세계 2위, Mercer 생활환경지수 부문에서 2014년 세계 1위를 하는 등의 국제적 투자환경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KOTRA, 2016).

[표 6-3] 싱가포르와 한국 특구의 경쟁력 비교

구분		싱가포르	한국 (자유무역 지구, 인천)	
경제 ⁹⁾ (2013년 기준)	GRDP (명목, 억 달러)	2,979	591	
	1인당 GRDP (명목, 달러)	55,182	20,800	
	GDP (명목, 억 달러)	2,979	13,045	
	경제성장률 (%)	3.9	2.4	
	경제성장률 전망 (2013~2019(E), %)	3.1	3.8	
정책	국가 안정성 ¹⁰⁾ (신용등급) (16년 1월 기준)	Moody's	Aaa	Aa2
		S&P	AAA	AA
		Fitch	AAA	AA-
경영 ¹¹⁾	FTA 체결 및 협상추진	체결 및 발표 FTA (개)	20	15
		체결 및 발표 전 FTA (개)	3	1
		협상 진행 중 FTA (개)	7	11

2) 싱가포르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는(EDB) 싱가포르의 통상산업부(MTI; Ministry of Trade & Industry) 산하의 법정(Statutory) 기관으로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전문화되고 반 독립적인(Semi Independent) 기관이다. 즉, 정부 조직도 상으로는 통상산업부 산하 기구이지만 장관급 관료를 임명해서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를 갖춰 놓았고, 행정조직과 함께 심의 의결 조직을 기구 내에 갖추므로 자율성을 가지며 행정조직의 책임자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함으로 독립적 조직 특성을 보인다. EDB의 위원은 관리이사(Managing Director), 싱가포르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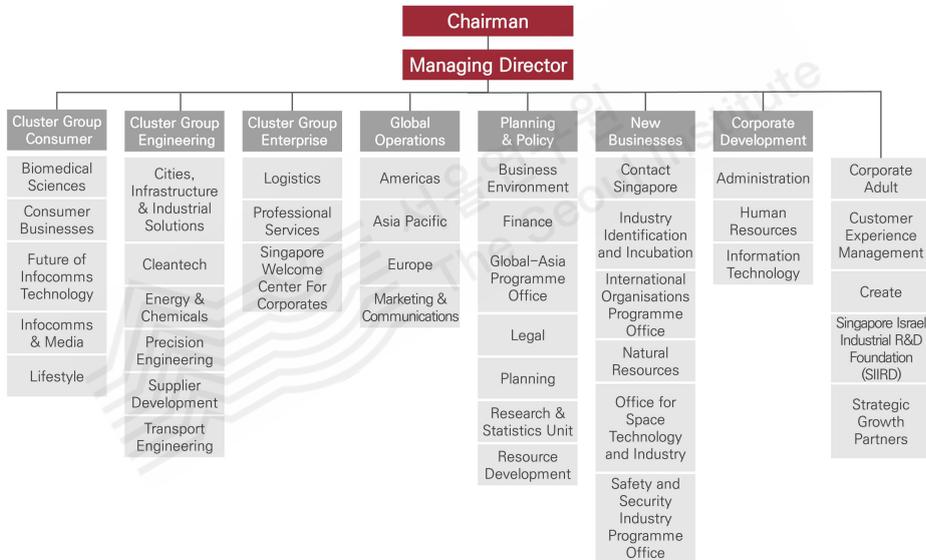
9) 경제 관련 지표자료: IMF

10) 국가 안전성 등급: 국제금융센터(국가 신용등급)

11) 경영: KOTRA 및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CEO, 통상산업부(MTI) 부장관(차관), 노총 부위원장, 학계(대학 총장)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조정기능은 EDB와 통상산업부 출신 위원들이 담당한다.

EDB는 투자유치, 비즈니스 환경개선, 산업 분야 확장 등의 활동을 한다.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서 지역 및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하고 원스톱 기관으로서 더욱 높은 수익을 달성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가치사슬을 발전시켜 투자를 유치하고 기존 산업 분야를 확장한다.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싱가포르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자와 상호 작용, 투자촉진과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비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정부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의 미래를 대비하여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한다.¹²⁾



자료: EDB 홈페이지

[그림 6-4]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 조직도

¹²⁾ <https://www.edb.gov.sg/content/edb/en/about-edb/our-strategy/what-we-do.html> 번역 및 재정리

4_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일본, 미국, 싱가포르는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특구의 목적 및 유형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각국의 규제 완화 및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체가 되어 지역 재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 및 목표에 따라 이에 맞는 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특구 유형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 세제 및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지원한다.

미국은 특정 지리적 영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구 지역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단일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관련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므로 규모 및 영역 등이 다양하며 세제 혜택을 납세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토 전체가 하나의 경제특구로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선진국과 직접 연결하여 발전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1960년대 싱가포르가 외자 유치 전략을 시작한 시기부터는 미국,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찾아 현지 생산을 확대하던 시기였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외국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선진화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싱가포르에서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방시키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특구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표 6-4] 해외 특구 유사제도 및 정책 비교

구분	일본	미국	싱가포르
목적 및 특징	정부와 지자체가 일체가 되어 지역 재생 및 활성화 도모	특정 지리적 영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대부분 단일 서비스를 제공	국토 전체가 하나의 경제특구로서, 다국적 기업 유치를 통해 선진국에 직접 연결해 발전하는 전략
특구 유형	구조개혁 특구, 종합 특구, 국가전략 특구	단일특구, 다기능 특구, 사업형 특구, 비사업형 특구, 독립형 특구, 종속형 특구	금융, 교역, 서비스 허브
지원	특구 유형에 따라 규제 특례, 세제 및 재정, 금융상의 조치	세제 혜택	기업의 투자환경 개방, 다양한 세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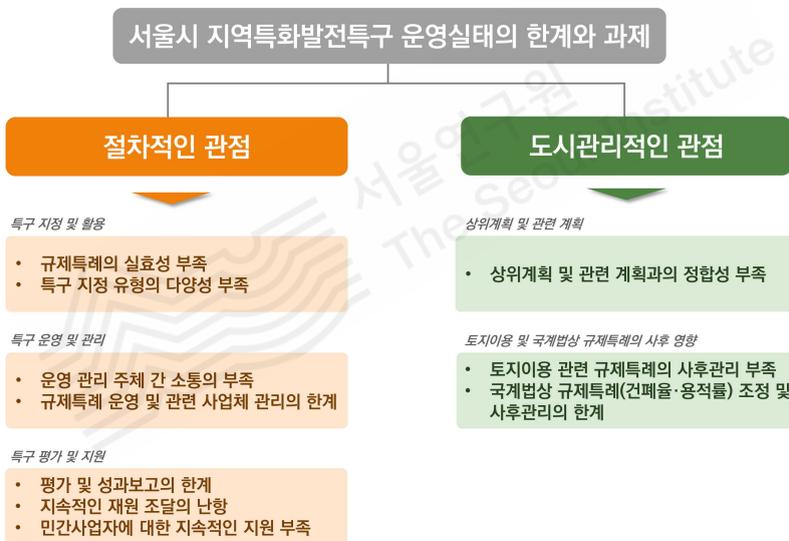
07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한계와 과제

- 1_특구의 절차적인 관점에서 본 한계와 과제
- 2_도시관리적 관점에서 본 한계와 과제

07 |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한계와 과제

5장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에 대한 한계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구의 지정 전과 지정 후, 지속적인 사업 진행 등 절차적인 관점에서 ① 특구 지정 및 활용, ② 특구 운영 및 관리, ③ 특구 평가 및 지원 부문의 한계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향후 지역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도시관리적인 관점에서 ①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부족, ② 토지이용 및 국제법상 규제특례의 사후 영향에 대한 부문의 한계와 과제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그림 7-1]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의 한계와 과제 개념도

1_특구의 절차적인 관점에서 본 한계와 과제

1) 특구 지정 및 활용

○ 규제특례의 실효성 부족

규제특례가 지역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선 특구 지정 및 절차를 진행하면서 특구를 담당하고 있는 각 자치구 담당자가 공통으로 언급한 답변에서 기존의 법 기준 및 현행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많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수요자인 민간사업자의 특례 활용도가 저조하여 실질적인 특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화사업과 규제특례의 연계성 부족으로 특례의 활용도가 저조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특구의 실효성과 규제의 틀 및 유형에 한계가 존재한다.

5장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특구 구역 내의 설문조사 참여 사업체 중 88.3%가 임대 사업장으로 규제특례의 혜택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매장을 찾는 고객 수의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이로 인해 특구 내 특화사업과도 연계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특구의 원래 목적인 지역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구로 발전시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 특구 지정 유형의 다양성 부족

현재 특구 지정의 유형을 보면 향토자원·유통물류,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이러한 한정된 유형을 저마다 특성이 있는 다양한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 특구의 경우, 관련 인터뷰에서 기존 중구의 특성상 도심 관광 및 쇼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의료라는 유형이 더해진 형태로,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여건이 변화했다기보다 기존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

가 기반이 되어 지역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었다. 특구 지정 시, 본래 지역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인정하고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 대한 특구 유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단정 짓기보다 다양한 유형이 한 지역에 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보다 세분화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한 발굴과 보강이 필요하다.

2) 특구 운영 및 관리

○ 운영 관리 주체 간 소통의 부족

전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지정되고 있는 특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 한정되어 있어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공조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구조 형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서울시 내부에 특구 관련 담당 공무원이 존재하나 그 역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 자치구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정 이후 지역별 특구에 대한 검증방법으로 적용조사, 수요조사 등의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이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역 업체의 입장에서 지정 전후로 특구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지속적인 소통의 부족 현상과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특구의 운영 및 관리 주체의 면면을 볼 때, 범부처 간 또는 공공과 민간의 협조체계 및 의사소통 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규제특례 운영 및 관련 사업 관리의 부족

서울시 내 특구의 지정 이후 실행되는 대부분의 일반적 규제특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약사법, 의료법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 도로법(특화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도로교통법(행사 시 차량통행금지), 출입국법(외국인 교원 임용기준 완화) 등 일시적이면서, 한시적 사항에 국한되는 부분들이 많다. 규제특례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모두 그 시기에 따라 필요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이에 적합한 규제특례 사항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특구계획 및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특구 내 사업체 운영 시 불편한 점으로 ‘판로개척’, ‘동종업체 경쟁’, ‘시장 수요파악 어려움’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특례 운영 이외에도 지역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야 하며, 공공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해 특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3) 특구 평가 및 지원

○ 평가 및 성과보고의 한계

특구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의 특구 운영 성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는 특구운영 성과 및 관할 지자체장의 평가,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다음 연도 운영에 관한 계획, 주민의 의견과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중 특구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명확한 결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구 담당자의 인터뷰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관련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을 들고 있으며,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이 어려워 담당자가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보다 명확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가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독려 차원에서 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성과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예산배정의 근거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 지속적인 자원 조달의 난항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후 사업을 시행할 때, 초기에는 예산 확보를 통하여 각종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서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다. 설문조사에서 특구 지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화사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특구 지정 초기에 이루어지는 ‘공영주차장 건립’, ‘환경개선사업’, ‘테마거리 조성’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 사업들은 연속되는 사업이 아닌, 대부분 단기간에 완료되는 사업이다. 일부 촉제 및 홍보(마케팅) 관련 사업 등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보다 예산 및 행사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현재는 명맥만 유지되는 경우도 많았다. 특화사업의 장기적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특화사업 추진 및 규제특례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및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자원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활성화사업 및 지역 내 다른 현안사업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부족

현행 특구계획, 규제특례의 제안 및 사업추진 내용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또는 과감한 특례가 적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유치에 한계가 존재하며, 지역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통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특화사업의 발굴이 어려운 점 또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특구지정 신청 시 특화사업자를 모집할 때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하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그 취지에 맞는 특구별 맞춤형 특례 및 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공공에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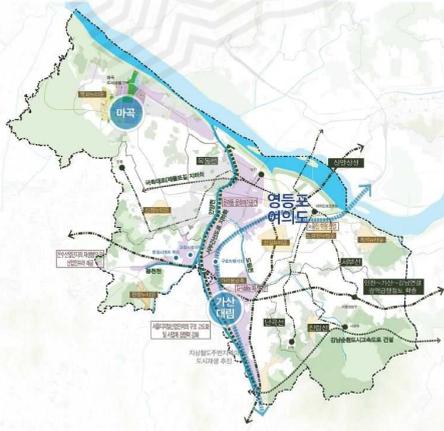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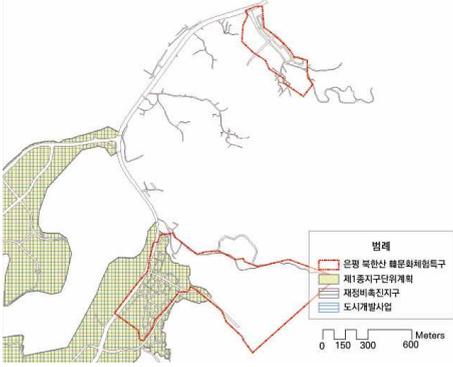
2_도시관리적 관점에서 본 한계와 과제

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부족

서울시 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범위를 살펴본 결과, 203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관련 계획의 범위 및 계획 내용과는 연계성 없이 각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서 필요한 구역이 특구 범위로 지정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정되는 특구의 계획 내용을 역으로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자치구도 존재한다.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작성되는 지정신청서 내용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위계획 및 지정하고자 하는 범위의 주변 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계획 내용 및 범위의 정합성 측면에서 상호 부합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특구 지정 신청 시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상 필수항목으로 규정하거나, 관련 심의 시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계획에 대한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7-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강서 미래클-메디특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2030 서울플랜 서남권 발전구상과의 연계성 배제	특구계획 범위 설정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2) 토지이용 및 국제법상 규제특례의 사후 영향

○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의 사후관리 부족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는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등과 같이 특구로 지정이 되면 기존의 간척 농지 및 수자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의 변경 의제처리가 된다. 이 때문에 지역 전체의 토지이용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해당 특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변수가 생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될 경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할 수 있도록 바뀐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구지정단계와 지정 이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지정을 위한 특구계획 및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시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지만 국지적 차원에서의 검토 및 심의는 자칫 지역 전체의 도시관리적 측면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광역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도 관련 심의가 진행되도록 하여 이러한 한계를 미연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정 이후에 대해서도 특구계획 및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규제특례 적용에 대한 조사(2년에 1회 이상)를 진행하여 특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게 아닐 때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등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시에는 지정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한 지정해제를 제외하고는 지난 10여년 간 평가를 통해 지정이 해제된 특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와 같이 특구지정 초기에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관련 시설을 조성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특화사업자의 재정 상태의 어려움, 원활하지 않은 자재 공급 등으로 특화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렇게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지역이 미치는 파급성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특례 적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특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강화하여 부진한 특구 및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특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를 하는 등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서울시 내 지정된 특구 중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사례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점차 특구의 지정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관련 조치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2]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 적용 특구 비교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도시개발과 한국타이어 간 협약이 체결되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기업도시 개발 실시계획과 사업 추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내 양촌·용정지구는 저유가에 따른 조선경기 부진과 특화사업자의 자금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음. • 사업정상화를 위해 후속업자 유치하기 위한 계획변경 및 특화사업 기간이 '15년 → '18년으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9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특구 종합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의 표창과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음.

자료: 연합뉴스, 경남매일신문, 중소기업청 자료 참조

○ 국제법상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조정 및 사후관리의 한계

서울시 내 지정된 10개의 특구는 대부분 일반적인 규제특례¹³⁾를 적용받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중 국제법상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사례는 ‘강서 미라클-메디특구’가 유일하다. 강서구는 특구 지정 이후 관련 규제특례에 대한 조례를 제

13) 도시관리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상의 특례(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완화)를 제외한 일반적 규제특례

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병원의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증축으로 병상 수 확보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 관련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지정 신청 시 자치구와 중소기업청이 관련 절차를 수행하면서 지역 전체의 도시관리적 차원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의 검토 또는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관련 규제특례의 허용이 추진된 것으로 지정절차에 관한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특구를 지정할 때 기초자치단체(자치구)와 중소기업청이 협의하고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만 하면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검토가 없더라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전체의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영향이 없는 규제특례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토지이용 및 국제법상의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시장의 혼선을 초래하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및 난개발, 개발완료 후 용도변경 진행 등 향후 지역에 많은 파급효과를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 및 국제법상의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은 특구지정 절차에서 진행 시 광역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지정 이후에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규제특례와 도시관리적 측면의 규제특례의 사후 영향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이원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강화 및 상호 협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표 7-3]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의 국제법상(건폐율·용적률) 관련 규제특례사항

미즈메디병원	웰튼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4,108㎡ → 15,674㎡ • 건폐율: 53.1% → 55.9% • 용적률: 321.0% → 3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4,998㎡ → 6,612㎡ • 건폐율: 49% → 49% (변동 없음) • 용적률: 247% → 375%

08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1_개선방향의 원칙 및 방향
- 2_특구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의 강화
- 3_특구의 운영과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의 강화
- 4_특구의 지속적인 유지 및 협조체계의 강화
- 5_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08 |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이 장에서는 7장에서 도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의 한계와 과제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특구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및 관계 행정기관, 자치구 등의 역할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1_개선방향의 원칙 및 방향

앞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서 절차적인 문제와 도시관리적인 문제의 2가지 관점에서 각각 세부적인 한계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각기 도출된 한계와 과제는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원칙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의 강화

특구의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①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부족, ②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의 사후관리 부족, ③ 국제법상 규제특례 조정 및 사후관리의 한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특구의 지정 전부터 지정 이후의 관리까지 고려한 강화 또는 심화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2) 특구의 운영과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의 강화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① 규제특례의 실효성 및 지정 유형의 다양성 부족, ② 지속적인 자원 조달의 난항, ③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부족 등을

한계와 과제로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특구 내에서 실효성 있는 운영과 원활한 특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3) 특구의 지속적인 유지 및 협조체계의 강화

특구의 유지·관리와 각 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한계와 과제로는 ① 각 주체 간 소통의 부족, ② 지속적인 규제특례 운영 및 관련 사업 관리의 한계, ③ 평가 및 성과보고의 한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운영과 관계되는 각 주체 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2_특구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의 강화

1) 상위 및 관련 주변 계획과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의 의무화

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범위에서 계획 내용이 상위계획과 주변의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을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제7조)’과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제10조)’ 등 규제특례법 조항에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여 지정 신청 시 주변 및 광역적 계획 내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과보고서 및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등의 세부 항목에도 포함하여 지정 이후에도 관련 계획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특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구의 계획 및 범위가 광역적 차원에서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요구하고 계획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의 사후 조사 및 지정해제 요건의 강화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 적용은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에 대한

심의 단계에서부터 특구계획 및 특화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고, 지정되어도 외부의 환경변화와 지자체의 사정 때문에 특화사업의 진행이 부진한 경우에 대한 담보도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정단계에서 특구 토지이용계획(특구계획)을 수립할 시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특례법 제37조) 외에도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특례 적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2년에 1회 이상’의 규정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성과보고서’와 같은 시기에 상호 간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특구의 지정해제에 관해서는 자발적으로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진특구에 대한 특구위원회의 역할 및 지정해제 요건의 강화를 통한 심의의결을 거쳐 과감하게 해제를 추진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현재 토지이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사례는 ‘강서 미라클-메디특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특구의 지정이 늘어가는 추세로 향후의 도시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자치구에서 관련 특구의 추진이 검토되는 시점부터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 국제법상 규제특례 조정 및 심의 절차 마련과 사후 관리체계의 강화

국제법상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도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와 마찬가지로 향후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을 주기 때문에 지정 전부터 사후 관리까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지정절차 진행 시 광역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체계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특례법 제5조)’의 조항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관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특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심의(특례법 제32조)’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및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서 특구 지정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특례법 제12조)할 시, 도시관

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 시 특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후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특화사업의 필요에 따른 용적률·건폐율 완화 이후 특화사업 및 관련 용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용도변경 이력 관리 등 이행담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와 연계한 용도관리 방안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후에 관련 사항의 도입을 미이행 시 용적률 인센티브 환수방안¹⁴⁾과 법률적 제재방안¹⁵⁾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인 규제특례와 도시관리적 차원의 규제특례에 대한 절차의 이원화

앞서 토지이용 관련 규제특례와 국제법상 건폐율·용적률의 완화 적용에 대한 지정 초기 및 사후 관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심의 및 관련 절차의 강화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그러나 도시관리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반적인 규제특례까지 강화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 규제특례에 대한 절차를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규제특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절차를 추진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내용을 추가로 마련하는 정도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현행 일반적 규제특례로 분류되어있는 국제법상의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와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함께 도시관리적 차원에서의 규제특례로 특례법을 개정하고 관련 심의와 각종 절차를 강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14)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 및 효율적 운영과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실시와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조건인 용도 도입 비율을 위반할 경우, 해당 면적을 공공이 무상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패널티 부과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벌칙) 조항을 적용, 지구단위계획 위반 시,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일반적 규제지정 절차 개선방안(안)

도시관리적 규제지정 절차 개선방안(안)

[그림 8-1] 특구 신청 절차 개선방안(안)

3_특구의 운영과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의 강화

1) 규제특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제안의 활성화 및 유형의 다양화

규제특례가 기존의 법 기준과 현행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서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문제가 없으나 특구지역 내 실수요자들인 민간사업자들의 특례 활용도가 저조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수요자들의 규제특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된 특화사업자인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도 각종 지원을 통해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대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구 관련 사업을 진행할 시 임대료에 대한 혜택(동결 또는 감면), 적극적인 홍보의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에서는 ‘민간기업 등의 특구계획의 제안(특례법 제4조2)’에 따라 민간기업이 먼저 특구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우호적인 협의의 진행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구 지정 유형의 한계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 및 가치를 파악하여 각기 다른 특구의 유형이 동일 지역에 복합 지정되어 다양한 지역의 수요(Needs)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특구 유형 및 형태를 세분화하여 관련 규제특례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관련 주체 연계의 다각화

특구의 지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완료되는 초기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또는 관련 사업이 진행된 이후, 자원 조달의 난항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 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원의 확보가 절실한 사항으로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사업추진 구조에서는 특화사업 관련 자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한 광역자치단체(서울시) 또는 국가의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역 내에서 광역경제권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또는 현안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각 주체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 시 지정단계에서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공동특구(특례법 제4조, 제13조)’로 지정신청을 하여, 해당 특화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특례법 14조)’에서 특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장에게 조언 및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또는 ‘관련 자치단체 및 기관과 연계’ 등으로 의무화하여 상시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기능의 강화

특구계획의 제안 및 사업추진의 내용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지속적인 특화사업의 발굴에 한계가 있다. 민간사업자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정 단계에서부터 지정 이후까지 특구별 맞춤형으로 특례 및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수요조사(특례법 제48조)’를 통해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공공에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특례법 14조)’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속적인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특례 활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행사성 규제보다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의 유치가 가능한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사례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또는 총합특구와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_특구의 지속적인 유지 및 협조체계의 강화

1) 관련 주체 간 소통 및 협력체계의 강화

특구의 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운영 및 관리주체가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 한정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서울시)와의 관련 규제 적용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중앙정부에서도 평가 및 조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 업체의 입장에서도 소통의 부족 문제를 들고 있다. 특구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는 특구에 관련된 4자(기초, 광역, 중앙, 민간)의 주체와 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이 또한 필요에 따라 지정 초기부터 공동특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특례법 14조)’에서도 ‘원활한 특구의 운영·관리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 내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 또는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속적인 규제특례 운영 및 특화사업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마련

특구의 지정이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는 곳도 있으나 행사성 규제에 대한 일시적이면서도 한시적인 사항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영업에 관한 전망 및 개선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소통 및 모니터링을 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중재 방안 등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규제적용에 대한 조사(특례법 제48조)’ 및 ‘성과보고(특례법 제47조)’ 이 외에 제3의 공공 또는 민간의 연구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평가 및 성과보고에 대한 전문 검토와 지원 기능의 강화

특구의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과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예산

배정이 어려워 명확한 결과를 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보다 명확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중 정보제공(특례법 제14조 2항)’에 대한 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 후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특례법 제47조의 3)’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 분석 내용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앞서 기술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연동하여 지속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발굴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_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앞서 특구 운영에 대하여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의 강화’, ‘특구의 운영과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의 강화’, ‘특구의 지속적인 유지 및 협조체계의 강화’ 등 3개의 원칙에 따라 이에 대한 10개의 세부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 체계 및 경제적인 지원,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조치의 3가지 측면에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조직 체계의 측면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현 국내의 상황을 볼 때, 쇠퇴하는 도시의 재생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도 특구의 지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시한 특구의 개선방향은 소관 관청인 중소기업청과 입안하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소관 관청인 중소기업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앞서 제시한 개선방향 및 향후 수립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수요조사를 강화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규제특례 사항의 지속적인 발굴 및 보강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구와 관련된 각 주체의 담당자와 도시계획, 경제, 사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조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특구 전담 부서의 설치를 통하여 특구의 지정부터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까지 상호 간에 상시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경제적인 지원 측면

현재 국내에서 일부 광역자치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적인 자립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기업도 장기간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신규사업 투자에 대한 위축 심리가 작용하여 특구로 지정되더라도 특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면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제특례의 적용만으로는 관련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외의 유사한 특구제도를 살펴보면 일본은 구조개혁특구 및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과감한 규제를 적용함과 동시에 총합특구를 통해 세제 및 재정 금융에 대한 지원조치를 하여 원활한 사업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 등의 경제적 조치를 통하여 각종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자의 신규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국가성장의 원동력 및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특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의 특구제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¹⁶⁾ 또한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특례 적용의 발굴도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 사업의 손실 방지 및 이윤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소관 관청인 중소기업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특구별 유형과 규모에 맞는 세제 및 재정과 금융상의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조치 측면

마지막으로 특구가 국가의 성장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¹⁶⁾ 현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계류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TFI를 구성하여 특구 관련 정책의 개선 및 강화 방안을 전략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도 현행 특구지역에 대해 서울연구원 또는 자치구와 함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하여 사업 진행이 미흡한 지역 또는 신규 지정을 목표로 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과 전문가, 주민, 기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위원회(가칭)’ 등을 설치하여 특구의 지정, 운영 및 관리, 성과의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수, 2005, 「지역특화발전의 개발동향과 부산의 대응방안」.
- 김영수, 2016, 「한국의 규제프리존 정책과 향후 과제」 ‘지역희망박람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국내 특구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 박영중, 2009,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사)한국기업평가원, 2012, 「지역특구 성과평가를 통한 지역특구제도 발전전략」.
- 상공회의소, 2007,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과 개선과제」.
- 서울연구원, 2016, 「양재-우면 R&D지구 육성 종합계획」.
- 중소기업연구원, 2015,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 중소기업청, 2016,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활용사례집」.
- 최재송, 2004, 「미국의 특구 제도에 관한 연구: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 현대경제연구원, 2014, 「지역특구 10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2016, 「2017 싱가포르 진출전략」.
- 강서구청, 2015, 「강서 마라클-메디특구 지정 신청서」.
- 관악구청, 2015, 「관악 Edu-valley 교육 특구 계획 변경(안)」.
- 노원구청, 2007,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신청서」.
- 동대문구청, 2005,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지정 신청서」.
- 은평구청, 2015,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지정 신청서」.
- 중구청, 2011, 「중구 영어교육특구 지정 신청서」.
- 중구청, 2013, 「서울중구 해피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지정 신청서」.
- 중랑구청, 2016,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계획 자료」.
- Conor Clarke, 2014, *Merging and Dissolving Special Districts*.

United Census, 2012, *Individual State Descriptions*.

Senate Local Government Committee, 2010, *What's so special about special districts*.

<http://www.smba.go.kr/>(중소기업청)

<http://www.kcif.or.kr/>(국제금융센터)

<http://www.census.gov/>(United States Census)

<http://www.edb.gov.sg/>(싱가포르경제개발위원회)

<http://www.kotra.or.kr/>(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motie.go.kr/>(산업통상자원부)

<http://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http://map.naver.com/>(네이버 지도)



부록

1_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사항

[부록 표 1]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관련 사항

구분	규제특례사항	내용
일반적인 규제특례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 설립 및 운영 가능,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시·도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법	특구에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봄
	교육공무원법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초·중등교육법	외국어 교원 및 강사 임용기준 완화, 학교의 장은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함 다만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체류자격 사증발급절차 완화, 체류기간 상한 연장
	도로교통법	자동차 등 도로통행 금지 또한 제한 등의 조치 가능
	옥외광고물 관리법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조례로 지정
	농어촌정비법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은 변경할 수 있음.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음
	농지법	농지 위탁경영, 농업진흥지역 해체 및 농지 전용허가

구분	규제특례사항	내용
일반적인 규제특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林道)를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이 제9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함.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산지관리법	산지 전용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고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매각, 교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약사법	한약도매상은 공동으로 관리약사 배치
	의료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가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최대한도 완화
	도로법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즉시 협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점용대상·점용 기준·행위 허가기준 조례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지정 가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국유·공유 재산 등에 관한 특례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음.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들 수 있음

구분	규제특례사항	내용
일반적인 규제특례	주세법	농업인·임업인, 생산자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자는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화산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지리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 가능
	종자산업법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하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900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음
	특허법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 가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 관련 특구의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 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음
	건축법	문화예술 관련 특구에서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 시설은 신고대상으로 봄
	주택법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특별시 및 광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불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교육, 환경, 유통·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에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사용하나 사용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유통산업발전법	공동 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구분	규제특례사항	내용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특구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특구토지이용의 내용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된 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유치지역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유치지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물류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의 지정 등	물류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의 지정 등
	허가 등의 의제	초지의 전용허가	초지의 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하천공사의 허가, 하천 점용허가,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공사의 허가, 하천 점용허가, 하천수의 사용허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협의·승인, 매립목적 변경승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협의·승인, 매립목적 변경승인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조성사업 승인허가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조성사업 승인허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구분	규제특례사항	내용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허가 등의 의제	국유재산 사용의 허가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수도사업 인가
		공공하수도 공사 또는 유지허가
		벌채 등의 허가, 사방지(砂防地) 지정해제
		소하천 점용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권한이양에 관한 규제특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특구장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영업시작 전 체육 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춘 것을 조건으로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수 있음.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여야 함.
	축산물위생관리법	닭·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조리 및 판매장에서 직접 도살·처리 가능
	식품위생법	특구장이 식품 표시내용, 영업시간을 달리 정함.
	자동차관리법	특구장이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 준수 사항을 조례로 지정

자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장 요약 및 재작성

2_전국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

[부록 표 2] 지역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현황

시·도	시·군·구	계	특구명칭	유형
서울	동대문구	1	서울역령시 한방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노원구	2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중구	3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교육
		4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의료·복지
	강남구	5	강남 청담·압구정패션 특구	관광레포츠
	관악구	6	관악 Edu-Valley교육특구	교육
	은평구	7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관광레포츠
	성동구	8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교육
	강서구	9	서울특별시 강서미라클-메디특구	의료·복지
	중랑구	10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교육
부산	해운대구	1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관광레포츠
	기장군	2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동구	3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	관광레포츠
	남구	4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관광레포츠
	금정구	5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교육
	동래구	6	동래 문화교육특구	교육
대구	중구	1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2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산업·연구
	북구	3	대구 안경산업특구	산업·연구
인천	서구	1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강화군	2	강화 약썩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중구	3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관광레포츠
광주	광산구	1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남구	2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교육
울산	울주군	1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남구	2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관광레포츠

사·도	시·군·구	계	특구명칭	유형
경기	이천시	1	이천 도자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군포시	2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교육
	양평군	3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고양시	4	고양 화훼산업특구	산업·연구
		5	고양 전시문화특구	산업·연구
	여주시	6	여주 쌀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양주시	7	양주 장충 문화예술체험특구	관광레포츠
	안산시	8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관광레포츠
	가평군	9	가평 잣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시흥시	10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관광레포츠
	의왕시	11	의왕 철도특구	산업·연구
	남양주시	12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관광레포츠
강원	원주시	1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산업·연구
		2	원주 울·한지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태백시	3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관광레포츠
	강릉시	4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산업·연구
	화천군	5	화천 평화생태특구	관광레포츠
	홍천군	6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7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삼척시	8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산업·연구
	영월군	9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관광레포츠
	정선군	10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관광레포츠
	인제군	11	인제 산나물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12	인제 용대항태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평창군	13	평창 산양삼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속초시, 평창군, 고성군	14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충북	제천시	1	제천 약초웰빙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옥천군	2	옥천 묘목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사·도	시·군·구	계	특구명칭	유형	
충북		3	옥천 옥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충주시	4	충주 사과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5	충주 증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관광레포츠	
	영동군	6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7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단양군	8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산업·연구	
	음성군	9	음성 다울찬친환경수박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청주시	10	청주 직지문화특구	관광레포츠	
	보은군	11	보은 대추한우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증평군	12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레포츠	
	청주, 충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13	충북 태양광특구	산업·연구	
	진천군	14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교육	
	충남	금산군	1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2	금산·추부 깻잎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논산시		3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4	논산 양촌곶감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5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청양군		6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태안군		7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산업·연구	
예산군		8	예산 향토사과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홍성예산군		9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교육	
홍성군		10	홍성 유기농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서천군		11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12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아산시		13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천안시		14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서산시		15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관광레포츠	
부여군		16	부여 양송이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사도	시·군·구	계	특구명칭	유형
충남	공주시	17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교육
		18	공주 5도2촌일밤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전북	순창군	1	순창 장류산업특구	산업·연구
		2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의료
	고창군	3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4	고창 경관농업특구	관광레포츠
	완주군	5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의료
	남원시	6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진안군	7	진안 홍삼한방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부안군	8	부안 영상문화특구	관광레포츠
		9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10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산업·연구
	김제시	11	김제 총채보리한우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12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산업·연구
	전주시	13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관광레포츠
	장수군	14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관광레포츠
	정읍시	15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임실군	16	임실엔 치즈·낙농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전남	순천시	1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2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여수시	3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츠
		4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교육
	곡성군	5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관광레포츠
		6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교육
	함평군	7	함평 나비산업특구	관광레포츠
		8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장흥군	9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10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관광레포츠
	강진군	11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사·도	시·군·구	계	특구명칭	유형
전남	강진군	12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관광레포츨
	보성군	13	보성 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14	보성 영어 평생교육 특구	교육
		15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광양시	16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교육
		17	관양 매실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신안군	18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고흥군	19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츨
		20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21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	관광레포츨
	영광군	22	영광 굴비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23	영광 보리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완도군	24	완도 전복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25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구례군	26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27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나주시	28	나주 배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해남군	29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화순군	30	화순 백신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목포시	31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교육
진도군	32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관광레포츨	
무안군	33	무안 황토랑양파한우 융복합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영암군	34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담양군	35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교육	
경북	영양군	1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관광레포츨
		2	영양 고추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안동시	3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상주시	4	상주 꽃감 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5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사·도	시·군·구	계	특구명칭	유형	
경북	영천시	6	영천 한방진흥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영덕군	7	영덕 대게특구	관광레포츠	
		8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산업·연구	
		9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관광레포츠	
	성주군	10	성주 참외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김천시	11	김천 포도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12	김천 자두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의성군	13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문경시	14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울진군	15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경산시	16	경산 종묘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영주시	17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교육	
		18	영주 힐링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봉화군	19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관광레포츠	
	포항시	20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청도군	21	청도 반시나라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22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교육	
	구미시	23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교육	
	고령군	24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관광레포츠	
	칠곡군	25	칠곡 양봉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청송군	26	청송 사과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예천군	27	예천 곤충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경남	창녕군	1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산청군	2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의령군	3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관광레포츠
		함양군	4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거창군	5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산업·연구
6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거창군		7	거창 향노화힐링특구	관광레포츠	

사·도	시·군·구	계	특구명칭	유형
경남	김해시	8	김해 평생교육특구	교육
	하동군	9	하동 아생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고성군	10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관광레포츠
		11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산업·연구
	거제시	12	거제 해양휴양특구	관광레포츠
	창원시	13	창원 단감산업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제주	서귀포시	1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관광레포츠
		2	서귀포휴양예술특구	관광레포츠
	제주시	3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향토자원진흥·유통물류

자료: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16년 7월)」



3_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 추진현황

1)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의 특화사업 추진현황

특화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외국어 교육 심층 특화사업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실시간 화상교육
학교환경 개선 사업	 학교 공원화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 등
평생교육 사업	 노원 Academy 교양대학	 구민 정보화교육
교육강화 사업	 청소년 과학체험교실	 어린이 사이버교실 운영

자료: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 신청서

2)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의 특화사업 추진현황

특화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방과 후 영어교실 운영
영어교육 통합 학습 시스템 구축		
	레벨별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영어학습	관내 대학교 외국어 전공학생을 활용한 멘토링 교육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 공원화 - 성동공업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 서울중구유치원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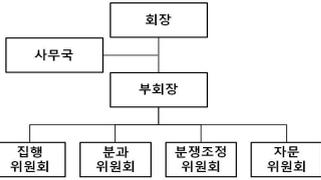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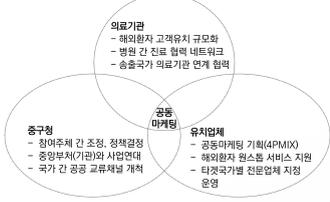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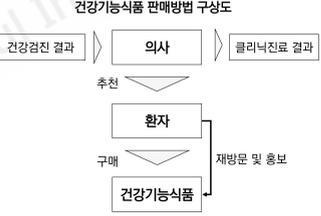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 중구 영어 교육특구」 계획변경 신청서

3)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의 특화사업 추진현황

특화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교육문화센터 운영		
	싱글벙글교육센터 조감도	싱글벙글교육센터 프로그램 - 미디어영어교실
국제화 교육강화사업		
	English Festival 개최	English-Edu Center 개소
서울대학교 학관협력 교육사업		
	서울대 재능기부 - 생명과학여행	서울대 재능기부 - 미래육성프로젝트

자료: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계획 변경(안)

4) 서울중구 해피메디컬 투어리즘 특구의 특화사업 추진현황

특화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의료관광 기반 조성사업		중구 의료관광협의회 조직도 
	의료관광 고객지원 시설_중구의료관광 홈페이지	의료관광협의체 설립운영
의료관광 마케팅 사업		
	의료관광 공동마케팅	의료관광컨벤션 개최
의료관광 식품개발·보급사업		건강기능식품 판매방법 구상도 
	약선음식 개발 보급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료관광 네트워크사업		
	의료관광 연계 명소화 - 광희문 관광지원화	의료관광 공연 활성화

자료: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 특구계획서

5) 성동구 융복합혁신 교육특구의 특화사업 추진현황

특화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전통역사 체험교육	 성동문화재단 운영	 살곶이 다리 복원 및 이성계 사냥행차
생태문화 체험교육	 서울숲~남산 둘레길 운영	 서울숲 힐링영화제
미래인재 육성교육	 글로벌 영어하우스 확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글로벌시민 역량강화교육	 글로벌 평생학습관 조성	 한양대 평생학습 지원

자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6)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의 특화사업 추진현황

특화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역사교육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사업	 <p>망우산 인문학길 조성 및 역사문화공원화 사업</p>	 <p>둘레길 따라 우리동네 역사여행</p>
문화 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p>옹기 체험장 및 전통 체험 교육관 운영</p>	 <p>인공암벽 체험교육장 운영</p>
교육인프라 확충 및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p>행복중랑 111 장학사업</p>	 <p>평생학습관(서울시민대학) 운영</p>

자료: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제공자료

4_설문조사지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 특구별로 특화사업, 규제특례 관련 질문이 다르며,
이 설문지는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에서 진행했던 설문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도시계획, 산업, 교통, 환경, 행정, 사회복지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설문에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개인정보 및 설문 응답에 대한 비밀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09월

서울연구원장

연구수행기관	서울연구원 민승현 연구위원, 김묵한 연구위원, 양지혜 연구원
조사수행기관	(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조사문의	
조사일시	
면접원 성명	

※ 귀사의 사장님(대표이사님) 또는 임원(부장급 이상)에 계신 분이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장명			
취급 품목			
업종	1. 제조 2. 도매업 3. 소매업 4. 음식점업 5. 기타_____		
최초 창업연도	년	사업장 소유 여부	1. 자가소유 2. 임대사업장
사업장 주소			
응답자 연락처			

12. 그밖에 필요한 유형의 특화사업이 있습니까?

()

<협력네트워크>

13. 귀하는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4.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5. 귀하는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관련 공공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15-1로 이동)
- ② 아니오

15-1.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어디입니까?

()

<특구운영 및 관리>

16. 귀하 지역의 특구사업은 자체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
- ⑤ 매우 그렇지 못하다

PART C. 특구 제도에 대한 의견

<규제특례>

17. 귀하 지역의 특구사업에 활용된 규제특례 실적은 어떤가요?

- ① 신청한 규제특례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 ② 신청한 규제특례 보다 적은 수의 특례를 활용하고 있다.
- ③ 신청한 규제특례의 활용실적이 거의 없다.

18. 신청한 규제특례 활용이 미비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히 적어주십시오.

()

19. 규제특례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20. 귀하 지역의 특구사업에서 추가적인 규제특례가 필요하다면 규제특례법에 기준하여 다음 중 어떤 특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반적 규제특례
- ② 토지이용 규제특례
- ③ 권한이양 규제특례

〈특구지정 및 평가〉

21. 귀하 지역의 특구사업을 신청할 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21-1로 이동)
- ② 별로 없었다.
- ③ 없었다.

21-1. 있었다면 어떠한 사항이었는지 간략히 적어주십시오.

()

22. 현행 지역특구의 성과 평가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만족한다.
- ② 개선이 필요하다. (22-1로 이동)

22-1.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ex. 평가기준 세분화, 평가 강화 등

23. 현재 부진한 특구를 대상으로 지정해제 후 3년간 특구신청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현행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3-1로 이동)
- ② 현행제도로 적절하다. (23-2로 이동)

23-1.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3-2.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개선사항〉

24. 귀하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만족하지 못한다.
- ⑤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25. 귀하의 지역특구사업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불만	매우 불만

25-1. 지역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	
25-2.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25-3. 사업과 지역의 적합성	
25-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5-5. 지역 및 단체의 역량	
25-6. 각종 지원제도 (성과 포상금, 컨설팅 등)	
25-7. 홍보 및 마케팅	
25-8. 민간 생산품 및 서비스 품질관리	
25-9. 유형별 특구 구분 및 신청/지정/사후관리 등	

26. 귀하의 지역특구사업에 다음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26-1. 지역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	
26-2.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26-3. 사업과 지역의 적합성	
26-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6-5. 지역 및 단체의 역량	
26-6. 각종 지원제도 (성과 포상금, 컨설팅 등)	
26-7. 홍보 및 마케팅	
26-8. 민간 생산품 및 서비스 품질관리	
26-9. 유형별 특구 구분 및 신청/지정/사후관리 등	

27. 귀하의 지역특구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내용의 필요정도를 골라주세요.

	매우 필요	필요	보통	약간 불필요	매우 불필요
27-1. 신규규제특례 발굴					
27-2. 신청·지정절차 간소화					
27-3. 지역특례법 개정					
27-4. 특구 사업계획의 적절성					
27-5. 협력네트워크 구축 강화					
27-6. 범부처차원 연계지원					
27-7. 특구 기획단의 컨설팅 강화					
27-8. 관련 단체의 역량 강화					
27-9. 재정 또는 세제지원					
27-10. 특구운영 성과평가 강화					
27-11. 성과금 포상제도 강화					
27-12. 민간 사업자 참여 확대					
27-13. 특구 홍보 및 축제 강화					

28. 다음은 지역특구제도가 본래 목적과 다른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들 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보기 중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주세요.

	매우 동의	동의	모름	동의 하지 않음	매우 동의 하지 않음
28-1.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					
28-2. 특구중복지정으로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28-3. 예산 태내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					
28-4.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28-5. 지역특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 이하라는 지적					
28-6. 특화사업 실행을 위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					
28-7. 사업이 중단되어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었다는 지적					

29.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_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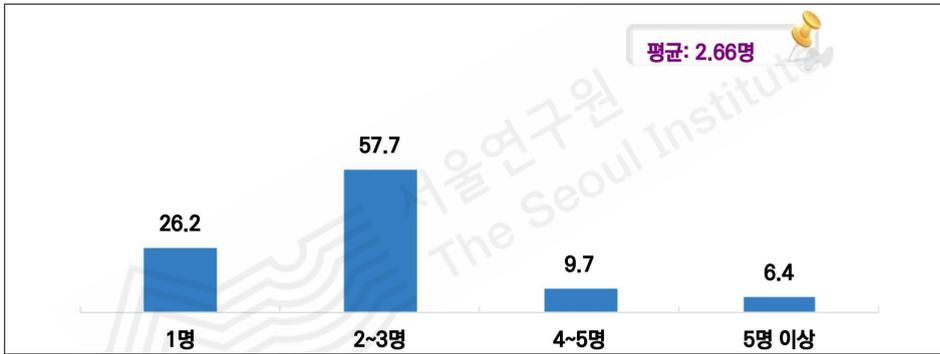
※ 부록 설문조사 내용은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습니다.

1-1) 사업체 기초현황

(1) 종사자 규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 내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2.66명으로 나타났다. 응답 사업장의 57.7%가 '2~3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1인 사업장은 26.2%로 나타났다.

(단위: %)



[부록 그림 1] 종사자 규모

[부록 표 3] 종사자 규모

(단위: 개, %, 명)

구분	사례수	1명	2~3명	4~5명	5명 이상	평균	
전체	359	26.2	57.7	9.7	6.4	2.66	
특구 지역별	서울악령시	156	32.1	62.8	3.8	1.3	2.08
	청담·압구정 패션	103	30.1	56.3	7.8	5.8	2.48
	은평 북한산	50	26.0	56.0	12.0	6.0	2.68
	강서 미래클-메디	50	0.0	46.0	30.0	24.0	4.80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21.4	59.5	9.5	9.5	2.90
	임대 사업장	317	26.8	57.4	9.8	6.0	2.62

(2) 소유형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 내 사업체의 소유형태는 임대 사업장이 88.3%, 자가 소유가 11.7%로 임대 사업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지역별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4개 지역 모두 임대 사업장이 자가 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는 응답업체 모두가 임대 사업장이다.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는 자가 소유 비율이 44.0%로 다른 특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부록 표 4] 사업자 소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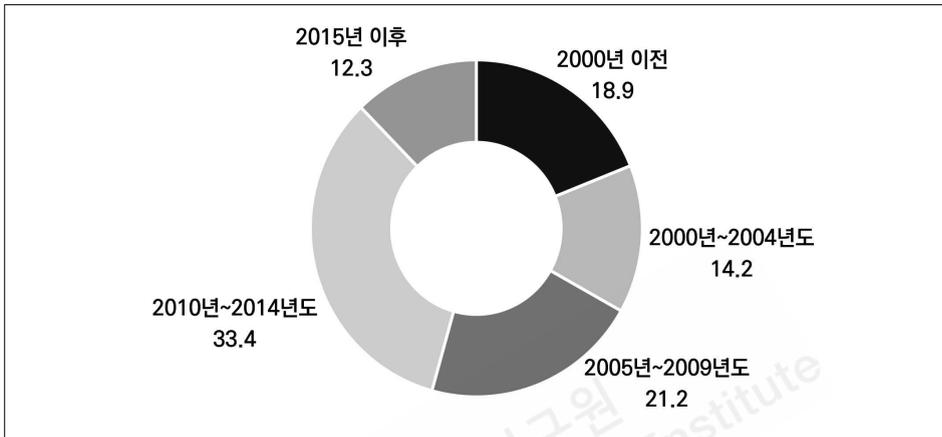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자가 소유	임대 사업장
전체		359	11.7	88.3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156	10.3	89.7
	청담·압구정 패션	103	3.9	96.1
	은평 북한산	50	44.0	56.0
	강서 미라클-메디	50	0.0	100.0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100.0	0.0
	임대 사업장	317	0.0	100.0

(3) 창업연도

창업연도로는 ‘2000년 이전’이 18.9%, ‘2000년~2004년도’가 14.2%, ‘2005년~2009년도’가 21.2%, ‘2010년~2014년도’가 33.4%, ‘2015년 이후’가 12.3%로 분포되어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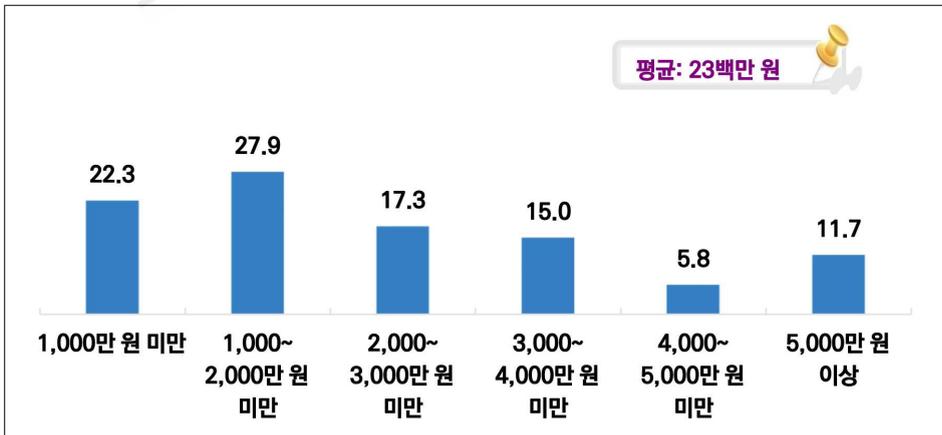


[부록 그림 2] 창업연도

(4) 매출 규모

평균 매출은 2,3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00~2,000만 원 미만’이 27.9%, ‘1,000만 원 미만’은 22.3%, ‘2,000~3,000만 원은 미만’은 17.3% 등으로 나타났다.

(단위: %)



[부록 그림 3] 매출 규모

(5) 업종

조사 응답 사업체의 업종은 '소매업'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병원/한의원'이 15.6%, '음식점업'이 14.5%, '약국/한약국'이 8.6% 순으로 나타났다.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에는 소매업이,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에는 음식점업이,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에는 병원/한의원 업종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지정 특구별로 특화된 업종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부록 표 5] 주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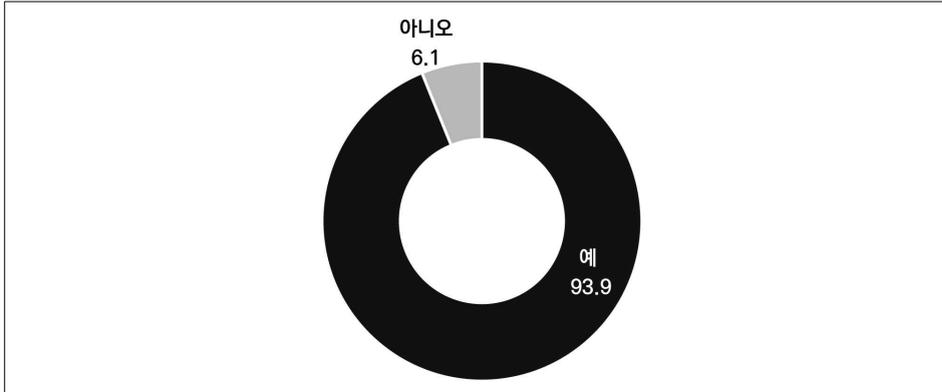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사려수	제조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	병원/한의원	약국/한약국	오락 등	부동산 중개 기타 서비스	
전체	359	5.8	7.2	42.6	14.5	15.6	8.6	0.8	4.7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156	12.8	16.7	31.4	10.9	13.5	14.7	0.0	0.0
	청담·압구정 패션	103	1.0	0.0	78.6	9.7	0.0	1.0	0.0	9.7
	은평 북한산	50	0.0	0.0	44.0	46.0	0.0	0.0	4.0	6.0
	강서 미라클-메디	50	0.0	0.0	2.0	4.0	70.0	14.0	2.0	8.0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0.0	4.8	47.6	31.0	7.1	4.8	2.4	2.4
	임대 사업장	317	6.6	7.6	42.0	12.3	16.7	9.1	0.6	5.0

(6) 사업장이 현재 지역에서 창업하였는지 여부

현재 지역에서 창업한 사업장 비율은 93.9%로, 대부분이 현재 특구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부록 그림 4] 사업장이 현재 지역에서 창업하였는지 여부

[부록 표 6] 사업장이 현재 지역에서 창업하였는지 여부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9	93.9	6.1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156	94.2	5.8
	청담·압구정 패션	103	93.2	6.8
	은평 북한산	50	96.0	4.0
	강서 미라클-메디	50	92.0	8.0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100.0	0.0
	임대 사업장	317	93.1	6.9

(6-1)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이전 창업 지역

[부록 표 7]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이전 창업 지역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9	100.0
서울약령시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4	44.4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	11.1
	서울시 광진구 증곡동	1	11.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1	11.1
	서울시 도봉구 번동	1	11.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	11.1

(6-2)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이전 창업 지역

[부록 표 8]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이전 창업 지역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7	100.0
청담·압구정 패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3	42.9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	14.3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	14.3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	14.3
	경기도 파주시 탄현동	1	14.3

(6-3)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이전 창업 지역

[부록 표 9]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이전 창업 지역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	100.0
은평 북한산	서울시 은평구 구미동	1	5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	50.0

(6-4)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이전 창업 지역

[부록 표 10]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이전 창업 지역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	100.0
강서 미라클-메디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	1	25.0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1	25.0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	25.0
	경기도 부천시	1	25.0

(7) 업종 관련 단체(협회 또는 기관) 가입 여부

조사 응답업체의 절반 가량(49.3%)이 업종 관련 단체(협회 또는 기관)에 가입되어 있다.



[부록 그림 5] 업종 관련 단체/협회 가입 여부

(7-1)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업종 관련 단체(협회 또는 기관)명

[부록 표 11]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업종 관련 단체(협회 또는 기관)명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비율
약령협회	92	88.5
시장상인회	7	6.7
대한한의사협회	1	1.0
동대문요식중앙회	1	1.0
한국외식업중앙회	1	1.0
한약협회상인회	1	1.0
협신회	1	1.0
합계	104	100.0

(7-2)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업종 관련 단체(협회 또는 기관)명

[부록 표 12]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업종 관련 단체(협회 또는 기관)명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비율
안경사 협회	2	13.3
공인중개사협회	1	6.7
귀금속중앙회	1	6.7
귀금속협회	1	6.7
네일협회	1	6.7
부동산	1	6.7
부동산 114	1	6.7
부동산 협회	1	6.7
서울 패션 협회	1	6.7
약사협회	1	6.7
요식업협회	1	6.7
음식, 한식업협회	1	6.7
중개업협회	1	6.7
패션 협회	1	6.7
합계	15	100.0

(7-3)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업종 관련 단체(협회 또는 기관)명

[부록 표 13]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업종 관련 단체(협회 또는 기관)명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비율
북한산 마을공동체	4	26.7
북한산성 마을공동체	4	26.7
요식업	3	20.0
북한산성조합마을	1	6.7
부동산협의회(중개인)	1	6.7
은평구조합	1	6.7
요식업 중앙회	1	6.7
합계	15	100.0

(7-4)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업종 관련 단체(협회 또는 기관)명

[부록 표 14]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업종 관련 단체(협회 또는 기관)명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비율
의사협회	32	74.4
약사협회	6	14.0
중앙요식업중앙회	2	4.7
부동산협회	1	2.3
네일협회	1	2.3
한의사협회	1	2.3
합계	15	100.0

1-2) 입지 장단점

(1) 사업체 입지적 장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사업체 입지적 장점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 ‘교통이 편리해서’ 응답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동종 유사업종 밀집’이 21.7%, ‘주요 거래처/고객층 풍부’가 15.6% 등의 순으로 입지 장점을 답하였다. 3순위까지 중복응답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주요 거래처/고객층 풍부’(57.1%)를 입지 장점으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지역의 상징성’이 56.5%, ‘동종 유사업종 밀집’이 5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는 ‘동종 유사 업종 밀집’을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는 ‘주요 거래처/고객층 풍부’를 입지 장점으로 선택하였다.

은평 북한산 韓 문화체험특구에서는 입지 장점으로 ‘인력확보 용이’, ‘임대료 저렴’, ‘동종 유사업종 밀집’ 등을 고르게 선택하였고,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에서는 ‘교통 편리’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록 표 15] 사업체 입지적 장점(1순위)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교통이 편리 해서	동종 유사 업종 밀집	주요 거래처/ 고객층 풍부	지역의 상징성	인력 확보 용이	편리한 유통/ 물류 체계	저렴한 임대료	특구 규제 완화 혜택 받기 위해	기타	
전체	359	22.8	21.7	15.6	13.4	9.2	8.6	7.0	1.4	0.3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156	17.9	35.9	11.5	8.3	9.0	11.5	5.1	0.0	0.6
	청담·압구정패션	103	24.3	10.7	30.1	27.2	0.0	7.8	0.0	0.0	0.0
	은평 북한산	50	12.0	16.0	8.0	14.0	18.0	6.0	16.0	10.0	0.0
	강서 미라클-메디	50	46.0	6.0	6.0	0.0	20.0	4.0	18.0	0.0	0.0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11.9	31.0	11.9	7.1	9.5	7.1	11.9	9.5	0.0
	임대 사업장	317	24.3	20.5	16.1	14.2	9.1	8.8	6.3	0.3	0.3

[부록 표 16] 사업체 입지적 장점(1+2+3순위)

(단위: 개,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교통이 편리 해서	동종 유사 업종 밀집	주요 거래처/ 고객층 풍부	지역의 상징성	인력 확보 용이	편리한 유통/ 물류 체계	저렴한 임대료	특구 규제 완화 혜택 받기 위해	기타	
전체	359	42.6	52.9	57.1	56.5	20.1	37.6	10.0	7.2	0.6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156	35.9	67.3	56.4	48.1	19.2	42.9	7.7	6.4	1.3
	청담·압구정 패션	103	53.4	36.9	83.5	82.5	0.0	36.9	0.0	1.9	0.0
	은평 북한산	50	12.0	50.0	26.0	68.0	40.0	32.0	22.0	28.0	0.0
	강서 미라클-메디	50	72.0	44.0	36.0	18.0	44.0	28.0	26.0	0.0	0.0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21.4	66.7	35.7	66.7	21.4	16.7	14.3	35.7	0.0
	임대 사업장	317	45.4	51.1	59.9	55.2	19.9	40.4	9.5	3.5	0.6

(2) 사업체 운영 시 불편한 점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사업체 운영 시 불편한 점으로는 1순위 응답 기준 ‘판로 개척’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동종업체 경쟁’이 21.2%, ‘시장 수요파악 어려움’이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까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시장 수요파악 어려움’이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동종업체 경쟁’이 68.2%, ‘판로 개척’이 6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에서는 ‘판로개척’(29.5%)과 ‘동종업체 경쟁’(24.4%)이, 청담·압구정 패션 특구에서도 ‘판로개척’(31.1%)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에서는 ‘판로개척’(30.0%), ‘동종분야 협력 어려움’(26.0%), ‘동종업체 경쟁’(24.0%)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에서는 ‘동종업체 경쟁’(26.0%)이 높게 나타났다.

[부록 표 17] 사업체 운영 시 불편한 점(1순위)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판로 개척	동종업체 경쟁	시장 수요 파악 어려움	동종분야 협력 어려움	높은 임대료	고가 장비 구축 부담	전문 연구 인력 확보	시제품 제작 업체 확보 어려움	R&D 활동 자금 확보	기타	
전체	359	29.2	21.2	16.2	13.6	5.6	3.1	2.8	2.8	2.2	3.3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156	29.5	24.4	15.4	16.0	0.0	0.6	3.2	3.8	4.5	2.6
	청담·압구정 패션	103	31.1	12.6	21.4	3.9	19.4	1.0	1.9	1.0	1.0	6.8
	은평 북한산	50	30.0	24.0	10.0	26.0	0.0	0.0	6.0	2.0	0.0	2.0
	강서 미라클-메디	50	24.0	26.0	14.0	14.0	0.0	18.0	0.0	4.0	0.0	0.0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28.6	28.6	9.5	21.4	0.0	0.0	2.4	0.0	4.8	4.8
	임대 사업장	317	29.3	20.2	17.0	12.6	6.3	3.5	2.8	3.2	1.9	3.2

[부록 표 18] 사업체 운영 시 불편한 점(1+2+3순위)

(단위: 개,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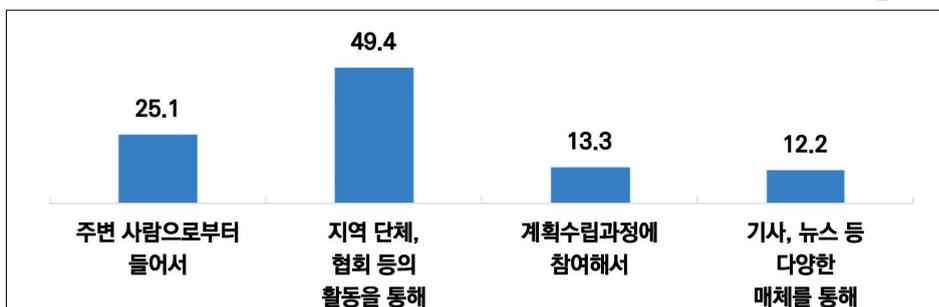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판로 개척	동종 업체 경쟁	시장 수요 파악 어려움	동종 분야 협력 어려움	높은 임대료	고가 장비 구축 부담	전문 연구 인력 확보	시제품 제작 업체 확보 어려움	R&D 활동 자금 확보	기타	
전체	359	60.4	68.2	72.4	28.7	6.7	10.0	7.8	6.1	4.7	5.6	
특구 지역 별	서울약령시	156	60.9	71.2	76.9	30.1	0.0	8.3	9.0	5.1	9.6	7.1
	청담·압구정 패션	103	77.7	54.4	80.6	10.7	23.3	3.9	3.9	2.9	1.9	7.8
	은평 북한산	50	44.0	72.0	54.0	60.0	0.0	8.0	12.0	12.0	0.0	2.0
	강서 미라클-메디	50	40.0	84.0	60.0	30.0	0.0	30.0	8.0	10.0	0.0	0.0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52.4	73.8	47.6	47.6	0.0	7.1	2.4	14.3	7.1	9.5
	임대 사업장	317	61.5	67.5	75.7	26.2	7.6	10.4	8.5	5.0	4.4	5.0

2)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인지도와 전후 변화

(1) 특구 지정 인지 경로

특구 지정을 알게 된 경로는 ‘지역 단체, 협회 등의 활동을 통해’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어서’가 25.1%,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해서’가 13.3%, ‘기사,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가 12.2%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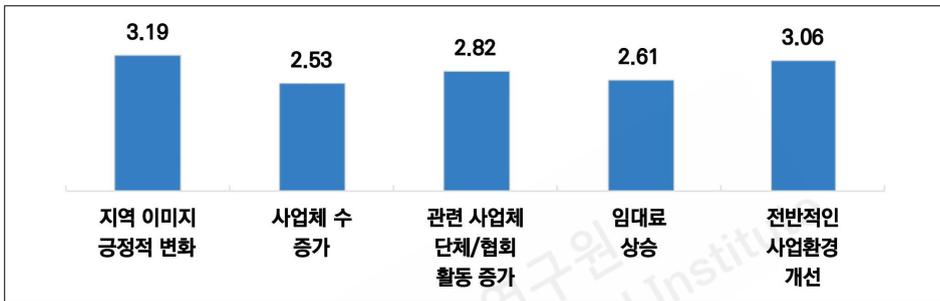


[부록 그림 6] 특구 지정 인지 경로

(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이후 환경 변화

지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이후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대외적 상징성(이미지)의 긍정적 변화’, ‘전반적인 사업환경 개선’ 부분에서는 긍정 변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점 만점 기준으로 ‘대외적 상징성의 긍정 변화’는 평균 3.19점, ‘전반적인 사업환경 개선’은 3.06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사업체 수 증가’가 2.53점, ‘관련 사업체 단체/협회 활동 증가’는 2.82점, ‘임대료 상승’은 2.61점으로 세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단위: 점,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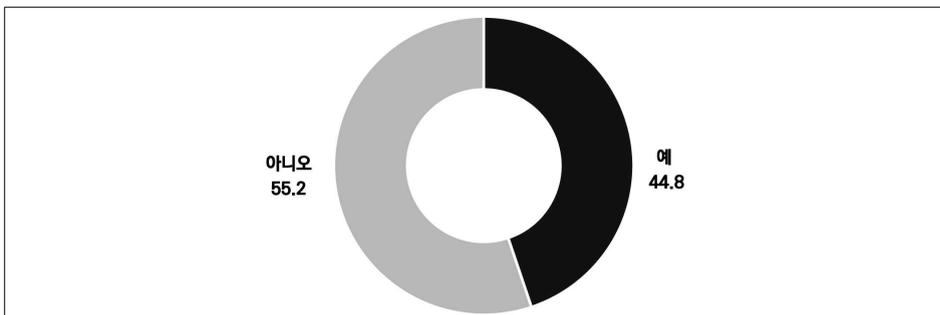
[부록 그림 7]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이후 환경 변화

3)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의견

(1) 특구지정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특구지정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서는 ‘아니오’가 55.2%, ‘예’가 44.8%로 부정 평가 의견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단위: %)



[부록 그림 8] 특구지정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여부

(1-1) 특구지정이 도움된다는 이유

특구지정이 도움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 이미지(브랜드) 향상’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지역의 소득 향상’이 21.7%, ‘고객 유치 용이’가 5.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구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특구에서 ‘지역 이미지(브랜드) 향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에서는 92.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록 표 19] 특구지정이 도움된다는 이유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지역 이미지 (브랜드) 향상	지역의 역량 강화	고용 증가	지역의 소득 향상	고객 유치의 용이	
전체	161	65.8	4.3	2.5	21.7	5.6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65	58.5	3.1	3.1	29.2	6.2
	청담·압구정 패션	34	70.6	8.8	5.9	0.0	14.7
	은평 북한산	25	92.0	0.0	0.0	8.0	0.0
	강서 미래클-메디	37	56.8	5.4	0.0	37.8	0.0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19	68.4	0.0	5.3	26.3	0.0
	임대 사업장	142	65.5	4.9	2.1	21.1	6.3

(1-2) 특구지정이 도움 안 된다는 이유

특구지정이 도움 안 된다는 이유로는 ‘고객 수가 늘지 않았다’는 응답이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매출액 변화가 없다’가 26.3%, ‘지역 이미지(브랜드)가 개선되지 않음’이 7.1%, ‘기타’가 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구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에서는 ‘고객 수가 늘지 않았다’가 높게 나타났고,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에서는 ‘지역 이미지(브랜드)가 개선되지 않음’이 53.8%로 높게 나타났다.

[부록 표 20] 특구지정이 도움 안 된다는 이유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지역 이미지 (브랜드)가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	매출액 변화가 없다	고객 수가 늘지 않았다	기타	
전체	198	7.1	26.3	64.6	2.0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91	2.2	30.8	62.6	4.4
	청담·압구정 패션	69	2.9	27.5	69.6	0.0
	은평 북한산	25	12.0	8.0	80.0	0.0
	강서 미라클-메디	13	53.8	23.1	23.1	0.0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23	13.0	30.4	56.5	0.0
	임대 사업장	175	6.3	25.7	65.7	2.3

(2-1)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내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주요 사업을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건립’이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특구지역 환경 개선사업’이 19.2%, ‘공중화장실 설치’가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21]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1순위)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공영 주차장 건립	특구지역 환경 개선사업	공중 화장실 설치	한의원 전시· 문화관 건립	축제 및 브랜드 홍보	보제원 쉼터공원 설치	한방 선진화 및 브랜드 개발사업	
전체	156	60.3	19.2	9.0	6.4	2.6	1.9	0.6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16	87.5	12.5	0.0	0.0	0.0	0.0	
	임대 사업장	140	57.1	20.0	10.0	7.1	2.9	2.1	0.7
창업 년도	2000년 이전	55	70.9	9.1	7.3	9.1	3.6	0.0	0.0
	2000년~2009년도	56	57.1	25.0	8.9	1.8	3.6	3.6	0.0
	2010년 이후	45	51.1	24.4	11.1	8.9	0.0	2.2	2.2
	1,000만 원 미만	64	68.8	12.5	9.4	4.7	1.6	3.1	0.0
업종	제조	20	55.0	15.0	10.0	10.0	0.0	10.0	0.0
	도매업	26	57.7	19.2	7.7	7.7	7.7	0.0	0.0
	소매업	49	65.3	14.3	8.2	6.1	2.0	2.0	2.0
	음식점업	17	47.1	23.5	23.5	0.0	5.9	0.0	0.0
	병원/한의원	21	71.4	23.8	0.0	4.8	0.0	0.0	0.0
	약국/한약국	23	56.5	26.1	8.7	8.7	0.0	0.0	0.0

(2-2)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

청담·압구정 패션 특구 내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주요 사업을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살펴 보면, '테마거리 조성'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강남 패션 페스티벌 사업'이 21.4%, '선데이 패션·뷰티 마켓사업'이 19.4%, '패션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4.9% 순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22]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1순위)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테마거리 조성	강남 패션 페스티벌 사업	선데이 패션·뷰티 마켓사업	패션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체	103	54.4	21.4	19.4	4.9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	100.0	0.0	0.0	0.0
	임대 사업장	99	52.5	22.2	20.2	5.1
창업 연도	2000년 이전	4	100.0	0.0	0.0	0.0
	2000년~2009년도	33	57.6	12.1	27.3	3.0
	2010년 이후	66	50.0	27.3	16.7	6.1
업종	제조	4	100.0	0.0	0.0	0.0
	소매업	57	59.6	19.3	14.0	7.0
	음식점업	42	42.9	26.2	28.6	2.4
	약국/한약국	1	0.0	0.0	100.0	0.0
	부동산 중개/ 기타 서비스	81	50.6	22.2	21.0	6.2

(2-3)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내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주요 사업을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축제 및 브랜드 홍보’가 32%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었고, 그다음으로 ‘3355 네트워크 구축’이 18%, ‘북한산 너나들이 센터 조성·운영’이 14%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까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1순위의 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을 통한 특구운영 활성화’가 24%로 1순위 기준일 때는 4%로 8순위였으나, 3순위까지의 응답을 종합할 경우 5순위로 나타났다.

[부록 표 23]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1순위)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축제 및 브랜드 홍보	3355 네트워크 구축 (시티투어 버스연계)	북한산 너나들이 센터 조성·운영	북한산 韓문화 홍보 마케팅	은평 역사한옥 박물관 조성·운영	은평 한옥마을 조성·운영	
전체	50	32.0	18.0	14.0	10.0	6.0	6.0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22	40.9	27.3	18.2	9.1	0.0	0.0
	임대 사업장	28	25.0	10.7	10.7	10.7	10.7	10.7
창업 연도	2000년 이전	2	0.0	100.0	0.0	0.0	0.0	0.0
	2000년~2009년도	9	22.2	22.2	11.1	33.3	0.0	11.1
	2010년 이후	39	35.9	12.8	15.4	5.1	7.7	5.1
월평균 매출액	1,000만 원 미만	7	14.3	28.6	14.3	14.3	0.0	14.3
	1,000~3,000만 원 미만	17	23.5	29.4	11.8	17.6	5.9	5.9
	3,000만 원 이상	26	42.3	7.7	15.4	3.8	7.7	3.8
업종	소매업	22	36.4	18.2	9.1	4.5	9.1	4.5
	음식점업	23	30.4	17.4	17.4	13.0	4.3	4.3
	오락 등	2	0.0	50.0	50.0	0.0	0.0	0.0
	부동산 중개/ 기타 서비스	3	33.3	0.0	0.0	33.3	0.0	33.3

(2-4)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내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주요 사업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이 28.0%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었고, 그다음으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이 18.0%,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24]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내 주요 사업별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1순위)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의료관광 기반마련 사업	지역문화 특화사업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전체		50	28.0	18.0	16.0	12.0	10.0	6.0
사업장 소유 여부	임대 사업장	50	28.0	18.0	16.0	12.0	10.0	6.0
창업 년도	2000년 이전	7	28.6	14.3	28.6	0.0	14.3	14.3
	2000년~2009년도	29	20.7	13.8	13.8	17.2	13.8	6.9
	2010년 이후	14	42.9	28.6	14.3	7.1	0.0	0.0
월평균 매출액	1,000만 원 미만	5	40.0	0.0	40.0	0.0	20.0	0.0
	1,000~3,000만 원 미만	12	25.0	8.3	25.0	25.0	0.0	0.0
	3,000만 원 이상	33	27.3	24.2	9.1	9.1	12.1	9.1
업종	소매업	1	0.0	0.0	100.0	0.0	0.0	0.0
	음식점업	2	0.0	50.0	0.0	0.0	0.0	0.0
	병원/한의원	35	25.7	17.1	11.4	14.3	11.4	8.6
	약국/한약국	7	42.9	28.6	28.6	0.0	0.0	0.0
	오락 등	1	0.0	0.0	0.0	0.0	100.0	0.0
	부동산 중개/ 기타서비스	4	50.0	0.0	25.0	25.0	0.0	0.0

(3) 특구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특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별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3점 이하로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 기준으로 살펴볼 때, ‘소상공인 용자/신용보증 지원 필요성’이 2.92점, ‘관련 업체 간 협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이 2.90점, ‘시제품 전시를 통한 소비자 피드백/시장 반응 확인 필요성’이 2.82점으로 나타났다.

특구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는 ‘관련 업체 간 협력강화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이 3.24점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나타났고,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는 ‘소상공인용자/신용보증 지원 필요성’이 3.24점으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록 표 25] 특구 지원 프로그램 항목별 필요성

(단위: 개, 5점 만점 기준)

구분	사례수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시설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	법률·회계·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필요성	관련 업체 간 협력강화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	시제품 전시를 통한 소비자피드백 /시장반응 확인 필요성	소상공인용자 /신용보증 지원 필요성	
전체	359	2.49	2.63	2.90	2.82	2.92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156	2.84	2.82	3.24	3.21	3.13
	청담·압구정 패션	103	2.30	2.63	2.62	2.50	3.24
	은평 북한산	50	2.20	1.92	2.64	2.58	2.24
	강서 미라클메디	50	2.08	2.76	2.66	2.46	2.28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2.31	2.02	2.76	2.71	2.57
	임대 사업장	317	2.51	2.71	2.91	2.83	2.97

(4) 특구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의 필요성

특구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이 21.7%(매우: 3.3% + 필요: 18.4%), 필요 없다는 부정 응답이 28.4%(전혀: 10.6% + 필요 안함: 17.8%)로 나타났다. ‘보통이다’가 49.9%이며, 5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는 2.86점으로 나타났다.

특구 지역별로 살펴보면,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의 경우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이 각각 22.0%, 20.0%로 42.0%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의 경우 ‘전혀 필요하지 않음’과 ‘필요하지 않음’이 각각 34.0%, 14.0%로 48.0%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26] 특구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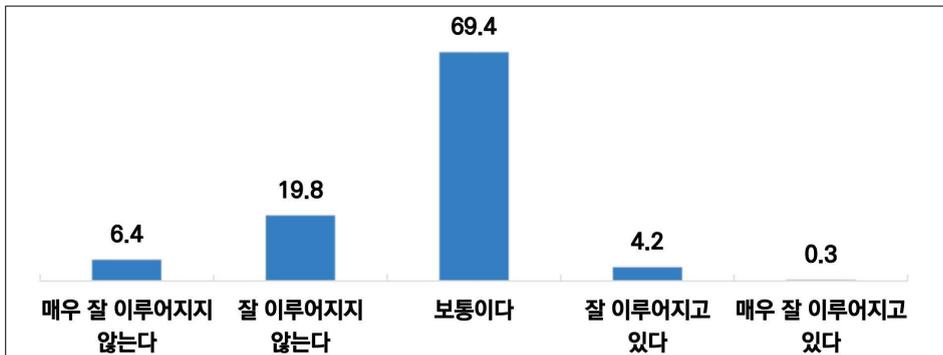
(단위: 개,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5점 만점]	
전체	359	10.6	17.8	49.9	18.4	3.3	2.86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156	7.7	17.3	57.7	16.7	0.6	2.85
	청담·압구정 패션	103	17.5	9.7	62.1	9.7	1.0	2.67
	은평 북한산	50	2.0	20.0	36.0	22.0	20.0	3.38
	강서 미라클-메디	50	14.0	34.0	14.0	38.0	0.0	2.76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4.8	14.3	38.1	26.2	16.7	3.36
	임대 사업장	317	11.4	18.3	51.4	17.4	1.6	2.79

(5) 특구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 및 의견반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

특구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 및 의견반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9.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단위: %)



[부록 그림 9] 특구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 및 의견반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

(6-1)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가 3.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가 3.47점, ‘약사법에 관한 특례’가 2.60점의 순으로 나타난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를 구분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매출액이 작을수록 더욱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점, 5점 만점 기준)



[부록 그림 10]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부록 표 27] 현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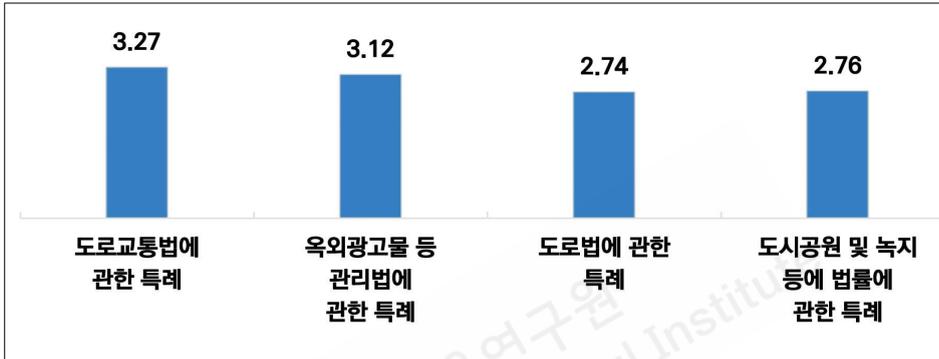
(단위: 개, 5점 만점 기준)

구분	사례수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전체	156	3.90	3.47	2.60	
월평균 매출액	1,000만 원 미만	64	4.05	3.33	2.44
	1,000~3,000만 원 미만	76	3.87	3.64	2.84
	3,000만 원 이상	16	3.50	3.19	2.13
업종	제조	20	3.95	3.60	2.75
	도매업	26	3.92	3.19	2.54
	소매업	49	3.82	3.49	2.51
	음식점업	17	3.94	3.41	2.53
	병원/한의원	21	4.05	3.33	2.33
	약국/한약국	23	3.87	3.78	3.04

(6-2) 청담·압구정 패션 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청담·압구정 패션 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가 평균 3.2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가 3.12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에 관한 특례’가 2.76점, ‘도로법에 관한 특례’가 2.74점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 5점 만점 기준)



[부록 그림 11]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부록 표 28] 청담·압구정 패션 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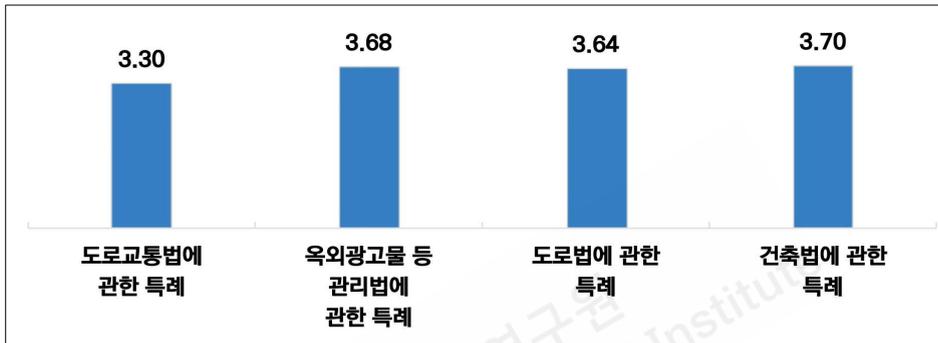
(단위: 개, 5점 만점 기준)

구분	사례수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에 관한 특례	
전체	103	3.27	3.12	2.74	2.76	
월평균 매출액	1,000만 원 미만	4	1.75	2.00	1.50	1.50
	1,000~3,000만 원 미만	57	3.58	3.07	2.75	2.86
	3,000만 원 이상	42	3.00	3.29	2.83	2.74
업종	제조	1	4.00	4.00	3.00	4.00
	소매업	81	3.25	3.15	2.80	2.83
	음식점업	10	3.80	3.50	3.00	2.70
	약국/한약국	1	5.00	4.00	2.00	2.00
	부동산 중개/기타 서비스	10	2.70	2.30	2.00	2.20

(6-3)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은 ‘건축법에 관한 특례’가 평균 3.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가 3.68점, ‘도로법에 관한 특례’가 3.64점,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가 3.30점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 5점 만점 기준)



[부록 그림 12]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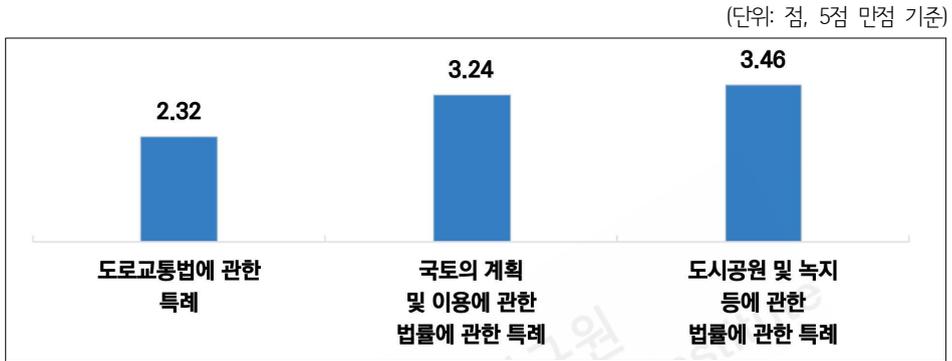
[부록 표 29]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단위: 개, 5점 만점 기준)

구분	사례수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전체	50	3.30	3.68	3.64	3.70	
월평균 매출액	1,000만 원 미만	7	2.43	3.29	2.86	3.29
	1,000~3,000만 원 미만	17	2.94	3.76	3.59	3.59
	3,000만 원 이상	26	3.77	3.73	3.88	3.88
업종	소매업	22	3.91	3.82	3.68	3.82
	음식점업	23	2.96	3.74	3.78	3.78
	오락 등	2	2.00	3.50	3.50	3.50
	부동산 중개/ 기타 서비스	3	2.33	2.33	2.33	2.33

(6-4)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가 평균 3.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3.24점,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2.32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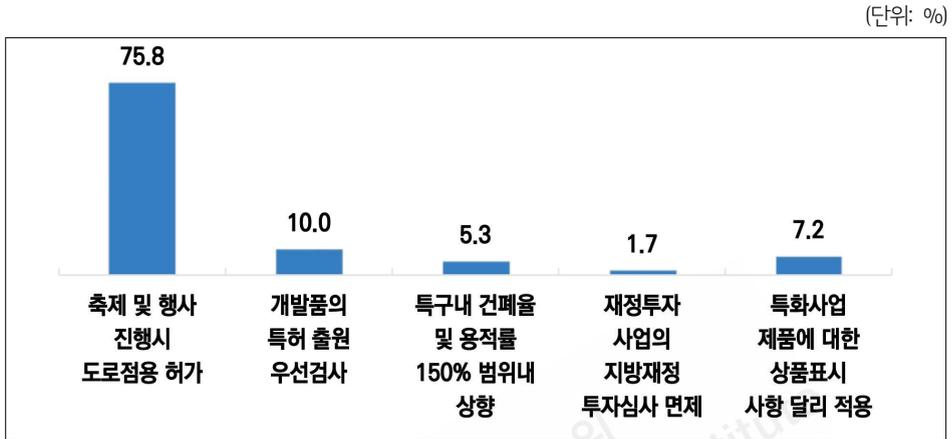
[부록 그림 13]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부록 표 30]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내용별 필요성

(단위: 개, 5점 만점 기준)

구분	사례수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에 관한 특례	
전체	50	2.32	3.24	3.46	
월평균 매출액	1,000만 원 미만	5	1.40	3.00	4.40
	1,000-3,000만 원 미만	12	2.25	3.08	3.33
	3,000만 원 이상	33	2.48	3.33	3.36
업종	소매업	1	2.00	2.00	4.00
	음식점업	2	1.00	4.00	4.50
	병원/한의원	35	2.43	3.14	3.17
	약국/한약국	7	2.57	3.57	3.71
	오락 등	1	1.00	2.00	4.00
	부동산 중개/ 기타 서비스	4	2.00	3.75	4.75

(7)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례지원 사항 중 사업장에 가장 필요한 특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례지원 사항 중 사업장에 가장 필요한 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인 ‘축제 및 행사 진행시 도로점용 허가’가 75.8%로 높게 나타난다.



[부록 그림 14]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례지원 사항 중 사업장에 가장 필요한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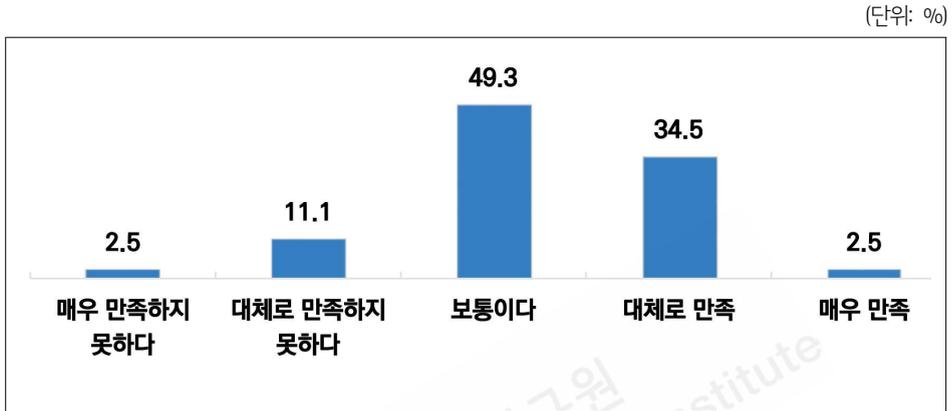
[부록 표 31]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례지원 사항 중 사업장에 가장 필요한 특례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축제 및 행사 진행시 도로점용 허가	특화사업과 관련한 개발품의 특허출원 검사	특구 내 건폐율 용역률 150% 범위내 향상	특화사업 포함된 재정투자 사업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면제	특화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상품표시 사항 달리 적용	
전체	359	75.8	10.0	5.3	1.7	7.2	
특구 지역별	서울약령시	156	64.7	16.0	4.5	0.6	14.1
	청담압구정 패션	103	84.5	6.8	7.8	0.0	1.0
	은평 북한산	50	92.0	2.0	6.0	0.0	0.0
	강서 미라클메디	50	76.0	6.0	2.0	10.0	6.0
사업장 소유 여부	자가 소유	42	88.1	4.8	4.8	0.0	2.4
	임대 사업장	317	74.1	10.7	5.4	1.9	7.9

(8) 현재 특구에 대한 특례지원제도 만족도

현재 특구에 대한 특례지원제도 만족도는 평균 3.23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34.5%,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5%로 전체 응답자의 37.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록 그림 15] 현재 특구에 대한 특례지원제도 만족도

(9)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

[부록 표 32]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

(단위: 건)

범주	세부내용	건수
노점상 철거 요망 (15건)	노점상 철거 필요	10
	일방통행로 때문에 혼잡, 노점상 철거해서 입점상인 보호	1
	노점상 철거, 도로에 주차 금지	1
	가게 앞 물건을 진열할 수 있도록 노점상 철거 필요	1
	노점 철거, 거리정화	1
부대시설 설치 및 보완 조치 요망 (7건)	주차장 건립, 화장실 설치	1
	공중화장실 설치	1
	테마거리 조성, 고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	1
	주차가 편리한 주차시설, 주차비용의 절감 필요	1
	거리에 주차단속이 너무 심해 고객이 감소함, 공용주차장 건립 요망	1

범주	세부내용	건수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1
	주차장의 개장시간 연장 필요	1
일방통행 해제 요망 (13건)	일방통행 원상복귀	6
	고객통행과 차량통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필요	1
	적절한 차량통행	1
	로데오거리 일방통행로 때문에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느낌	1
	일방통행 해제 요망, 주차장 확보 및 주차단속 완화 필요	3
	자가용을 이용한 방문 손님이 많기 때문에 도로통행 완화 필요 도로통행 제한을 하면 매출에 나쁜 영향 미침	1
편리한 교통수단 요망 (12건)	지하철 연계 혹은 버스노선 확장	9
	교통불편(버스, 전철)	1
	지하철 연계 및 버스노선 증설 필요, 비싼 주차장 이용료	1
	케이블카 설치, 버스 노선 증설, 지하철 연계	1
홍보의 필요성 (11건)	지역 특구 홍보	8
	고객 맞춤형 행사	1
	행사 시 브랜드 홍보가 필요(1회성 행사에 치중)	1
	구청에서 특구사업을 위해 병원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으면 함	1
기타 (15건)	좁은 차도	1
	한방시장에 오신 손님들의 식사를 해결할 공간도 필요 약령시와 경동시장 내에 식당의 부족	1
	간판 보수	1
	간판 통일	1
	근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 필요	1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 개선방안 필요	1
	명품거리답게 프리마켓 유치 필요	1
	고객의 이동거리 확보 필요	1
	고객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쿠폰북을 현장에서 발급하는 방식 필요	1
	건물주 연합회와 강남구청의 이득을 위해서 운영하지 말고 소상공의 의견을 모아 특구운영 필요	1
	과도하게 화려한 간판 억제, 불법주정차의 적극적인 단속 필요	1

범주	세부내용	건수
	업체 활성화 및 번영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압구정 로데오 상권 쇠퇴	1
	세금 과다, 영업에 역행하는 행정을 보완 수정 필요	1
	도로공간 증가 필요	1
	지역에서 학교를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경제 활성화 예상	1
	합계	73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pecial Zone Policy in Seoul

Seung-Hyun Min · Mook-Han Kim · Ji-Hye Yang · Hye-Jin Cho(former)

This study covers the general situation of the designated special zones nationwide and the 10 special zones designated and operated in Seoul. Among these special zones, 4 zones, mainly aimed for industry promotion, are chosen for in-depth analysi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related to the overall condition of the special zone system, and they include the promotion plan of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changes in the local conditions after the special zone designation, operation and the of special zone, application of special regulation, satisfaction degree of special zone system, and so forth. On the basis of the above mentioned content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s are deriv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nd policy suggestions are given.

Through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operation of the present special zone, detailed limitations and problems are derived from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The first perspective is about designation and use of the special zone, and there are three limitations: lack of coordination with high-level plans and related plans; lack of follow-up management of special regulations related to land use; and lack of exceptional adjustment of special regulation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Specialized business and operation of the special zone constitute the second perspective. The issues are as follows: lack of diversity in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regulation and designation type; difficulty

in continuous financing; and lack of continuous support to private enterprises.

The third perspective includes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pecial zones and the related participants. Derived problems ar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limitations in continuous operation of special regulations and related business management, and limitations in evaluation and performance reporting.

Each of the above challenges and limitations has to be improved in the mid- to long-term in order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promoting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 the following direction:

With respect to the first perspective mentioned abov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special zones and to reinforce post-management procedures. The details are as follows: mandatory review of consistency with upper and related surrounding plans and establishment of a consultation system; reinforcement of requirements for post-surveillance and dismissal of special regulations on land use; provision of additional procedures and special measures for compromising regulations, deliberations and decision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separation of the special regulations and exceptional regulations for urban management

With respect to the second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special zones and the promotion of specialized projects. The details are as follows: activation of private proposals and diversification of types for ensuring effectiveness of special exceptions; diversification of related entities for continuous business promotion and financial resources; and strengthening the continuous support function for private operators

With respect to the third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special zone continuously and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system. The details should include strengthening th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related participants, establishing a monitoring system for continuous management of special regulations and special project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professional review and support for evaluation and performance reporting.

Looking at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low-growth era, it is expected that the application for the designation of special zones will continue to increase not onl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ut also in the whole country, in order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long with regeneration of declining citie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as ways to improve the special zones:

First,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SMBA) and the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strengthen the demand survey on the policy direction to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to continuously identify and reinforce special regulations.

Second, specialists in various fields such as city planning, economy, and social fields should establish a cooperative network system, and they should also establish a dedicated department in the local government to promote consultation function.

Third, the SMBA, the minist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municipalities should coordinate with each other to find way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based on the type and size of each special zone.

Fourth,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t is necessary to form a task-force team including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to strategically elaborate and improve the policies related to the special zones.

In Seoul,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ntinuous monitoring and related research on the current special zones together with the Seoul Institute or the borough governments, and establish measures to promote activation of the region where the project has not progressed enough or the target for the new designation will be located.

Finally, in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cluding the city of Seoul, the 'Regional Specialized Development Special Zone Activation Committee (tentative name)', in which the public, experts, residents and other stakeholders participate, needs to be established to designate, operate and manage special zones.

Contents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2_Research Scope and Method

02 Literature Review and Related Planning System

- 1_Review of Prior Research
- 2_Related System Status

03 Special Zone Policy and Operation Status

- 1_Application and Operational Procedures of the Special Zone
- 2_Stakeholder Structure of the Special Zone
- 3_Special Regulations on the Special Zone
- 4_Operation Status of the Special Zones Nationwide

04 Special Zone Operation Status in Seoul

- 1_Oriental Medicine Industry Special Zone
- 2_Gangnam Cheongdam·Apgujeong Fashion Special Zone
- 3_Eunpyeong K-culture Experience Special Zone
- 4_Gangseo Miracle-medi Special Zone
- 5_Other Special Zones in Seoul

05 Survey and Interview Results regarding Special Zones in Seoul

- 1_Introduction of the Survey and Interview
- 2_General Information and Location Pros and Cons of the Special Zones
- 3_Awareness and Change before and after Designation of the Special Zone
- 4_Opinions on Support and Operation of the Special Zone
- 5_Opinions on the Major Businesses in Each Special Zone
- 6_Opinions on the Need for Special Regulations to Foster Related Businesses by Special Zone
- 7_Results and Implications from the Staff Interview

06 Overseas Case Studies

- 1_System and Policy Status of the Special Zone in Japan
- 2_System and Policy Status of the Special Zone in the US
- 3_System and Policy Status of the Special Zone in Singapore
- 4_Implications from the Case Study and Conclusion

07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Actual Conditions of the Special Zones in Seoul

- 1_Limitations and Tasks in Procedures
- 2_Limitations and Tasks in City Management

08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 Zone in Seoul

- 1_Principle and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 2_Strengthening the Process of Designating and Managing the Special Zone
- 3_Strengthening Support to the Special Zone Management and Specialized Business Promotion

4_Continuously Retaining Special Zone and Tightening Cooperation System

5_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Directions

References

Abstract



서울연 2016-PR-37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7년 1월 31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216-0 93530 12,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